

經濟與件的變化와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

韓國租稅研究院

序 言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동안 開發國의 일원으로 우리에게 有利한 關稅政策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UR 協商이 타결되는 등 國際交易의 秩序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經濟의 본격적인 國際化·開放化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對外與件의 변화는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의 철폐를 수반하게 됨으로써 國內産業의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에 有利한 關稅政策을 지속한다는 것은 現實的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經濟成長에 걸맞게 모든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國際經濟 교류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며, 國內經濟의 운영에 있어서도 民主化·自律化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對內外 經濟與件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는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1989~1994)의 最終年度인 1994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올해에는 향후 關稅引下豫示制를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또한 UR 關稅讓許協定の 발효에 대비해서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政府는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 현행 關稅率體制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産業政策的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基本關稅率을 개편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戰略的 育成이 필요한 産業, 奢侈性 消費財 및 輸入急增 物品 등에 대해서는 關稅引上을 검토하고 있으며, 賃金上昇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에 대해서는 加工度別 差等稅率을 고려하고 있다.

本 報告書에서는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 以後의 關稅率構造에 대해 그 改編方向을 모색하고 있다. 第1篇에서는 關稅政策의 經濟的 效果와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展開過程 및 關稅率構造의 現況을 개관해 보았다. 第2篇에서는 關稅政策의 역할에 따라 財政收入 確保側面과 産業政策的

側面으로 나누어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설정해 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政策樹立에 制約條件으로 작용하고 있는 國際化·開放化의 측면에서도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모색해 보았다. 第3篇에서는 현행 關稅率制度의 두 가지 특징인 均等關稅率制度和 關稅引下豫示制의 成果를 평가해 보았으며, 또한 현행 關稅率水準이 國內外 經濟與件에 비추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다. 그리고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 關稅率의 調整對象으로 거론된 一部 品目の 關稅率調整 問題, 原資材 및 中間財의 無稅化 問題, 一部品目에 대한 從量稅 導入問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政策方向을 제시하였다.

本 報告書는 本院의 金珍洙 博士와 安鍾錫 博士의 共同執筆로 완성되었다. 著者들은 資料提供을 포함하여 많은 도움을 준 財務部 關稅局의 여러분, 특히 產業關稅課의 金炳基 課長과 金徹洙 事務官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助言과 批評을 아끼지 않은 產業研究院의 崔洛均 博士와 本院의 金裕燦 博士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資料蒐集, 電算處理 및 原稿整理에 수고한 李咏桓 主任研究員, 金正紘, 池星林 研究員, 李賢暎, 南美愛 研究助員, 그리고 校訂을 맡아 준 出版課의 여러분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本 報告書가 우리나라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 설정과 政策立案에 좋은 參考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著者들의 個人的인 의견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4年 5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朴宗淇

目 次

第 1 篇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展開過程 및 現況

I. 關稅政策의 經濟的 效果	13
1. 資源의 配分	13
2. 財政收入	17
3. 消費者 厚生 및 所得再分配	17
II.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展開過程	19
1. 1960年代: 財政收入의 確保와 單純加工·組立產業의 保護 ...	19
2. 1970年代: 產業構造의 高度化	21
3. 1980年代: 均等關稅率制度로의 轉換 및 關稅率 引下	24
4. 要約	25
III. 우리나라 關稅率構造의 現況	27
1. 基本原則	27
2. 製品의 加工度別 關稅率構造	30
3. 產業別·品目別 關稅率構造	33
4. 實效保護率構造	35
5. 彈力關稅制度	39
가. 덤핑防止關稅制度의 運用現況	39
나. 緊急 및 調整關稅制度	41
다. 割當關稅制度	43
라. 便益關稅制度	44

第 2 篇 經濟與件的 變化와 關稅政策의 基本方向

IV. 國際化·開放化와 關稅政策	47
1. 最近의 國際交易 秩序變化	47
가. 概要	47
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51
다.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55
라.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	62
2. 韓國經濟의 轉換期的 狀況	67
가. 國際化·開放化의 進展	67
나. 比較優位構造의 變化에 따른 國際競爭力 弱化	74
다. 國際交易秩序의 變化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76
3. 國際化·開放化時代의 關稅政策	80
V. 財政收入과 關稅政策	82
1. 財政收入의 側面에서 본 適正關稅 負擔率	82
2. 우리나라의 關稅負擔能力 推定	86
3. 政策的 示唆點	92
VI. 產業政策과 關稅政策	94
1. 產業政策의 概觀	94
가. 產業政策의 概念	94
나. 產業政策의 國際的 潮流	96
다. 우리나라 產業政策의 展開過程	97
2. 우리나라 產業構造의 現況 및 問題點	100
가. 우리나라 產業構造의 現況	100
나. 우리나라 產業構造의 問題點	106

3. 産業政策의 當面課題	118
가. 政府役割의 再定立	118
나. 産業政策의 基本方向	120
4. 産業政策 機能側面에서의 關稅政策	123
가. 關稅를 통한 産業保護의 理論的 根據: 保護貿易理論	123
나. 保護貿易理論의 現代的 評價	126
다. 關稅政策 役割의 再定立	128

第 3 篇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

Ⅶ. 關稅率體系의 定立方向	133
1. 關稅率制度에 대한 論議	133
가. 實效保護率 理論	133
나. 均等關稅率制度의 評價	138
다. 關稅引下豫示制의 評價	146
2. 中心稅率의 適正性에 대한 論議	149
Ⅷ. 基本關稅率의 改編方向	155
1. 一部 品目에 대한 關稅率 調整	155
가.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 分析	155
나. 戰略的 育成이 필요한 産業	165
다. 奢侈性 消費財 및 輸入急增 物品	166
라. 勞動集約的인 輕工業 製品	173
2. 非競爭原資材 및 中間材의 無稅化	181
3. 一部 品目에 대한 從量稅 導入	190

要約 및 結論	197
---------------	-----

參考文獻	212
------------	-----

表 目 次

〈表 2- 1〉 우리나라 關稅率의 變化推移	21
〈表 3- 1〉 1988年의 關稅率 改編原則	28
〈表 3- 2〉 農産物에 대한 關稅率構造	29
〈表 3- 3〉 關稅率 分布	31
〈表 3- 4〉 加工段階別 關稅率構造의 國際比較(工産品)	32
〈表 3- 5〉 平均關稅率의 國際比較	33
〈表 3- 6〉 業種別 關稅率構造	34
〈表 3- 7〉 産業別 實效保護率(1990)	37
〈表 3- 8〉 彈力關稅制度의 概要 및 運用現況	40
〈表 3- 9〉 덤핑防止關稅 賦課中인 品目	42
〈表 3-10〉 덤핑與否 調査中인 品目	42
〈表 3-11〉 緊急 및 調整關稅 運用現況	43
〈表 3-12〉 割當關稅 運用現況	44
〈表 3-13〉 便益關稅가 適用되는 國家들	44
〈表 4- 1〉 NAFTA 會員國別 經濟現況(1992)	54
〈表 4- 2〉 APEC 會員國의 經濟規模(1992)	61
〈表 4- 3〉 世界 속의 韓國經濟位相 推移	68
〈表 4- 4〉 輸入自由化率 推移	69
〈表 4- 5〉 製造業의 勞動費用 變化推移	75
〈表 4- 6〉 圓貨의 換率推移	75
〈表 4- 7〉 NAFTA로 인한 産業別 對美輸出 影響	77
〈表 4- 8〉 UR로 인한 産業別 輸出·輸入 影響	79
〈表 5- 1〉 總租稅收入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比重	83
〈表 5- 2〉 經濟發展 程度에 따른 關稅收入의 重要性(1990)	85
〈表 5- 3〉 租稅負擔率 및 輸出入比重	89

〈表 5- 4〉 關稅負擔率 推定結果	91
〈表 6- 1〉 產業構造의 變化	101
〈表 6- 2〉 主要 先進國의 產業構造	102
〈表 6- 3〉 製造業 業種別 構成比 推移	103
〈表 6- 4〉 輸出商品의 構造推移	104
〈表 6- 5〉 韓·日의 輸出商品構造 比較(1992)	105
〈表 6- 6〉 10大 赤字品目 現況(1992)	105
〈表 6- 7〉 機械産業의 對日貿易收支(1992)	107
〈表 6- 8〉 電氣·電子製品 輸出 및 電子部品 輸入 現況	108
〈表 6- 9〉 國內産業의 部門別 技術水準	109
〈表 6-10〉 製造業部門의 中小企業 比重 變化推移	111
〈表 6-11〉 中小企業의 生産比重 變化推移	113
〈表 6-12〉 業種別 中小企業의 輸出實績	114
〈表 6-13〉 法人企業의 資金調達 構成比	115
〈表 6-14〉 業種別 技術·技能人力 不足率(1991)	116
〈表 6-15〉 中小企業의 技術開發投資 推移	117
〈表 7- 1〉 年度別 平均關稅率 推移	147
〈表 7- 2〉 交易財의 業種別 內外價格差	151
〈表 8- 1〉 產業別 貿易特化指數의 變化推移	158
〈表 8- 2〉 競爭力水準의 區分	160
〈表 8- 3〉 競爭力水準別 品目數의 變化推移	161
〈表 8- 4〉 產業別·競爭力水準別 品目 分布	162
〈表 8- 5〉 產業別·品目別 競爭力水準의 變化	165
〈表 8- 6〉 特別消費稅 對象品目에 대한 特別消費稅率과 關稅率	167
〈表 8- 7〉 特別消費稅 對象品目の 輸出入 推移	168
〈表 8- 8〉 年度別 輸入急增品目	171
〈表 8- 9〉 主要 輕工業製品의 國別 關稅率 比較	173
〈表 8-10〉 衣類·신발의 輸出入 變化推移	174

〈表 8-11〉 衣類·신발의 單純平均關稅率	176
〈表 8-12〉 衣類·신발의 輸入相對國家 變化推移	177
〈表 8-13〉 實效保護率의 推定值	179
〈表 8-14〉 產業別 輸入中間財 投入係數	184
〈表 8-15〉 非競爭 原資材 및 1次 加工品의 輸入實積(1992)	186
〈表 8-16〉 UR 無稅化 品目	190
〈表 8-17〉 國家別 從量稅 運用現況	192
〈表 8-18〉 우리나라의 最近 輸入動向	194

圖 目 次

[圖 1-1] 關稅賦課의 經濟的 效果	14
[圖 6-1] 保護貿易政策의 正當性	124
[圖 7-1] 關稅政策의 目的이 財政輸入일 境遇	142
[圖 7-2] 關稅政策의 目的이 產業保護일 境遇	143

第 I 篇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展開過程 및 現況

I. 關稅政策의 經濟的 效果

關稅는 商品의 輸出과 輸入에 부과되는 租稅를 총칭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는 輸出關稅制度가 없으므로 本 報告書에서는 輸入關稅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關稅政策은 輸入되는 商品에 대해 品目別 稅率水準을 결정하는 關稅率政策과 法律로 정해진 關稅率을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關稅減免, 關稅還給, 그리고 彈力關稅 등의 적용기준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關稅政策의 效果는 일차적으로 輸入財의 國內價格 變化에서 살펴볼 수 있다. 關稅의 賦課는 輸入財의 國內價格을 상승시키고, 輸入財의 國內價格 상승은 輸入財貨의 國內消費 감소와 輸入競爭製品의 國內生産 增大를 유발한다. 또한 關稅賦課時 정부의 關稅收入은 늘어나고 所得은 消費者로부터 輸入競爭製品의 生産者에게로 재분배된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關稅政策의 效果를 資源配分, 財政收入, 消費者 厚生 및 所得再分配의 측면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1. 資源의 配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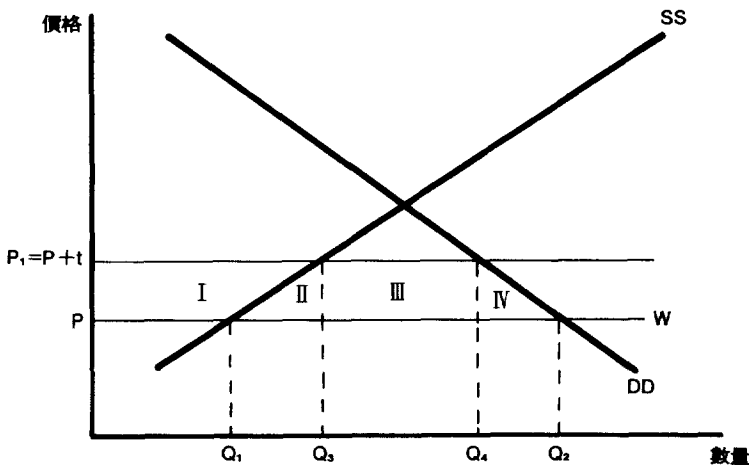
關稅의 부과는 輸入財의 國內價格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關稅賦課 이후에는 輸入競爭製品의 國內生産이 關稅賦課 이전보다 유리해져 國內生産이 증대된다. 生産要素는 輸出品 또는 非交易財를 생산하는 부문으로부터 輸入競爭製品을 생산하는 부문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 결과 輸出品 또는 非交易財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關稅賦課의 效果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圖 1-1]과 같다.

[圖 1-1]은 A國의 輸入財貨인 衣類의 국내 市場狀況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DD는 국내 수요곡선을, SS는 국내 生産業者에 의한 공

공급선을 나타낸다. 國際市場에서 衣類의 價格이 P 이고 A國이 國際市場價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小規模 國家라면 國際市場에서의 공급 곡선은 수평축과 평행인 PW 와 같이 그려진다. 關稅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Q_2 가 A國의 總需要가 되고 그 중 Q_1 만큼이 國內 生産業者에 의해서 공급된다. 나머지($Q_2 - Q_1$)는 輸入을 통해서 조달된다.

만약 A國 정부가 t 만큼의 關稅를 부과한다면 輸入財의 국내가격은 $P_1 = P + t$ 이 되고 국내 수요는 Q_4 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國內 生産業者는 販賣價格이 상승함에 따라 生産을 증대시켜 Q_3 만큼을 供給하려고 할 것이다. 국내 生産要素의 賦存量이 고정되어 있다면, 衣類의 국내 生産 증대는 곧 다른 部門의 生産 減少를 의미하게 된다. 輸入競爭製品인 衣類의 生産 증대는 다른 부문으로부터 衣類를 생산하는 業體로의 生産要素 移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假定들이 만족될 때 關稅의 賦課는 關稅가 부과되지 않는 産業으로부터 關稅가 부과되는(또는 보호받는) 産業으로의 資源配分을 초래한다.

[圖 1-1] 關稅賦課의 經濟的 效果



關稅賦課로 인한 人爲的인 資源의 再配分은 經濟의 效率性을 저해하여 國家 全體的으로 볼 때 純損失(deadweight loss)을 초래한다. [圖 1-1]에서 보면 關稅賦課로 인하여 消費者 剩餘가 I + II + III + IV의 면적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그 중 I은 生産者 剩餘의 증가로 나타나고 III은 財政收入의 증가분이 된다. 따라서 A國이 부담해야 하는 純損失은 II와 IV의 합계이다.

이러한 損失의 발생은 關稅賦課로 인하여 國內生産에서의 限界轉換率(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 國際市場에서의 相對價格과 달라져 生産資源의 配分이 왜곡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假定들이 만족될 때 效率的인 資源配分을 위해서 바람직한 關稅政策은 關稅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國內生産에서의 限界轉換率(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을 國際市場에서의 相對價格과 일치시켜 資源配分의 왜곡으로 인한 損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靜態的 比較優位論에 입각한 것으로 關稅의 단기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인위적인 資源配分이 고도의 經濟成長을 초래하여 현재의 純損失을 相殺하고도 남는 이익을 가져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 가운데 하나로 動態的 比較優位論을 들 수 있다.

動態的 比較優位論에 의하면 資本蓄積, 勞動增加率, 技術의 進歩가 국가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各國의 比較優位產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만약 生産要素의 產業間 移動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比較優位產業의 변화에 따라 生産要素도 함께 이동하게 되므로 比較優位가 변하여도 資源配分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生産要素의 產業間 移動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러한 경우 미래에 比較劣位產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현재의 比較優位產業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比較優位產業 變化의 방향이 불확실한 데서 기인한 資源配分의 歪曲을 是正하기 위하여 특히 資本市場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低開發國에서는 政府가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比較優位産業으로 投資를 유도하여 動態的인 資源配分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¹⁾.

이와 같이 長期的인 관점에서 政府가 特定産業에의 投資를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學者들은 關稅가 資源의 配分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産業政策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特定産業에의 投資를 유도하는 産業政策의 수단으로서 關稅보다 직접적인 補助金 支給이 더 우월하다. 關稅는 輸入可能 財貨에 부과하는 消費稅와 同 財貨의 生産에 지급하는 補助金을 합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갖는다. 이것은 [圖 1-1]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A國 政府가 關稅 대신에 t 만큼의 消費稅를 부과하고 같은 수준의 生産補助金を 국내 生産業者에게 지불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輸入製品의 국내가격은 關稅賦課時와 마찬가지로 P_1 이 되며 生産業者가 衣類 한 단위를 國內市場에 판매했을 때 받게되는 總收入 역시 販賣價格 P 에다 生産補助金 t 를 합한 P_1 이 되어 關稅賦課時와 동일하게 된다. 그러므로 關稅는 國內의 資源配分에서 補助金政策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 동시에 消費稅의 역할을 함으로써 消費에서의 왜곡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많은 學者들은 消費의 왜곡으로 인한 損失이 발생하지 않는 補助金政策이 關稅政策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두번째 근거는 政府의 産業政策 遂行能力과 관계된다. 經濟規模가 커지고 産業構造가 복잡해지면서 民間部門의 生産物과 生産者의 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政府가 特定 生産物이나 生産者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政策에 대한 懷疑論이 대두되고 있다. 만약 政府가 미래의 比較優位産業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실패하면 이는 또 다른 왜곡

1) 保護貿易理論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第VI章 4節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을 초래하여 經濟의 效率性을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미래에 比較優位를 획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有望產業의 保護는 단기적이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保護政策은 일단 시행되면 장기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 企業들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國際競爭力을 확보하도록 고무하기 보다는 오히려 原價節減, 品質向上, 技術開發 등 生産性 向上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게 함으로써 國際競爭力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 財政收入

關稅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財政收入에의 寄與이다. [圖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關稅가 부과되는 경우 A國 정부는 衣類 輸入에 대해서 단위당 $t(=P_1 - P)$ 만큼의 關稅收入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따라서 $(Q_4 - Q_3)$ 만큼의 衣類가 輸入될 때 總關稅收入은 III의 면적과 같게 된다.

關稅가 生産補助金을 지급하는 정책에 비해 資源配分の 측면에서 열등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産業政策의 일환으로 關稅政策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關稅가 財政收入을 유발하는 반면에 補助金政策은 일반적으로 政府의 支出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또한 補助金을 지급하는 政策은 많은 行政費用과 社會的 抵抗을 초래할 수 있는 데 반해 關稅의 부과는 이러한 社會的 費用이 비교적 적게 드는 정책이다. 다시 말해서 關稅賦課는 政府로 하여금 비교적 손쉬운 방법으로 財政收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3. 消費者 厚生 및 所得再分配

關稅는 資源의 再配分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所得의 分配에도 영향을 미친다. 關稅가 부과되면 輸入財의 國內價格이 상승되고 國內消費가 감소하므로 消費者 厚生이 감소하게 된다. [圖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關稅賦課로 인한 消費者 剩餘의 감소분(I+II+III+IV) 중 일부(I)는 生産者에게 재분배되고, 또 일부(III)는 정부의 財政收入이 된다. 따라서 關稅의 부과는 消費者로부터 生産者에게로의 所得再分配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스톨퍼-사무엘슨 정리에 의하면, 國際市場價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국가의 경우 關稅賦課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손해를 보지만 輸入競爭産業에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生産要素의 厚生은 증가한다. 따라서 국가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純損失은 消費者와 輸入競爭産業에 집중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生産要素가 부담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厚生이 關稅賦課로 인하여 감소하게 된다. 정부가 모든 關稅收入을 關稅賦課로 인하여 厚生이 감소하는 이들에게 再分配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厚生이 關稅賦課 이전보다 증가될 수는 없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關稅賦課로 인한 純損失을 부담해야 하는데 輸入競爭産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生産要素의 實質所得은 증가한다는 사실로서 증명이 된다.

지난 30년간 많은 경제학자들이 部分均衡分析을 이용하여 保護의 費用²⁾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推定된 費用이 GNP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은 비록 그것이 保護가 지속되는 한 매년 발생하는 損失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매우 작아서 무시할 만하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推定結果들은 보호로 인한 競爭의 減少에 따른 非效率性과 관련된 費用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利潤追求行爲(예, 로비활동), 考慮對象産業 以外の 所得 및 雇傭效果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消費者 또는 보호받지 않는 産業部門으로부터 보호받는 部門의 生産者 또는 政府部門으로의 所得移轉도 고려되지 않았다.

2) 국가 전체가 부담해야 할 純損失로서 [圖 1-1]의 (II+IV)의 면적과 같음.

II.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展開過程

우리나라의 關稅法은 해방 후 1949년에 처음 制定된 이래 1990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서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개편되어 왔다. 改編의 基本方向은 각 개편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변화되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關稅法 制定 이후 1960년대까지는 財政收入의 확보와 單純加工·組立 위주의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의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 둘째, 1970년대에는 重化學工業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單純加工·組立 위주의 產業構造에서 탈피하여 產業構造의 高度化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關稅率 構造의 단순화와 전반적인 關稅率 引下를 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는 두 차례에 걸친 關稅率 引下 5個年計劃 豫示制를 통하여 平均關稅率을 先進國 수준으로 인하하고 製品의 加工程度에 따른 稅率隔差를 감소시켜 均等關稅率體系로의 移行을 계속하여 왔다. 이러한 關稅政策의 변화는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와 經濟政策 目標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變遷을 먼저 1960年代, 1970年代 그리고 1980年代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마지막 節에서 이를 資源配分, 財政收入, 所得再分配의 측면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요약한다.

1. 1960年代 : 財政收入의 確保와

單純加工·組立產業의 保護

1950年代 우리나라 經濟의 최대 목표는 전쟁 피해의 복구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財政收入의 확보가 關稅政策의 핵심이 되었다. 그 후 1950年代 末부터는 經濟復興과 再建計劃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財政需要의 조달과 함께 國內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產業保護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특히 1962년 第1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시작과 더불어

어 輸出增大가 우리나라 經濟政策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關稅政策도 변화하여 팽창하는 국가의 財政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財政關稅的 성격에 輸出産業의 보호를 위한 保護關稅의 성격이 가미되었다. 그 후 1960년대 전반에 걸쳐서 政府는 關稅政策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消費財의 輸入을 규제함으로써 국내 消費財産業을 보호하였으며 동시에 單純加工型의 輕工業이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 産業을 보호함으로써 이를 輸出産業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國內産業 보호와 財政收入 확보를 위하여 高關稅率을 유지하였다. 平均關稅率은 30~39% 수준으로 높게 유지하였으며, 無稅品目を 최소화하고 財政關稅品目を 설정하여 一定率의 財政關稅를 부과하였다(예, 1967년 재정관세율 20%). 따라서 總租稅收入에서 關稅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1967년까지 15%를 상회하였다. 이 시기의 實績關稅率은 대체로 10% 수준을 유지하였다(〈表 2-1〉참조).
- 消費財와 完成財에는 高關稅率이, 原資材와 施設材에는 低關稅率이 책정되었으며 특히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을 생산하는 國內主要産業과 새로이 발전하고 있는 産業이 강력히 보호되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開發品目인 스웨터에는 1972년까지 150%의 關稅率이 적용되었으며, 耐久性 消費財인 라디오·냉장고 등에는 100%, 우산에는 140%의 關稅가 부과되었다. 重要 産業機械, 第1次 產品, 工業用 原資材 등에 대해서는 無稅 혹은 低率의 關稅를 책정하였다.
-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더라도 奢侈品에 속하거나 輸入을 억제해야 할 品目에 대해서는 최고의 稅率을 책정하였다.
- 이와 같이 原料에 비하여 半製品에, 半製品에 비하여 完製品에 高率의 稅率을 책정한 關稅政策은 國內 加工業의 보호와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그 결과 韓國 經濟는 輕工業 爲主의 輸出主導型 工業化 戰略을 통해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表 2-1〉 우리나라 關稅率의 變化推移

(單位：%)

	平均 關稅率		租稅收入에서 關稅가 차지하는 比重	國稅收入에서 關稅가 차지하는 比重
	法定關稅率 ¹⁾	實績關稅率 ²⁾		
1961	30.3	12.9	18.6	22.8
1963	38.9	9.2	15.2	21.6
1967	38.8	9.4	16.6	19.7
1973	31.3	4.9	12.6	15.8
1976	35.7	6.5	11.9	14.4
1978	24.9	8.9	15.8	17.7
1981	23.7	4.9	10.9	12.3
1983	23.7	7.0	12.8	14.6
1988	18.1	7.3	11.4	13.2
1991	11.4	5.5	9.0	11.3
1992	10.1	5.2	7.1	9.0
1993	8.9	4.5 ³⁾	5.8 ³⁾	7.3

註：1) 法定關稅率은 品目別 法定關稅率을 單純平均한 것임.

2) 實績關稅率은 關稅收入을 輸入額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3) 暫定值임.

資料：財務部 關稅局, 「關稅率政策 運用實績 및 方向」, 1991.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각호.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각호.

財務部, 「'93年 國稅 暫定實績」, 1994. 2.

2. 1970年代：産業構造의 高度化

1960年代 末에 들어서면서부터 單純組立 및 加工 위주의 輕工業製品 輸出만 가지고는 輸出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없으며 産業의 對外依

存度も 높아지게 되므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통하여 輸出製品의 附加價値率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또한 그 동안 國內産業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이 형성된 産業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이러한 의견 및 환경의 변화가 1967년의 第6次 改定에서 일부 반영되어 國內에서 生産되는 部分品과 原資材는 그 製品과 같은 率로 關稅를 부과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다.

1960年代 末부터 1970年代 全般에 걸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産業들은 第2次 및 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重點사업이었던 重化學工業으로, 정부는 이 部門의 關稅率을 引上함으로써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도모하였다. 동시에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는 原資材에 낮은 關稅를 부과하여 다른 産業의 競爭力 確保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加工段階에 따른 差等關稅率構造는 單純加工型의 産業을 유도하여 産業의 均衡적인 발전을 저해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점차 稅率構造를 단순화하여 産業構造를 高度化해 나가기 위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1973年 改編時에는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重點사업인 重化學工業 등 새로이 개발되는 中間財 産業의 適正保護를 통해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도모하였다. 1976년 개편에서는 過多保護와 過少保護의 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稅率構造를 단순화시키고 中心稅率 20%의 適用 比重을 대폭 증대시켰다. 그러나 1978년에는 다시 差等稅率體制를 도입하여 20%의 稅率이 적용되던 品目에 0~30%의 다양한 稅率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1973년에는 物價 安定, 經濟成長 促進, 國際競爭力 提高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거나 國產品만으로는 國內需要를 전부 충족시킬 수 없는 基礎原資材와 施設材의 稅率을 인하하였다. 또한 國內 賦存資源의 開發促進, 海外依存度の 減少, 資源節約的 産業構造로의 轉換, 그리고 모든 輸入品에 關稅를 부과한다

는 원칙 등의 이유를 들어 無稅品의 비중을 낮추고 15% 이하의 稅率이 적용되는 品目도 축소하였다. 그러나 1978년에는 다시 無稅品目을 확대하고 生必需品, 工業用 原料 등에 대한 稅率을 인하하였다.

- 關稅가 物價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生必需品에 대한 關稅率을 인하는 한편, 國內 生産基盤이 확립된 最終 完成財 産業의 과다보호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國內産業의 自立化와 동시에 物價安定을 유도하였다.
- 또한 奢侈性 消費財에 대해서는 禁止的 關稅에서 關稅率을 점차 인하고, 그 대신에 特別消費稅 등 다른 消費抑制手段을 사용함으로써 資源이 非生産的인 부문에 편중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였다.
- 1976년 이전의 개편에서는 關稅의 財政收入 측면이 크게 강조되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關稅의 産業保護와 輸入調節 機能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 결과 1960년대에는 15%를 넘었던 總租稅收入에 대한 關稅收入의 비중이 1980년대에는 10%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 平均關稅率은 1960年代 末의 38.8%에서 1970年代 末에는 24.9%로 낮아졌다. 關稅收入을 總輸入額으로 나눈 實積關稅率은 10%를 약간 밑돌았던 1960年代에 비하여 1970年代 中엽에는 6% 수준이 되었다.
- 1973년 개편시에는 農漁民의 보호를 위하여 肥料, 農機械, 漁船 등 中間財 또는 原料 중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거나 國產만으로는 需要가 충족되지 않는 品目の 稅率을 인하하였다.

3. 1980年代 : 均等關稅率制度로의 轉換 및 關稅率 引下

우리나라는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前例 없는 대폭적인 關稅政策의 改編을 감행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製品의 加工度에 따라 다른 關稅率을 적용하는 差等關稅率制度(tariff escalation system)에서 탈피하여 均等關稅率制度(uniform tariff system)로 移行한 것과 平均關稅率의 대폭적인 引下라고 할 수 있다. 均等關稅率制度로의 이행은 政府主導型의 保護와 支援政策에서 과생된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불식하고 對內外 競爭體制를 정착시켜 市場經濟原理에 의한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를 확립하여야 한다는 1980年代의 產業政策方向에 따른 것이며 平均關稅率의 인하는 그 동안 國內產業 發展에 따른 產業의 競爭力 向上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高稅率을 통한 產業 保護를 축소하고 加工段階에 따른 關稅率 隔差를 줄여 市場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 國內產業의 發展에 따라 輸入品의 國內價格과 海外價格의 차이가 축소된 만큼 關稅率을 引下하여 1990年代에는 先進國 수준의 關稅率에 도달하도록 한다.
- 全產業의 國際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하여 國內 生産이 전혀 없거나 그 物量이 부족하여 輸入이 불가피한 非競爭原資材의 경우 稅率을 인하하여 최소한의 關稅를 부과하도록 하고 國內 生産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競爭原資材에 대해서는 이보다 약간 높은 關稅를 부과한다.
- 過保護된 投入財, 生産財에 대한 關稅率을 인하하여 關聯 產業의 價格競爭力을 제고하며, 消費財에 대한 높은 保護稅率을 인하하여

內需 爲主의 產業保護를 止揚한다.

- 關稅率의 인하로 國內産業이 받게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친 5個年計劃 豫示制를 채택하였다. 第2次 關稅引下 5個年計劃 豫示制는 1994년에 終了된다.
- 지속적인 關稅率 引下로 租稅收入에서 차지하는 關稅의 비중이 감소하여 1983년에는 13% 가까이 되던 것이 1991년에는 9%, 1993년에는 5.8%가 되었다.

4. 要約

우리나라의 關稅政策은 單純加工을 위주로 한 輕工業製品의 輸出 促進, 重化學工業化, 産業의 均衡的 發展, 民間主導型 競爭體制의 確立 순으로 전개되어 온 전반적인 産業政策의 전개와 같은 궤적을 따라 변천해 왔다. 輸出增大가 국가의 지상 목표였던 1960年代에는 單純加工型의 輕工業 중심인 國內 産業을 강력히 보호하였으며, 1970年代에는 당시 經濟開發計劃의 중점사업이었던 重化學工業에 높은 關稅率을 적용함으로써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도모하였다. 그 후 1980年代에는 對內外 競爭體制를 정착시킴으로써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를 확립하고자 均等關稅率制度로의 移行을 도모하였다.

한편, 1970년대 중엽까지는 財政收入의 확보를 강조하였으나 그 후로는 財政收入 確保手段으로서의 關稅의 역할이 약화되어 최근에는 總租稅收入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이 6% 수준으로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所得再分配의 측면에서 보면 1960년대까지는 奢侈性 消費財에 대해 高關稅率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로 消費性 財貨인 輕工業製品의 보호를 위하여 消費者의 희생을 강요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엽부터는 物價上昇을 억제하기 위하여 必需品의 關稅率을 낮추는 등 消費者의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현재까지 지

속되고 있다. 1988년 개편시에는 향후 5년 동안에 消費財와 生産財間의 關稅率 격차를 없앨 뿐만 아니라 奢侈性 消費財의 關稅率도 다른 工産品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시하였다.

Ⅲ. 우리나라 關稅率構造의 現況

本章에서는 1989년부터 시작된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현행 關稅率 構造의 특성을 살펴본다.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은 1988년 말에 개정된 關稅法에 의해 1993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1991년에 防衛稅가 폐지됨에 따라 이로 인한 稅率 引下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994년까지 1년씩 順延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먼저 1988년에 개편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현행 關稅率 構造의 基本原則을 살펴보고 나서 加工度別, 產業別 關稅率 構造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實效保護率 構造를 검토하고, 基本 關稅率 構造의 改編方向을 논의하는 본 보고서의 주요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참고로 彈力關稅率制度의 運用現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基本原則

1988년에 개편된 현행 關稅率 構造의 기본원칙은 <表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工產品의 경우 關稅賦課 品目を 非競爭原料, 競爭原料, 競爭力 確立 및 國內 生産이 곤란한 1次 加工品, 기타 中間財 및 完製品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關稅率을 부과한다. 無稅 品目は 국제관세상 無稅가 적용되는 品目に 한하며, 農產物에는 農漁民의 生計保護를 위해 별도의 稅率을 부과한다.

工產品 基礎原料의 선정은 GATT의 T.E.S. (Tariff Escalation Study)와 UN의 B.E.C. (Classification of Broad Economic Categories)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T.E.S. 는 GATT가 關稅引下 協商과 그 결과의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製造業 部門의 모든 商品을 原料, 半製品 및 完製品으로 구분한 分類表이며 UN의 B.E.C. 는 國際間 去來와 國內産業 및 流通의 用度別 分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各 商品을 産業用 原資材, 資本財, 中間財 및 消費財로 구분한 분류표이다. 1988년 關稅改編에서는 이 두 기준에 합치되는 原資材를 모두 基礎原料로 정의하였다. 한편 競爭原料와 非競爭原料의 구분 기준은 韓國銀行이 『産業聯關表』作成過程에서 사용한 競爭 및 非競爭의 개념을 원용하였다. 非競爭原料는 國內生産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生産量이 미미하거나 品質의 차이가 현저하여 輸入品과 競爭關係가 없는 品目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基礎原料를 競爭原料라고 정의한다.

〈表 3-1〉 1988년의 關稅率 改編原則

(單位 :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原 料	非競爭原料	5	1~2	1~2	1~2	1~2	1~2
	競爭原料	10	5	5	4	4	3
中間財 및 完製品	中心稅率 (競爭力 確立 및 國產 化 困難 品目)	20 10~20	15 10	13 10	11 10	9 9	8 8
	(競爭力 確立 및 國產 化 困難 品目 中 1次 加工品)	10~20	10	10	9	7	5
	(奢侈性 消費財)	30~50	20	16	10	8	8
例 外	國際慣例에 의한 無稅品目	(無稅~ 100%)	無 稅	無 稅	無 稅	無 稅	無 稅
	農產物	(無稅~ 100%)	別途 稅率	別途 稅率	別途 稅率	別途 稅率	別途 稅率

資料 : 財務部 關稅局, 『關稅率政策 運用實績 및 方向』, 1991.

1次 加工品이란 가공단계로 볼 때 中間財에 속하나 加工程度가 비교적 단순하고 다른 物品의 基礎 投入財로 사용되는 物품으로서 韓國銀行 『産業聯關表』의 加工段階別 分類에서 「中間財 I」에 속하는 52개 부문 중 1986년 韓國銀行의 調査결과 實效保護率이 交易財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21개 부문을 기초로 선정하였다.

關稅引下豫示制가 종료되는 1994년의 關稅率을 보면 非競爭原料에는 1~2%의 最低稅率이 적용되고 競爭原料에는 3%의 關稅率이 적용된다. 中間財 및 完製品의 경우 國內製品이 조속한 시일내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國內生産 自體가 곤란한 1次 加工品에 한하여 5%의 낮은 稅率을 부과하며, 다른 工產品에 대해서는 中間財, 完製品, 奢侈性 消費財, 必需品 등을 구분하지 않고 8%의 關稅率을 적용한다. 다만, 급격한 關稅引下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1988년 현재 30~50%의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奢侈性 消費財의 경우 關稅引下 속도를 약간 늦춘다.

〈表 3-2〉 農産物에 대한 關稅率構造

(單位 :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穀 物	10	5	5	5	5	5
肉 類	30~50	30~50	30~50	30~50	30~50	30~50
果實 · 菜蔬類	50	50	50	50	50	50
農産物加工食品	20	15	13	11	9	8
麥 酒	100	50	50	40	40	30

資料: 財務部 關稅局, 「關稅率政策 運用實績 및 方向」, 1991.

우루과이라운드 등 國際協商을 통한 農産物의 輸入開放으로부터 國內 農家를 보호하기 위하여 農家所得作物에 대해서는 30~50%의 높은 關稅率을 계속 유지한다. 육류와 과일, 채소류 등이 이에 속한다. 農産物 加工食品은 일반 消費財와 마찬가지로 1994년 工產品의 중심세율인 8%에 도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의 厚生増大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맥주는 例外로 1994년의 關稅率이 30%로 다른 農産物 加工食品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國內原料 生産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감자 종자, 증계 등에는 無稅를 적용하는 등 農家所

得作物에 필요한 投入財의 關稅率은 대폭 인하하여 農家의 關稅負擔을 덜어주고자 하였다.

2. 製品의 加工度別 關稅率構造

현행 關稅率 構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工產品의 中間財 및 完製品에 대한 關稅率이 8%의 중심세율로 수렴된다는 점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두 차례에 걸친 關稅引下豫示制를 통하여 均等關稅率制度(uniform rate system)로 移行하여 왔다. 그 결과 20%의 中心稅率이 적용되는 품목이 總品目の 29.6%에 불과했던 1983년에 비해 1994년에는 총 2,718개 품목 중 60% 정도의 품목에 7% 또는 8%의 關稅率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中心稅率에의 收斂度는 <表 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어떤 先進國보다도 높다. 日本의 경우 1~5%의 關稅가 부과되는 품목이 가장 많으며 그 비중이 전체 품목의 44.7%이다. 美國과 EC의 關稅率은 각각 1~5%, 5~10%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稅率이 적용되는 品目は 品目數를 기준으로 전체의 32.3%와 37.2%이다.

<表 3-4>는 工產品의 加工度別 關稅率 構造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에 原料, 中間財, 完製品의 平均關稅率이 각각 2.8%, 7.0%, 7.1%가 되어 中間財와 完製品의 關稅率 隔差가 0.1%로 줄어들게 될 예정이다³⁾.

3) 이 數值들은 財務部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財務部の 설명에 의하면, 完製品에는 원칙적으로 8%의 關稅가 부과되는데 불구하고 完製品 平均關稅率이 7.1%임은 일부 完製品의 경우 中心稅率(8%)보다 낮은 稅率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財務部가 加工度別 平均關稅率을 계산하는 데 어떤 品目を 中間財로, 어떤 品目を 完製品으로 간주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된 資料가 없다.

〈表 3-3〉 關稅率 分布

(單位 : %)

關稅率	韓 國		日本(87)	美國(87)	EC(87)	臺 灣	
	88	94				87	88
無稅	3.6 (4.3)	5.5 (5.6)	21.1	20.2	10.3	6.7	10.3
5% 以下	5.6 (8.2)	26.9 (27.7)	44.7	32.3	25.0	8.1	18.9
10% 以下	16.6 (16.0)	60.4 (65.8)	18.3	25.6	37.2	11.5	33.0
15% 以下	3.9 (5.7)	—	4.1	5.2	20.3	11.7	20.7
20% 以下	61.8 (58.4)	1.3	3.0	5.7	3.3	20.4	6.2
30% 以下	4.7 (5.7)	2.8	3.3	1.7	2.8	23.8	4.7
50% 以下	3.0 (1.0)	2.3	0.8	1.0	—	11.8	5.4
50% 超過 從量稅	0.4	—	0.3	—	0.1	2.4	0.1
	0.4 (0.7)	0.8 (0.9)	4.3	8.2	0.9	0.6	0.6
中心稅率 平均稅率	20 18.1	8 7.9 (6.2)	3~7 5.9	3~8 6.2	4~8 7.9	15~30 20.8	5~15 11.7

註 : ()안은 工產品.

資料 : 財務部 關稅局, 「關稅率政策 運用實績 및 方向」, 1991.

外國의 경우 칠레를 제외한 모든 先·後進國에서 差等關稅率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美國, EC, 日本, 캐나다 등 主要 先進國의 1988년 原料, 中間財 및 完製品의 關稅率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1994년 關稅率보다 낮으나 中間財와 完製品間의 稅率隔差는 우리나라보다 커서 日本을 제외하고는 0.8~1.5% 포인트의 隔差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칠레는 1973년부터 점진적으로 均等關稅率制度로 이행하기 시작하여 1979년부터는 총 4,313개의 품목 중 4,286개(전체의 99%)의 품목에 10%의 關稅를 부과하였다. 그 후 1983~1984년에 일시적으로 關稅率을 인상하였으나 1985년부터 다시 인하하기 시작하여 1991년에는 稅率이 11%가 되었다.

〈表 3-4〉 加工段階別 關稅率構造의 國際比較(工產品)

(單位 : %)

	韓 國				外 國 (1988)			
	1983	1988	1989	1994	美 國	日 本	EC	캐나다
原 料	11.9	9.8	3.9	2.8	1.8	1.4	1.6	2.6
中 間 財	21.5	17.1	11.7	7.0	6.1	6.3	6.2	6.6
完 製 品	26.4	19.1	13.3	7.1	6.9	6.4	7.0	8.1

資料 : 財務部 關稅局, 「關稅率政策 運用實績 및 方向」, 1991.

1988년 關稅率 改編의 두번째 특징은 無稅品目을 최소화하여 국제관례상 無稅가 적용되는 品目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原資材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2%의 關稅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주로 國內 賦存資源의 開發促進, 資源의 海外依存 減少, 資源節約의 産業構造의 促進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모든 輸入品에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平均關稅率의 대폭적인 인하에 따른 財政收入 減少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國際慣例上 無稅가 적용되는 品目은 방사성원소, 면역혈청, 서적, 예술품 등 125개 品目이다.

또한 정부는 衣類, 家電製品 등 그 동안 奢侈性 消費財로 분류되어 30% 이상의 高關稅率을 적용하던 品目の 稅率을 1989년에 20%로 인하하고, 그 후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1994년에는 중심세율인 8%에 도달하도록 하였다. 이는 奢侈品에 대한 높은 關稅率은 비효율적인 資源配分을 유도하므로 關稅보다는 特別消費稅 등을 통해서 그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3. 産業別 · 品目別 關稅率構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關稅引下豫示制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關稅率은 대폭 인하되어 1960년대 중반까지는 30% 이상을, 그 후 1980년대 초까지는 20%대를 유지하여 왔던 平均關稅率이 第1次 豫示制가 끝난 1988년에는 18.1%, 1993년에는 8.9%로 하락하였으며 1994년에는 7.9%로 더욱 인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1994년 平均關稅率은 1990년 先進國의 平均關稅率보다 약간 높으며 臺灣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表 3-5〉 平均關稅率의 國際比較

(單位 : %)

	韓 國					外 國 (1990)			
	1983	1988	1989	1991	1994	臺灣	日本	美國	EC
全 體	23.7	18.1	12.7	11.4 (5.5)	7.9	9.2	6.5 (1.9)	7.0 (2.6)	7.3
工產品	22.6	16.9	11.7	9.7	6.2	7.0	5.3	6.7	6.4
農產品	31.4	25.2	20.6	19.9	16.6	23.3	12.1	8.6	12.4

註 : ()안의 數値는 實績關稅率임.

資料 : 大韓民國 政府, 『新經濟 5個年計劃 經濟改革課題 報告書』, 1993. 7.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2.

_____,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2.

産業別로 보면 工產品의 關稅率이 農產物의 경우보다 더욱 많이 인하되었다. 工產品의 경우 1994년에는 1983년 關稅率(22.6%)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2%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나 農產物의 경우는 1983년 31.4%의 2분의 1을 약간 상회하는 16.6% 수준으로 인하되는 데 그쳤다.

業種別 關稅率은 〈表 3-6〉과 같이 정리된다. 1994년의 關稅率을 보

〈表 3-6〉業種別 關稅率構造¹⁾

(單位：%)

	1990/91	1992	1993	1994	1992 加重平均 ²⁾
1. 農畜產物產業(1~24류)	21.28	20.01	19.36	16.35	14.28
食料部門(15~21류)	21.22	19.79	18.77	17.72	16.35
飲料部門(22류)	41.96	33.72	33.18	25.16	33.97
2. 鑛業 및 에너지產業 (25~27류)	5.49	4.80	4.43	3.85	4.32
3. 無機化學 및 精密化學 產業(28류, 30~38류)	12.39	10.57	8.69	7.70	10.01
4. 石油化學產業 (29류, 39류, 40류)	12.32	10.61	8.81	7.85	9.85
5. 纖維 및 皮革產業 (41~43류, 50~63류)	13.05	10.90	8.74	7.43	8.04
皮革部門(41~43류)	12.31	10.19	8.07	6.32	6.10
纖維部門(50~60류)	12.16	10.30	8.44	7.50	8.52
衣類部門(61~63류)	15.51	12.67	9.84	8.00	12.73
6. 木材 및 製紙產業 (44~49류)	10.06	8.57	7.01	6.04	5.50
7. 生活用品產業(64~67류)	13.00	11.00	9.00	8.00	11.00
신발部門(64류)	13.00	11.00	9.00	8.00	11.00
8. 窯業製品產業(68~70류)	13.44	11.29	9.14	7.97	11.29
9. 貴金屬 및 寶石產業 (71류)	8.44	7.24	6.23	5.37	4.99
10. 鐵鋼產業(72~73류)	10.76	9.82	8.44	7.51	8.19
11. 非鐵金屬產業(74~81류)	10.79	9.33	7.78	6.82	7.15
12. 工具 및 雜鐵製品產業 (82~83류)	13.00	11.02	9.02	8.00	11.01
13. 一般機械產業(84류)	12.70	10.81	8.89	7.90	10.68
14. 電氣 및 電子機械產業 (85류)	13.19	11.18	9.11	7.97	10.58
15. 運送機械產業(86~89류)	11.04	9.50	8.22	6.52	4.04
16. 精密機械產業(90~91류)	13.14	11.10	9.05	8.00	11.04
17. 雜品產業(92~97류)	12.65	10.62	8.59	7.49	9.40
農 產 品	21.28	20.01	19.36	16.35	14.28
工 產 品	12.08	10.30	8.47	7.40	8.11
全 產 業	13.39	11.67	10.02	8.95	8.51

註：1) 이 表에 나타난 平均關稅率은 關稅率表上의 각 품목의 세율을 합산하여 該當 品目數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이 표의 平均關稅率이 정 부가 제시한 平均關稅率(〈表 3-5〉 참조)과 다른 것은 같은 稅率이 적용 되는 유사품목을 하나의 품목으로 분류하는가의 여부에 대한 견해차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2) 加重平均은 각 業種 輸入額의 總輸入額에 대한 비중을 加重值로 하여 계 산하였음.

資料：韓國關稅研究所, 「關稅率表」, 1992

면, 工產品 中에서는 鑛業 및 에너지가 3.85%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는 貴金屬 및 寶石産業이 5.37%, 木材 및 製紙産業이 6.04%, 皮革産業이 6.32%의 순이다. 그 이외에 6%대의 關稅가 부과되는 業種은 非鐵金屬産業과 運送機械産業이고, 이들을 제외한 다른 業種에는 7~8%의 關稅가 부과된다.

이와 같은 工產品의 關稅率 隔差는 그 業種에 低率의 關稅가 부과되는 基礎原料 및 1次 加工品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현행 關稅率 構造가 완전한 對産業 中立性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産業別 關稅率 構造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工產品 中 어떤 品目이 非競爭 또는 競爭原資材 그리고 國內 生産이 불가능한 1次 加工品으로 분류되어 中心稅率보다 낮은 稅率이 적용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例外的으로 8%보다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品目は 乘用 및 貨物 自動車로 10%의 關稅가 부과되며 化學製品 中 「카세인」(casein)에는 20%의 稅率이 적용된다. 21개의 品目으로 구분되는 영화필름과 비디오 녹화필름에는 從量稅가 부과된다.

農·畜産物과 農·畜産物 加工品의 경우 1994년 平均關稅率이 食料部門 17.72%, 飲料部門 25.16%로 工產品보다 크게 높다.

4. 實效保護率構造

지금까지 名目關稅率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法定關稅率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完製品 業體가 中間材를 輸入하여 完製品을 생산하는데 이용하고, 中間材에 대한 平均關稅率이 完製品에 대한 關稅率과 다를 때는 完製品에 대한 名目關稅率만으로는 관세부과의 실질적인 産業保護效果를 파악할 수 없다. 이는 完製品에 대한 稅率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輸入中間材에 대한 稅率이 변함에 따라 完製品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完製品에 대

한 關稅率뿐만 아니라 中間材에 대한 關稅率, 그리고 非關稅障壁까지를 모두 고려하여 각 產業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효과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實效保護率이라고 한다. 本節에서는 우리나라 產業의 實效保護率 構造를 검토해 본다.

實效保護率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第Ⅶ章 1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여기서는 추정된 實效保護率의 構造만 검토한다. 그 동안 洪性德(1992), 崔洛均·申鉉秀(1992), 兪正鎬 外(1993) 등 우리나라 實效保護率에 대한 추정결과가 많이 나왔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따로 추정하지 않고 가장 최근의 연구인 兪正鎬 外(1993)의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實效保護率 構造를 파악해 본다. 兪正鎬 外(1993)의 實效保護率 推定結果는 <表 3-7>에 정리되어 있다⁴⁾.

우리나라 交易財 產業의 1990년 實效保護率은 Corden 방식에 의하면 38.6%, Balassa 방식에 의하면 52.6%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는 交易財 產業 全體가 1990년의 보호하에서 國內販賣를 통하여 창출한 附加價値가 자유무역하에서보다 명목기준으로 38.6% 또는 52.6%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部門別로 보면 農業部門의 實效保護率이 상당히 높으며, 農業을 제외한 交易財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Corden 방식의 경우 19.7%, Balassa 방식의 경우 27.4%이다. 製造業 中에서는 신발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農業部門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 그 이외에

4) 兪正鎬 外(1993)는 ‘觀測實效保護率’과 ‘政策實效保護率’을 추정하고 각각을 다시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과 總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表 3-7>에 나타난 것은 實效保護率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國內販賣에 대한 觀測實效保護率이다. 각각의 實效保護率의 정의와 추정방법, 추정결과에 대해서는 兪正鎬 外(1993)를 참고하기 바란다.

5) Corden 방식과 Balassa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第Ⅶ章 1節을 참고하기 바란다.

〈表 3-7〉 産業別 實效保護率(1990)

(單位：%)

I-O 部門	Corden 方式	Balassa 方式
交易財產業	38.6	52.6
農 業	159.7	183.1
林 業	6.4	6.5
水 產 業	15.0	17.1
鑛 業	-2.1	-2.5
製 造 業	21.2	30.4
食 料	30.8	58.6
飲 料	10.7	15.1
煙 草	99.9	123.9
纖 維	-8.5	-11.0
衣 類	71.0	97.2
革製品	-11.8	-67.7
신 발	143.4	195.5
木 材	-1.2	-1.7
家 具	-2.3	-3.5
종 이	9.4	13.9
印 刷	-7.0	-9.3
産業用化學	13.6	21.0
其他化學	49.4	85.3
石油精製	14.5	16.4
石油·石炭	3.8	6.7
고무製品	15.0	19.0
其他 플라스틱	21.1	29.3
陶磁器	6.2	8.3
유 리	11.1	14.5
其他 非金屬	3.4	4.8
鐵 鋼	0.6	0.8
非鐵金屬	6.3	9.4
組立金屬	9.5	13.4
一般機械	25.0	35.8
電氣機械	77.5	119.5
運送機械	13.0	19.9
精密機械	26.1	37.7
其 他	17.8	23.8
參考：		
農業除外 交易財	19.7	27.4
食料品除外 製造品	20.2	28.2

資料：俞正鎬·洪聖薰·李在鎬，『産業保護와 誘因體系的 歪曲』，韓國開發研究院，1993。

煙草, 衣類, 電氣機械의 實效保護率이 Corden 방식의 경우 70%를 능가하며, Balassa 방식의 경우 90%를 넘었다. 그 이외에 農産物을 제외한 交易財 평균보다 높은 實效保護率을 보여준 업종은 食料, 其他 化學, 其他 플라스틱, 一般機械, 精密機械 등이다. 鑛業, 纖維, 革製品, 木材, 家具, 印刷 등의 實效保護率은 “0”보다 작다. 이는 이들 업종의 製品生産에 필요한 中間材 또는 原料에 대한 保護率이 높아 製品 生産業體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외에도 實效保護率이 상당히 낮은 업종으로는 林業, 종이, 石油·石炭, 陶磁器, 其他 非金屬, 鐵鋼, 非鐵金屬, 組立金屬 등이다.

〈表 3-7〉에 나타난 우리나라 産業의 實效保護率 構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일부 原資材 및 中間材에 대한 낮은 關稅率, 각종 비관세장벽의 존재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交易財 産業全體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法定關稅率보다 상당히 높다. 農業을 제외한 交易財의 實效保護率은 〈表 3-6〉에 나타난 法定關稅率의 약 2배 정도되며 農業의 경우에는 實效保護率이 法定關稅率의 8~9배나 된다. 둘째, 鑛業, 鐵鋼, 非鐵金屬, 木材, 纖維 등과 같이 비교적 原資材的인 성격이 크거나 加工度가 낮은 품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의 實效保護率이 매우 낮거나 “0”보다 작은 반면, 完成財的인 성격이 큰 업종의 實效保護率이 비교적 높으며, 그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輸出品目이었던 衣類, 신발, 電氣機械에 대한 實效保護率은 특히 높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貿易政策이 외국의 原資材 및 中間材를 輸入한 후 이를 組立·加工하여 생산한 完製品을 輸出하는 업체에 유리하도록 행해져 왔음을 시사한다. 또한, 보호율이 높은 업종이 比較優位가 낮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통해서 輸出産業으로 육성되어져 왔음을 시사한다. 셋째, 〈表 3-6〉에 나타난 産業別 法定關稅率도 대체로 〈表 3-7〉의 實效保護率과 유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나 法定關稅率의 産業間 隔差가 대체로 1~2%포인트 수준인 데 비하여 實效保護率의 産業間 격차는 매우 크다. 이는 産業間 實效保護率의 차이는 完製品에 대한 法定關

稅率보다는 中間材에 대한 關稅率 構造, 非關稅障壁 등에 더 크게 의존함을 의미한다.

5. 彈力關稅制度

彈力關稅制度(flexible tariff system)는 國內外 經濟的 또는 政治的 要件의 變化에 따라 關稅率을 伸縮성있게 運營하기 爲해서 制定된 制度로 法律에 依해 일정한 조건과 關稅率의 수준이 定해지면 정부가 그 조건과 범위에 따라 關稅率을 탄력적으로 變경하여 運營하는 제도이다. 彈力關稅制度의 運用목적은 輸入의 急增에 따른 國內産業 被害의 救濟, 國際 原資材 價格의 急騰에 따른 物價上昇의 緩和, 主要資源의 國內生産에 차질이 생긴 경우 輸入을 통한 供給의 增進, 産業構造의 變動에 따라 發生할 수 있는 稅率 不均衡의 是正 等이다.

우리나라에는 1967년에 처음으로 彈力關稅制度가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表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9가지 彈力關稅가 運用되고 있다. 그 중 割當關稅制度는 物價安定을 爲하여 상당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國內産業被害를 구제하기 爲한 方便으로는 緊急關稅, 調整關稅 그리고 割當關稅가 주로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덤핑防止關稅의 運用도 시도되고 있다. 物價平衡關稅는 1984년 上半期 중에 한 번 運用된 적이 있고 相計關稅와 報復關稅는 運用실적이 전혀 없다.

가. 덤핑防止關稅制度의 運用現況

덤핑防止關稅制度란 輸入價格이 輸出國의 國內正常價格 以下인 것을 輸入하는 경우, 그 輸入으로 因하여 國內産業이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國內産業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당해 國內産業을 보호할 必要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부과하는 것으로, 그 物品과 輸出國 또는 輸出者를 指定하여 基本稅率 外에 正常價格과 덤핑價格과의 差額에 相當하는

〈表 3-8〉彈力關稅制度的概要 및 運用現況

(1994年 1月 現在)

단

區分 ¹⁾	要 件	關稅率變更範圍	運 用 現 況
덤핑防止關稅 (法10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반을 우려가 있을 때 	◦ 관세+(정상가격-덤핑가격)	(4개 품목) ◦ 정제인삼 ◦ 불베어탕 ◦ 소다회 ◦ PS 인쇄판
報復關稅 (法11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정·양자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 권익을 부인·제한 ◦ 우리나라에 대한 부담·차별적 조치 	◦ 피해상당액 범위	
緊急關稅 (法12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내외가격차 상당률 범위(재무부령)	
調整關稅 (法12條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보호 ◦ 국산개발물품 보호 ◦ 농산물 등 국제경쟁력 취약물품의 국내시장 및 산업기반 유지 	◦ 기본세율+(100%-기본세율)	(42개 품목) ◦ 면직물 등 14개 품목 ◦ 도미 등 22개 품목 ◦ 나무젓가락 등 6개 품목
相計關稅 (法14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을 때 	◦ 관세+보조금(장려금) 이하 금액	
便益關稅 (法14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나라의 생산물로서 수입되는 것 	◦ 협약규정에 의한 편익의 한도 내	◦ 대상국가: 35
物價平衡關稅 (法15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가격유지를 요하는 특정물품의 수급조절(자액관세) ◦ 국제가격 급등으로 국내가격 안정 저해(활척관세) 	◦ 기본가격-과세가격=관세 ◦ 기준가격 미만: 기본세율 ◦ 기준가-상한가: 단계적 인하 ◦ 상한가 초과: 무세	
季節關稅 (法15條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에 따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내시장 교란 및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재무부령) 	◦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본 관세율에서 40%를 뺀 범위내에서 낮게 부과	
割當關稅 (法16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수급 원활 ◦ 수입가격 급등으로 국내 가격안정 필요 ◦ 유사물품간의 세율불균형 시정 ◦ 특정물품의 수입억제 	◦ 기본세율 ± 40% 이내 ◦ 농림축수산물: 기본세율+내외 가격차 이내	(31개 품목) (인하) ◦ 원유 등 28개 품목 (인상) ◦ 3개 품목(바나나, 대두유, 산화니켈)

註: 1) '法'은 關稅法을 의미함.

資料: 財務部.

금액 이하의 關稅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6년 6월에 GATT의 덤핑防止關稅協定에 가입하고 關聯 規程을 대폭 정비한 이후 1994년 4월 현재까지 16건이 제소되었다. 그 중 피해가 미약하여 기각된 사례가 5건, 輸出價格 引上으로 처리된 사례가 2건, 제소철회가 1건, 덤핑防止關稅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4건, 조치완료사례가 1건이며, 1994년 4월 현재 조사중인 것이 3건이다.

조치가 완료된 유일한 사례는 1991년 8월에 폴리아세탈수지 중 중점도 및 저점도의 一般等級과 비디오/오디오용 特殊等級에 부과된 것으로 미국의 Du Pont社와 Hoechst-Celanese社 및 日本의 Asahi Chemical社의 제품에 적용되었다. 基準輸入價格 以下로 輸入되는 물품에 대하여 基準輸入價格과 輸入申告價格의 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덤핑防止關稅로 부과하였다. 또한 현재 부과중인 품목 및 조사중인 품목은 <表 3-9> 및 <表 3-10>과 같다.

나. 緊急 및 調整關稅制度

우리나라에서는 輸入急增에 따른 國內産業의 피해 발생시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그리고 輸入自由化時 衝擊緩和 手段으로 緊急關稅, 調整關稅 및 올리는 割當關稅를 이용하고 있다. 工產品에 대해서는 주로 緊急關稅와 調整關稅가 적용되며 새로이 輸入이 자유화되어 國內 農業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農產品에 대해서는 올리는 割當關稅制度를 운용하고 있다.

緊急關稅制度는 特定物品의 輸入이 同種 物品 또는 직접적인 競爭關係에 있는 物品의 國內 生産者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當該 被害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필요가 있을 때 國內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比率의 범위 안에서 關稅를 부과하는 것이다.

調整關稅는 産業構造의 變動 등으로 物品間의 稅率이 크게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國民保健, 環境保護, 消費者保

〈表 3-9〉 덤핑防止關稅 賦課中인 品目

	提 訴 者	被提訴者	調査開始日	덤핑關稅率 및 賦課期間
정제인산	한국정밀화학 공업진흥회	(중국) · 上海化工 · 中國化工	1992. 7. 3	· 40.46%~54.28% · 93.1.28~96.2.19 (3년간)
볼베어링	(주)한국정밀	(태국) · NMB Hi-Tech Bearing	1992. 7. 6	· 6.27% · 93.1.28~98.1.27 (5년간)
소다회	(주)동양화학	(중국) · 텐진화학 · 대련화학 등	1993. 3. 6	· 66.11% · 93.12.31~96.12.30 (3년간)
PS인쇄판	(주)웹스트 산업	(일본) · 후지필름 등	1993. 4. 12	· 24.51%~38.16% · 93.12.31~98.12.30 (5년간)

資料: 財務部, 1994. 4.

〈表 3-10〉 덤핑與否 調査中인 品目

	提 訴 者	被提訴者	調査開始日	덤핑關稅率 및 賦課期間
유리장섬유	(주) 한국베트 로텍스	(미국) · 피피지 등 (일본) · 아사히 등 (대만) · 피에프지 등	1993. 9. 15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9.1%~82.4% (94.2.8~94.6.7)
소성인산 석회	(주) 한국특수 사료	(러시아) · Voskre- sens Plant · Krasnodar Plant	1993.11.15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80% (94.3.26~94.7.25)
액체가성 소다	한국소다공업 협회	(러시아)	1994. 5. 13 예정	· 조사개시여부 조사중 예정

資料: 財務部, 1994. 4.

〈表 3-11〉 緊急 및 調整關稅 運用現況

	品 目	關稅率 引上	適 用 期 間
緊急關稅	돼지고기 통조림	30%→50%	90. 5. 19~91. 6. 30
		30%→40%	91. 7. 1~93. 6. 30
	L-LDPE 필름	13%→25%	90. 10. 20~92. 9. 30
	활석분	10%→30%	91. 7. 4~93. 6. 30
調整關稅	전자펌프 등 14개	8%→18~100%	90. 12. 14~94. 12. 31
	나무젓가락 등 6개	8~30%→50~70%	93. 4. 1~95. 3. 31
	설탕 등 22개	3~30%→8~100%	91. 1. 1~94. 12. 31

資料: 財務部, 1994. 4.

護, 國產開發品 保護, 農產物 등 國際競爭力 脆弱物品의 國內市場 및 產業基盤 維持를 위해서 特定物品의 輸入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100%의 범위 안에서 關稅를 부과하는 것이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緊急關稅가 적용되었던 품목은 돼지고기 통조림,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 활석분 등 3개 품목이고, 1994년 1월 현재 나무젓가락 등 42개 품목에 調整關稅가 적용되고 있다.

다. 割當關稅制度

割當關稅는 輸入에 대하여 일정 수량까지는 低關稅率을 부과하고 일 정량을 초과하여 수입할 때는 高關稅率을 부과하는 二重關稅制度로서 올리는 割當關稅와 내리는 割當關稅로 구분된다. 내리는 割當關稅는 일 정 수량 이하의 輸入에 대하여는 基本稅率보다 낮은 關稅를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는 輸入에 대하여는 基本稅率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 활한 物資需給, 輸入價格 急騰時 國內 物價安定, 類似物品間의 稅率 不 均衡 是正 등을 위하여 이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약원제 등 28개 품 목에 대하여 내리는 割當關稅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特定物品의 輸入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

〈表 3-12〉 割當關稅 運用現況

	品 目	關稅率 引下/引上	適 用 期 間
내리는 割當關稅	농약원제 등 28개 품목	2~30%→ 1~10%	94. 1. 1~94. 6. 30
올리는 割當關稅	바나나	30%→90%	94. 1. 1~94. 6. 30
	대두유	8%→20%	94. 1. 1~94. 6. 30
	소결한 산화니켈	2%→5%	94. 1. 1~94. 6. 30

資料: 財務部, 1994. 4.

량까지는 基本關稅率을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여 輸入되는 物量에 대해서는 高關稅率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올리는 割當關稅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나, 대두유, 소결한 산화니켈 등의 3개 품목에 올리는 割當關稅가 적용되고 있다.

라. 便益關稅制度

便益關稅는 國際協約에 의한 關稅上의 혜택을 받지 않는 나라의 물품에 대하여, 外國과의 既存條約에 의한 편익의 범위 안에서 일방적으로 關稅上의 편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表 3-13〉에 나타나는 35개 국가에 적용되고 있으며, 品目は 우리나라의 GATT 讓許 品目에 한정하고 있다.

〈表 3-13〉 便益關稅가 適用되는 國家들

地 域	國 家
1. 아 시 아 (6개국)	아프가니스탄, 부탄, 중국, 라오스, 몽고, 베트남
2. 中 近 東 (8개국)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예멘
3. 大 洋 洲 (3개국)	나우루, 바누아투, 서사모아
4. 아프리카 (6개국)	코모로, 지부티, 에디오피아, 기니, 리베리아, 소말리아
5. 美 洲 (4개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6. 유 럽 (8개국)	알바니아, 안도라, 불가리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러시아, 바티칸

資料: 關稅法 施行令(第4條의 20 別表).

第 II 篇

經濟與件的變化와 關稅政策의 基本方向

IV. 國際化 · 開放化와 關稅政策

최근의 급속한 國際交易秩序의 변화는 우리 經濟의 國際化와 開放化를 요구하고 있다. 國際化와 開放化는 반드시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의 철폐를 수반하기 때문에 國內産業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고려한 독자적인 關稅政策을 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本章에서는 먼저 독자적인 關稅政策의 운용에 制約條件으로 작용하고 있는 최근의 國際交易秩序의 변화와 이로 인한 우리 經濟의 轉換期的 狀況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制約條件下에서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어떻게 設定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본다.

1. 最近의 國際交易 秩序變化

가. 概要

최근의 國際交易의 秩序는 多者主義(Multilateralism)의 強化와 地域主義(Regionalism)의 深化라는 상호 모순된 흐름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중심으로 한 開放的 地域主義(Open Regionalism)라는 새로운 흐름까지도 하여 복잡한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다¹⁾. 國際交易의 秩序가 이렇게 급

1) 多者主義 대신 '世界主義(Globalism)'나 '自由貿易主義'라는 용어가, 地域主義 대신 '블록화'라는 용어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變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 다음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冷戰體制가 와해되어 舊社會主義 國家들이 시장경제에 참여하기 시작함에 따라 西方世界의 경제질서를 유지해 왔던 기존의 GATT 체제가 약화되어 그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둘째, 先進國 經濟의 침체가 계속되고 國際貿易의 不均衡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무역불균형에 처한 美國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강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國際交易秩序의 變化를 추구하고 있다.

먼저 GATT를 중심으로 한 多者主義에 대해 살펴보자. 多者間 交易秩序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GATT를 중심으로 추진된 多者間協商은 우루과이라운드까지 8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6차의 케네디라운드까지 GATT는 주로 세계무역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었던 工產品에 대한 高率의 關稅를 引下하도록 노력함으로써 특히 先進國을 중심으로 關稅 引下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7차의 동경라운드에서는 工產品의 關稅 引下뿐만 아니라 農產物과 非關稅障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으나, 일부 GATT 체약국만이 협정에 가입함으로써 큰 성과는 없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各國간의 貿易不均衡이 심화되고 이에 따라 선진국간에 新保護貿易主義가 고조되면서 GATT 체제가 약화되자 工產品, 農產物, 서비스 등 經濟 全분야에 대해 國際的 規範을 제정하여 多者間 交易秩序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었고, 결국 1986년에 8차의 우루과이라운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동안의 협상기간을 거치면서 특히 美國과 EU간에 農業補助金 減縮問題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으나,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에 UR 協商이 타결되었고, 1994년 4월 15일에 서명절차를 거침으로써 協商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協商參與國이 125개국에 이르고, 協商議題가 경제 全분야에 걸친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世界貿易環境은 이전보다 더 급속히 변화하게 되었다.

한편, GATT 중심의 多者間協商이 타결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는 동안, 유럽연합(EU),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등의 地域主義가 성

행하였다. 地域主義는 多者主義를 보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貿易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自由貿易化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肯定的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배타적 경제블록으로 인해 國際交易秩序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否定的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먼저 EU의 경우를 살펴보면, EU는 현재 12개 회원국에 1992년 기준으로 인구 3억 4천만명, GDP 합계 6조 8천억달러에 이르며 域外國家에 대해서는 排他的인 自由貿易市場이다. 1995년 1월부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4개국 EU에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향후 동구권까지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 전체가 거대한 單一市場으로 통합된다면 域外國들에 대한 差別主義는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NAFTA는 EU 경제권에 대한 대응과 GATT에 대한 실망으로 美國의 주도하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참여하여 1992년 8월에 체결이 합의되었고,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1992년 기준으로 인구 3억 6천만명, GDP 합계 6조 7천억 달러, 교역규모 2천 7백억달러에 달하는 NAFTA는 향후에 칠레 등 中南美 국가까지 편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北美와 中南美를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NAFTA도 EU와 마찬가지로 協定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들을 차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多者間 交易秩序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多者主義와 地域主義라는 서로 상반된 國際貿易秩序의 두 가지 특징 이외에도 최근 APEC이 표방하는 開放的 地域主義는 이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開放的 地域主義는 EU나 NAFTA의 排他的 地域主義와는 달리 域外國에 대해서도 域內國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다소 애매한 개념이다. 이는 EU나 NAFTA 등의 排他的 움직임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경제블록을 형성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自由貿易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1989년에 출범한 APEC의 장래는 상당히 유동적이다. UR이 타결됨에 따라 APEC은 현재와 같은 協力體를 유지하면서 UR 協商의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고, UR 協商의

결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自由化를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태지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경제의 공동번영을 위해 실질적인 經濟協力機構로 확대 발전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²⁾. 이 경우 域內에 이미 존재하는 ASEAN과 같은 排他的 地域主義와 各國의 입장차이를 開放的 地域主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域內國들의 상호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APEC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면, 地域主義의 확산을 억제하고 아·태지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多者主義, 地域主義, 開放的 地域主義가 혼재하면서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國際交易의 秩序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再編될 전망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던 GATT를 대체할 WTO(世界貿易機構)를 중심으로 多者間 交易體制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WTO가 설립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多者間 交易秩序가 확립된다면 地域主義나 開放的 地域主義의 필요성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多者間 交易體制의 강화로 인해 國家間에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先進國들이 블록화를 통해 타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地域主義가 이전보다 더 약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 이외

2)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經濟協力에 대한 공동 이해와 이를 위한 經濟協力體의 방향설정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데 다음과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아·태지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평균치를 상회하는 高度成長을 지속하면서 인구 19억 8천만명, GDP 합계 1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世界經濟의 中心地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아·태지역의 相互依存性이 증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機構가 필요하다. 둘째, EU나 NAFTA가 GATT의 규정을 준수하며 그들의 정책과 관행이 GATT의 감시하에 놓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地域主義의 심화에 대응하는 機構가 필요하다.

에도 先進國들이 일방통행식 通商戰略을 변함없이 추구한다면 WTO와 의 마찰이 예상되며, WTO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多者間 交易秩序가 확립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나.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

1) 推進 背景 및 經過

198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되어 온 世界經濟의 블록화 경향이 地域別로 확대되자 美國은 특히 EU의 統合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여 對外的으로 北美大陸의 經濟的 位相을 제고하고 對內的으로 美國經濟의 活性化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하는 北美市場의 통합을 구상하게 되었다. 한편 멕시코는 外國의 投資를 확대하고 美國市場을 확보함으로써 만성적인 외채누적과 인플레이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할 목적으로 1990년 6월 美國에 自由貿易協定의 체결을 제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캐나다는 멕시코에 의한 美國市場의 잠식을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NAFTA에 참여하게 되었다. 캐나다는 이미 1988년에 美國과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하여 美國市場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였는데, 美國과 멕시코간의 自由貿易協定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이 協定에 참여하여 협상의 초기부터 자국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추진배경하에서 1991년 2월에 美國,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은 NAFTA 체결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그 해 6월부터 協商을 개시하여 1992년 8월 草案에 합의하였다. NAFTA 草案은 노동, 환경 부문의 미비로 美國의 議會 및 環境團體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클린턴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勞動, 環境 및 緊急輸入制限 등에 관한 補充協商이 이루어짐에 따라 1993년 8월에 완전히 타결되었다. NAFTA 출범의 최대관문은 美下院의 비준이었는데, NAFTA는 보호무역주의자, 노동자, 환경보호론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3년 11월

에 美下院을 통과함으로써 1994년 1월에 그 출범이 가능하게 되었다.

2) 協定の 主要内容

NAFTA 協定文은 총 8개 部門, 22개 章, 7개의 附屬書로 구성되어 있다. 協定の 全體內容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각국별로 HS(Harmonized System) 분류상 8단위 기준 商品의 關稅撤廢期間을 즉시 철폐, 5년, 10년, 15년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향후 15년까지 모든 關稅를 점진적으로 인하하여 철폐한다. 둘째, 北美를 원산지로 제조된 제품에 한해서 관세특혜가 주어지고, 관세특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原產地規程을 설정한다. 北美產 原資材를 사용하여 域內國에서 모든 공정을 마쳤거나, 北美產 原資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稅番變更基準 또는 現地附加價值基準을 적용하여 域內國에서 상당한 변형을 거쳤다고 인정되는 제품은 北美產으로 인정한다³⁾. 셋째, 農業, 에너지, 金融 등 각 분야의 市場을 개방한다. 넷째, 각국의 국가안보상, 헌법상의 문제로 유보 또는 예외로 두는 산업을 제외하고는 3國間 投資를 自由化한다. 다섯째, 知的財產權 保護의 경우 기존의 어떠한 雙務協商이나 多者間協商보다 知的財產權 保護를 강화한다.

3) NAFTA가 域內國家의 經濟에 미치는 影響

NAFTA 會員國은 <表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經濟力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GDP를 기준으로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캐나

3) 승용차와 경트럭의 경우를 예로 들면 原產地規程을 철저히 적용하여 地域部品調達比率이 2002년까지 62.5%에 이르는 제품에 한해서만 北美產으로 인정한다.

다는 美國의 10분의 1, 멕시코는 美國의 20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AFTA는 域內國家들의 經濟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美國의 技術과 資本, 멕시코의 저렴한 勞動力, 캐나다의 資源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합함으로써 美國은 서비스 및 尖端產業, 멕시코는 勞動集約產業, 캐나다는 資源關聯產業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에 있어서 NAFTA는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UR 타결이 실패할 경우 이 지역에서라도 自由貿易을 실현시키자는 대안적 機構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컸었다. 美國 企業들은 섬유나 철강같은 노동집약적인 업종을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로 넘기고 반도체, 항공기, 통신장비 등의 尖端產業과 金融, 서비스業에 치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美國 IIE(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낙관적인 전망에 의하면 美國은 NAFTA에 의해 1995년까지 17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까지 멕시코에 대한 輸出은 167억달러, 멕시코로부터의 輸入은 77억달러가 증가하여 90억달러 정도의 貿易收支 黑字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

NAFTA 발효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국가는 멕시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資本과 技術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어서 다른 競爭相對國들보다 유리하게 美國과 캐나다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北美市場에 진출하려는 다른 域外國家들이 멕시코를 北美市場 進出의 전진기지로 삼아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멕시코가 얻는 경제적 이점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캐나다는 美國이나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캐나다는 이미 1989년부터 美

4) Hufbauer and Schott (1993).

〈表 4-1〉 NAFTA 會員國別 經濟現況(1992)

	GDP (億달러)	人 口 (萬名)	勞動者數 (萬名)	最低賃金 (달러/시간)	物價上昇率 (%)
미 국	59,510	25,560	12,520	4.25	3.1
캐 나 다	5,680	2,740	1,340	3.42	5.5
멕 시 코	2,840	8,770	2,610	4.28	18.8

註 :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1일 기준임.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3.

國과 自由貿易協定(FTA)을 맺고 있으며 멕시코와의 交易規模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美國이 NAFTA를 통해 높은 經濟成長을 이룬다면 이들 국가들에 대한 캐나다의 투자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資源, 通信, 生命工學 分野 등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는 캐나다도 NA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4) NAFTA의 將來

美國과 中南美 國家들은 北美와 中南美의 經濟統合에 대해서 이해가 일치하고 있는 편이다. 美國은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 中南美 國家들을 NAFTA 協定에 참여시켜서 汎美洲를 경제적으로 統合함으로써, 향후 동구권까지 확대하여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발전하려는 유럽聯合(EU)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또한 NAFTA의 출범에 자극을 받은 中南美 國家들도 競爭力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하여 經濟統合의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中美 6개국은 1993년 10월 말 經濟同盟設立條約에 조인하였고 멕시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 3개국은 1993년 11월 말에 自由貿易地域을 창설하는 G3 協定에 서명하기로 했다. 특히 칠레, 콜롬비아 등 中南美 國家들은 NAFTA에의

합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北美와 中南美가 경제적으로 統合되어 거대한 市場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아시아·太平洋經濟協力體(APEC)

1) 推進 背景 및 經過

태평양 연안 국가간의 經濟協力は 1967년 韓國, 美國, 日本, 캐나다 등 14개국의 민간인이 참여한 PBEC(太平洋經濟協議會)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당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經濟보다 安保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經濟協力關係는 강력하지 못하였다. 그 후 점차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와 학계의 인사들도 참여하여 1980년에 PECC(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가 창립되었으며,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PBEC 때보다는 좀더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오면서 亞·太地域內의 무역증대와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政府間 協議體 設置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 이유로는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이 지연되고 냉전시대에 西方世界의 經濟秩序를 유지해 오던 GATT 체제가 國際經濟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자 亞·太 國家들은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地域次元의 相互協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 EU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NAFTA 태동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地域主義가 성행함에 따라 특히 수출에 대한 국가경제의 依存度가 높은 亞·太地域의 開途國들은 이에 대한 견제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셋째, 美國의 財政·貿易赤字와 日本, NICS(新興工業國)의 對美黑字가 계속되어 역내국가간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政策協力の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1989년초 韓·濠 頂上會談에서 濠洲가 정부간 협력포럼을 제의했고, 域內 각국간 협의를 거쳐 11월 濠洲의 캔버라에서 12개국에 참여하여 APEC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그 후 1991년 3차 회의에서 중국, 대만, 홍콩이 신규로 가입하였고, 1993년 5차회의에서는 멕시코가 신규로 가입함으로써 會員國은 16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APEC은 외무·통상장관이 참석하는 閣僚會議가 최고기관이며, 그 밑에 次官補級이 참석하는 高位實務會議(SOM: Senior Official's Meeting)와 局課長級이 참석하는 實務會議(WG: Working Group)를 두고 있다.

2) APEC 會員國의 立場

APEC은 다른 경제블록과는 달리 출범 당시부터 開放的 地域主義를 표방하고 있으며, APEC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는 각 會員國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

우리나라는 地域主義가 성행하는 최근의 국제경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속하고 있는 유일한 地域 經濟協力體인 APEC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편이다. 域內에서 貿易 및 投資의 自由化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출시장이 확대되어 상당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우리나라가 APEC의 중간 위치에 있다고 평가하여 仲裁者로서의 역할을 自任하고 있는 입장이다.

美國은 APEC에 대해서 최근까지 소극적인 자세였으나, UR의 부진, EU의 통합, 世界經濟의 침체 등으로 인해 亞·太地域에서의 經濟協力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美國은 APEC을 단기적으로는 EU에 대한 견제기구로 활용하여 UR의 타격을 유도하고자 하였고, 장기적으로는 地域主義를 견제하고 自由貿易體制를 강화하는 한편 域內의 貿易 및 投資를 촉진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政治, 經濟, 安保, 外交問題 등을 모두 망라한 新太平洋共同體로 발전시키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ASEAN 國家들은 APEC이 강력하게 되면 ASEAN의 의미나 역할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美國에게 經濟는 물론 政治, 安保問題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6개국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는 자신이 제창했던 EAEC(East Asia Economic Caucus)의 실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ASEAN 국가들에 대해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日本은 美國이 APEC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데에 반대하여 ASEAN측의 견제를 지원하는 입장이다. 日本은 域內的 貿易 및 投資自由化를 촉진해야 한다는 면에서는 美國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으나, 급진적으로 自由化를 추진하게 되면 美國으로부터 市場開放의 압력이나 對美貿易黑字의 시정을 요구하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濠洲와 뉴질랜드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유럽이나 北美地域 經濟圈에의 참여가 어려움에 따라 동아시아 經濟圈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입장이다. 제5차 閣僚會談에서도 美國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支持者로 APEC의 기능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中國은 APEC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지역 회원국간의 긴밀한 協議體의 구성을 원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中國은 市場經濟體制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빠른 APEC의 협정기구화보다는 완만한 발전을 원하는 입장이다.

3) 第5次 APEC 閣僚會議 및 頂上會談의 成果

① 貿易 投資에 관한 基本文書(TIF)의 採擇

제5차 APEC 閣僚會議는 貿易·投資에 관한 基本文書(TIF: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를 선언형식으로 채택하였다. 美國의 의도대로 貿易 및 投資에 관한 정부간 協約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그

보다 구속력이 약한 宣言의 채택으로 그쳤던 것이다. 그러나 TIF 宣言은 그동안 느슨한 협의체에 불과했던 APEC이 실질적인 地域協力機構로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閣僚會議은 TIF 宣言을 세부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貿易投資委員會(CTI: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를 1994년 1월에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韓國을 이 위원회의 첫 議長國으로 결정했다. CTI는 TIF 宣言이 규정하고 있는 貿易 및 投資部門을 중심으로 다자간무역체제 및 역내경제협의체 등 무역정책, 통관절차 간소화, 투자촉진, 관세율정보망 설치, 시장접근의 행정적 측면개선, 표준의 상호조화,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검토 및 이행방안, 저명인사그룹의 건의사항, 중소기업진흥 등의 주제에 대한 域內會員國間의 실질적인 協力增進을 추진할 전망이다⁵⁾.

5) TIF의 12개 원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亞太지역에서 개방된 지역주의와 시장경제적 상호의존의 발전을 추진한다.
- 협력과 활성화를 통해 貿易·投資를 증진한다.
- GATT 원칙을 준수한다.
- 開放된 地域主義와 多者間 貿易體制를 지지하며 합의에 의해 운영되는 포럼으로서 APEC의 주체성을 고양한다.
- 域內의 역동적인 相互依存性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APEC을 표방한다.
- 발전단계 및 사회정치체제의 차이를 인식하고 開途國의 입장을 고려한다.
- 貿易投資 및 技術移動의 상관관계를 인식한다.
- 개방된 대화와 합의도출을 약속한다.
- 서울 APEC 宣言에 나타난 목표를 추구한다.
- 경제무역투자 기술발전에 있어서 APEC 民間企業部門의 본질적 역할을 인식한다.
- GATT상의 권익을 해치지 않으면서 域內 貿易 및 投資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의 우호적 조속해결을 희망한다.
-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한 APEC 機構化가 全會員國의 이익이 된다고 확신한다.

② 亞太經濟協力の 비전 提示

각국의 著名人士로 구성된 EPG(Eminent persons Group)의 報告書는 향후 APEC의 發展方向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제5차 회의에서는 사실상 이의 채택여부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EPG 報告書는 世界貿易의 自由化, 域內貿易의 自由化, 域內貿易 投資 促進, APEC 制度化 등의 네 분야로 나누어 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APEC을 지금과 같은 느슨한 經濟協力體(Economic Cooperation)가 아니라 강력한 結집력을 가지는 經濟共同體(Economic Community)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EPG 報告書는 閣僚會議에서 논란 끝에 거부됨으로써 APEC을 점차 강력한 經濟共同體로 끌어 올리려는 美國의 의도는 일단 좌절되었고, 그 대신 EPG 보고서 중 會員國間에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각국의 次官補級을 대표로 하는 高位實務者會議(SOM)가 구체적인 施行方案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추후 檢討課題로 남겨 놓기로 하였다. 비록 EPG 報告書의 채택이 거부되었지만, APEC을 經濟共同體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었다는 점과 이에 대해 會員國間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APEC 閣僚會議의 成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UR 關聯 特別宣言

APEC 閣僚會議에서는 UR가 전세계의 경제성장과 번영에 대해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여 1993년 12월 15일까지 UR 協商이 성공적으로 완료하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UR에 참가하는 會員國들의 긴급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와 같이 제5차 APEC 閣僚會議는 UR 타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EU에 대해 UR에 합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④ 最初の APEC 頂上會談 開催

제5차 시애틀회의에서는 美國의 제안으로 첫 頂上會談⁶⁾을 개최하게 되었다. APEC 頂上會談에서는 주목할 만한 成果가 없었으나, 각국의 頂上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亞·太地域의 經濟共同體 設置問題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큰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UR 協商의 年內妥結을 위한 이 지역의 단일 여론을 조성하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4년 인도네시아에서의 제6차 APEC 會議도 頂上會談으로 개최하도록 합의함으로써 향후 頂上會談의 正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 APEC의 將來

APEC의 將來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UR 協商의 결과이다. 만일 UR가 무산되었다면, APEC은 조속한 시일내에 EPG(著名人士그룹)의 報告書를 채택하려는 노력을 하여 域內에서 貿易 및 投資를 自由化하는 經濟共同體의 창설을 시도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UR가 타결됨에 따라 APEC은 현재와 같은 느슨한 協力體를 유지하면서 UR 협상결과를 조속히 이행하고, UR 협상결과가 미흡한 분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自由化를 추진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 또한 APEC은 대외적으로 EU가 역외국에 대해 차별주의를 강화할 경우 이를 견제하는 경제블럭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대내적으로 NAFTA, ASEAN 등이 排他主義를 지양하고 開放的 地域主義를 지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6) 中國이 대만과 홍콩의 참여 때문에 頂上會談으로 명칭짓는 데 반대함에 따라 결국 指導者會議라고 命名하였다.

물론 APEC이 실질적인 經濟協力機構로 확대·발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制限的인 요인으로 인해 조속한 시일내에 經濟共同體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첫째, APEC은 <表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362달러의 中國부터 2만 9,754달러의 日本에 이르기까지 後進國, 中進國, 先進國 등 경제발전의 단계가 상이한 국가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간 이해의 조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둘째, 會員國間에 문화, 종교, 관습적 차이가 너무 커서 쉽게 공감대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 APEC내에 이미 NAFTA, ASEAN 등 排他的인 地域經濟圈이 창설되어 있고 동아시아지역 국가들만의 EAEC(동아시아경제협회의)가 말레이시아에 의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APEC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表 4-2> APEC 會員國의 經濟規模(1992)

	人 口 (萬名)	GDP (億달러)	國民所得 (달러)	輸 出 (億달러)	輸 入 (億달러)
미 國	25,660	59,510	23,192	4,482	5,540
일 本	12,450	37,032	29,754	3,339	2,232
캐 나 다	2,740	5,680	20,731	1,341	1,292
중 國	117,500	4,258	362	805	764
한 국(A)	4,370	2,964	6,749	766	818
호 주	1,760	2,910	16,536	425	437
대 만	2,080	2,063	10,215	814	722
뉴 질 랜드	350	385	10,999	100	86
인 도 네 시 아	18,640	1,267	680	293	273
홍 콩	580	961	16,510	986	1,234
태 국	5,940	1,012	1,703	325	407
필 리 핀	6,430	549	854	98	155
싱 가 포 르	280	460	14,714	635	722
말 레 이 시 아	1,880	584	3,107	407	399
APEC(B)	200,660	119,635	-	14,816	15,081
A/B(%)	2.18	2.47	-	5.17	5.42

註 : 브루나이는 제외함.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3.

라. 우루과이라운드(UR) 協商⁷⁾

1) 推進 背景 및 經過

제8차 多者間協商인 우루과이라운드協상은 GATT 회원국들간에 GATT체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다 델 에스테」 閣僚會議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GATT 會員國들이 GATT體制를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제2차 석유파동에 의한 영향으로 1980년대 들어와서 世界經濟가 沈滯됨에 따라 國際貿易의 확대가 필요하였고, 이를 가로막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국가별 貿易不均衡狀態가 심화되면서 先進國을 중심으로 保護貿易主義가 強化되었고⁸⁾, 이에 따라 國際交易 秩序는 문란해졌으며, GATT 체제는 상당히 약화되었다. 셋째, 美國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比較優位가 있다고 판단하는 농산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보호 등 新分野를 GATT체제로 흡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7차까지의 多者間協商과는 달리 우루과이라운드協상에서는 新分野인 서비스, 知的財産權(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貿易關係 投資措置(TRIM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등이 협상대상에 추가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協상은 1986년 말부터 시작하여 당초에는 1990년 말까지 타결을

7) UR 協商 중에서 關稅와 관련되는 市場接近分野 協商은 다음 節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8) 美國과 EU는 반덤핑 조치적용 등 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하였고, 美國과 농산물 輸出國은 雙務의 통상압력 수단에 의한 무역적자의 해결 노력을 강화하였다.

목표로 했지만, 15개의 협상과제 중 특히 農産物協商에서 美國과 EU간에 합의를 보지 못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고, 다만 15개의 協商議題를 7개로 압축시키는 데 그쳤다. 이같은 7개의 協商課題는 1991년 말 당시 GATT 사무총장 「둔켈」의 최종문안 제시로 다시 市場接近(工産品, 農産物), 서비스, 협정문안 법제화, 최종협상 마무리절충 등 4개의 협상그룹으로 압축되었다. 1993년 12월 15일로 협상시한을 연장한 후에도 협상시한 직전까지 農業補助金 減縮問題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었으나, 1992년 11월 미국과 EU가 農産物에 관한 「블레어하우스」 합의에 도달하였고, 1993년 7월에는 동경에서 열린 G7 頂上會談에서 1993년 말까지 UR 협상을 종료하기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타결의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美國은 公正貿易과 相互主義를 내세우면서 交易對象國들에 일방적인 通商壓力을 가하는 한편, NAFTA의 의회비준과 APEC 頂上會談을 계기로 UR 協商의 타결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 協商을 타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4년 4월 15일에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UR 協商의 종료를 선언하는 最終議定書,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한 世界貿易機構(WTO) 設立協定文, 그리고 政府調達協定文에 대한 서명절차를 거침으로써 7년 동안 계속된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을 마무리짓게 되었다.

2) UR 協商의 主要 合意內容

① 緊急輸入制限措置(Safeguard)

- 輸出國에 대한 차별없이 輸入되는 모든 해당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총 발동기간은 잠정조치발동기간과 「세이프가드」 조치의 최초 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緊急輸入制限措置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수출자율규제 등의 회색조치는 4년 이내에 늦어도 1999년 말까지 철폐한다.

② 반덤핑 (Anti-dumping)

- 輸入國 우회, 제3국 우회 등의 우회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덤핑위원회의 검토에 부친다.
-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관세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③ 補助金·相計關稅 (Subsidies & Countervailing Duties)

- 補助金을 禁止補助金, 相計可能補助金, 許容補助金으로 분류하고 협정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GATT 보조금 상계관세위원회에 해당제도를 통보한다.
- 禁止補助金은 3년(개도국은 8년) 이내에 폐지한다.

④ 貿易關聯投資措置 (TRIMs)

- 國產品이나 국내에서 조달된 제품의 사용이나 구매를 강요하거나, 輸入品의 구매나 사용을 國產品의 輸出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
- 국내생산에 필요한 製品輸入을 제한 또는 최종재 輸出과 연계하거나, 외환조달상의 규제를 통하여 국내생산에 필요한 製品輸入을 제한하거나, 輸出이나 輸出을 위한 판매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⑤ 纖維 (Trade in Textiles & Clothing)

- 1974년부터 유지되어 왔던 MFA(多者間纖維協定)를 10년간 3단계로 나누어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GATT체제로 복귀시킨다.

⑥ 서비스 (Trade in Services)

- 모든 會員國들이 모든 서비스분야에서 타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最惠國待遇(MFN)의 허용을 기본적인 의무로 한다.
- 最惠國待遇는 예외부속서에서 인정된 경우는 10년 이내의 예외화가 가능하다.
- 서비스 提供者數 등의 수량제한적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다.
- 서비스 및 서비스 提供者數에 대한 대우는 內外無差別을 원칙으로 한다.

⑦ 知的財産權(TRIPs)

- 會員國에 대해 最惠國待遇와 內國民待遇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著作權 :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는 著作物로서 보호한다.
- 商標 : 이름, 문자, 숫자, 도형, 색채의 조합과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징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外國의 유명상표들도 보호한다.
- 地理的 表示 : 지리적 원산지와 직접관계가 있는 특성, 품질, 명성이 인정될 경우 그 지리적 표시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 意匠 :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는 意匠을 최소 10년 동안 보호한다.
- 特許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특허의 발명지, 기술분야, 제품의 수출입과 관련하여 차별을 금지한다.
- IC(集積回路)配置設計 : IC의 배치설계, 배치설계가 결합된 IC 또는 이를 내장한 제품을 권리자의 승인없이 상업적 목적을 위해 수입, 판매,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未公開情報 : 상업적 가치가 있고,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 이 영업비밀을 보호한다.
- 라이선스 契約 : 知的財産權을 남용해서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⑧ 紛爭解決節次(Dispute Settlement)

- GATT규정에 의하지 않는 일방적 조치를 금지한다.
- 페널설치를 자동화하고 절차를 신속화한다.
- 채택방식을 한 국가라도 찬성하면 채택되는 「네거티브 컨센서스」 방식으로 변경한다.

3) 世界貿易機構(WTO)의 將來

UR 協商의 타결에 따라 1947년에 발족한 GATT 체제를 대신하여 世界貿易機構(WTO)가 1995년중에 발족하게 된다⁹⁾. GATT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 하나의 협정문에 불과하여 각국간의 貿易摩擦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WTO는 GATT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GATT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기존의 모든 多者間 貿易協定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多者間 貿易協商을 관장하면서 國際貿易의 自由化를 수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WTO에는 최고의결 기관인 閣僚會議 밑에 商品貿易, 서비스貿易, 知的財産權을 다룰 3개의 委員會가 설치되며, 직할기구로 貿易開發委員會, 貿易收支委員會, 豫算會計管理委員會가 별도로 설치되어 貿易紛爭의 해결을 비롯해 다수결합에 바탕을 둔 무역기강 및 관행이 확립되게 된다. 參加國에게는 1개국 1표의 평등한 권리가 부여되고 다수결의 의결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므로 특히 開途國은 先進國의 일방적인 通商壓力을 WTO가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과연 WTO가 설립취지대로 효율적인 多者間 交易秩序를 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이 多者間 交易體制의 강화로 인해 國家간에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블록화를 통해 타결하려고 할 경우나 현재와 같은 일방통행식 通商戰略을 변함없이 추진할 경우에는 WTO와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WTO가 이러한 일방적인 貿易措置들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할 때에는 UR 이후에도 貿易紛爭이 여전할 것이다.

9) 당초 설립키로 합의했던 多者間 貿易機構(MTO)는 美通商法 301條와 같은 국가 간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방적인 무역조치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美國은 MTO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다가 UR 협상 최종 마감시한 직전에 WTO로 개칭할 것을 요구하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2. 韓國經濟의 轉換期的 狀況

가. 國際化·開放化의 進展

우리나라는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정에서 開途國에 대한 先進國의 경제협력의 덕택으로 국제적 역할분담의 부담없이 우리 입장만을 고려한 독자적인 産業, 金融 및 巨視政策의 운용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國際交易의 秩序가 급변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市場開放 措置가 불가피해졌다. <表 4-3>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국제적 위상의 제고로 國際社會에서 일방적인 수혜자의 입장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資本 및 外換의 自由化도 진전되고 있음에 따라 金融 및 巨視政策도 독자적인 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經濟成長에 걸맞게 국제경제 교류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國際的 役割分擔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다.

國際化·開放化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내경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民主化·自律化를 더욱 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과거와 같이 政府에 의한 國內産業 保護와 産業支援은 개방체제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政府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民間企業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國內企業이 국제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外國企業과 공정하게 競爭을 할 수 있도록 상품,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國內制度를 國際規範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國際化·開放化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輸入自由化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을 통해 讓許關稅率을 引下하였다¹⁰⁾.

10) 서비스 분야의 國際化·開放化 現況은 本 報告書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表 4-3〉世界 속의 韓國經濟位相 推移

		1960	1970	1980	1988	1989	1990	1991
GNP	實績(億 달러)	19	81	603	1,728	2,112	2,422	2,808
	順位	37	30	27	18	14	13	12 ¹⁾
1人當	實績(億 달러)	79	252	1,589	3,110	4,994	5,659	6,498
	順位	83	68	53	40	40	2)	2)
交易	實績(億 달러)	4	28	398	1,125	1,238	1,349	1,534 ¹⁾
	順位	51	34	21	12	11	13	11

註: 1) 구 소련을 제외함.

2) 1990년도 이후는 IFS data가 미비됨.

資料: 日本銀行 調査統計局, 『國際比較統計』, 1992.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3.

1) 輸入自由化의 확대

우리나라 輸入政策의 基調는 1978년을 분기점으로 하여 크게 변화하였다. 1978년 이전의 輸入政策은 輸入抑制와 輸入管理를 통하여 國內産業을 보호하고 輸出을 촉진하려는 보호주의적 경향이 강하였던 반면, 그 이후에는 競爭力強化와 通商摩擦의 해소를 위해 輸入開放을 확대해나갔다. 1994년의 輸入自由化率은 〈表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工産品의 경우 99.9%, 農水産物의 경우 92%에 달하여 전체적으로 98.5%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輸入自由化率은 총품목수에서 차지하는 輸入自動承認品目の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輸入自動承認品目 중에서도 輸入先多變化制度, 彈力關稅制度, 非關稅障壁 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 品目이 있으므로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일 것이다. 輸入自由化의 압력은 工産品이나 農産物 등의 交易財에 그치지 않고 우루과이 라운드 協商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金融 서비스 등 모든 경제분야의 市場開放의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表 4-4〉 輸入自由化率 推移

(單位 :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全 體		94.7	95.5	96.4	97.3	97.7	98.1	98.5
農 林 水 產 物	農 產 物	79.0	83.6	87.9	90.6	92.2	93.7	95.3
	畜 產 物	63.3	66.3	70.7	74.0	77.3	80.7	83.7
	林 產 物	94.3	94.7	95.0	97.5	97.5	97.9	97.9
	水 產 物	41.8	49.4	58.2	68.7	74.6	80.4	86.6
	計	71.7	75.9	80.4	84.7	87.2	89.6	92.0
工 產 品		99.5	99.5	99.7	99.9	99.9	99.9	99.9

註 : 수출입공고상 제한품목기준임.

資料 : 商工部, 農林水產部.

2)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關稅率 引下

GATT 발효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이전까지 7차에 걸친 多者間 貿易 協商에서는 주로 先進國의 關稅引下에 주력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先進國의 關稅수준은 크게 인하되어 공산품의 경우 평균관세율이 4%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先進國의 획기적인 관세 인하에 의해 關稅는 수입규제수단으로서의 의의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UR 協商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關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開途國에 대해서 先進國이 관세인하와 관세양허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여 開途國의 關稅引下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開途國은 선진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동시에 自國의 産業도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 市場接近分野의 協商은 工產品·水產物과 農產物의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工產品·水產物에 대한 協商內容을 살펴보자. 이 協商의 目的은 1986년 9월 우루과이 閣僚會談에서 채택된 閣僚宣言 第1部に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첫째,

高關稅 및 加工段階別 關稅率隔差의 완화 또는 폐지를 포함하여 關稅를 적절한 방법에 의해 완화시키거나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폐지한다. 둘째, 모든 棼약국간에 關稅讓許範圍를 확대한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TNC(貿易協商委員會)에서 關稅率引下와 讓許品目的 擴大 수준에 대한 目標를 설정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 1986년의 關稅率을 기준으로 수입액 加중평균의 33% 이상을 인하하고 둘째, 讓許範圍를 대폭 확대하고 셋째, 引上限界稅率(ceiling binding)설정 방식도 인정하고 넷째, 關稅引下方式은 각국이 선택하고 다섯째, UR 출범 이후 자발적 關稅引下도 적절히 고려하고 여섯째, 開途國은 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0년 2월 關稅協商에서는 각국이 關稅讓許計劃案을 GATT에 제출토록 하여, 多者協商段階에서 각국의 關稅양허계획을 多者間 평가하고, 雙務協商段階에서 자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關稅을 인하를 요청하는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2년 3월 GATT에 關稅讓許計劃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水產物은 원칙적으로 1992년 稅率水準으로 양허하기로 하여 총 338개 품목 중 總輸入額의 68%에 해당하는 144개 품목을 양허하였으나, 關稅保護가 필요한 194개 품목은 양허불가로 하였다. 그리고 工產品은 원칙적으로 1990년의 稅率水準으로 양허하기로 하여 총 8,705개 품목 중 總輸入額의 80%에 해당하는 7,245개 품목을 양허하였으나, 尖端産業 및 有望産業 품목, 奢侈性 消費財, 競爭力 微弱 品目 등 1,460개 품목은 양허불가로 하였다. 양허세율은 17.9%에서 12.2%로 인하함으로써 수입액 加중평균으로 31.7%를 인하하고, 양허범위는 1988년의 輸入額 基準으로 23%에서 80%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GATT에 제출한 關稅양허계획이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사회에서의 位相에 비추어 미흡하다는 關稅協商 多者間評價會議 결과와 주요 貿易相對國의 關稅양허확대 요청을 감안하여 1993년 11월 關稅讓許

計劃을 수정·제출하였다. 이 修正案은 1993년 7월 Quad간에 合意¹¹⁾된 8개 분야 無稅化 및 化學製品 關稅調和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범위를 확정한 것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8개 분야 76개의 無稅化 品目中 맥주와 증류주를 제외한 6개 분야 68개 품목과 화학제품 196개 關稅調和중 페니실린, 호르몬, 환식탄화수소를 제외한 193개 품목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讓許稅率은 17.9%에서 10.6%로 인하됨으로써 수입액 가중평균으로 41% 인하되었고, 讓許範圍는 1988년의 수입액기준으로 23%에서 85%로 확대되었다.

1993년 12월 協商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11월 APEC 閣僚會議에서 합의된 8개 분야의 無稅化, 關稅調和 및 關稅引下에의 참여와 12월 초에 美國과 EU간에 합의된 6개 분야의 關稅引下에의 참여를 요청받았다. 우리나라는 목재 분야를 제외한 전자, 종이, 과학장비, 완구, 비철금속 등의 분야에 참여하기로 하고 1993년 12월 15일 協商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합의결과를 반영한 最終關稅讓許計劃을 1994년 3월 11일 GATT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水産物은 총 338개 품목 중 42.6%에 해당하는 144개 품목을 양허하였고, 工產品은 총 8,705개 품목 중 91.8%에 해당하는 7,990개 품목을 양허함으로써 讓許範圍는 1988년의 수입액 기준으로 23%에서 90%로 확대되었다. 讓許稅率은 水産物의 경우 1986년의 19.9%에서 13.6%로 인하됨으로써 수입액 가중평균으로 31.61%가 인하되었고 工產品의 경우에는 1986년의 17.86%에서 8.18%로 인하됨으로써 수입액 가중평균으로 54.2%가 인하되었다. 이에 따라 工產品·水産物의 平均讓許稅率은 1986년 17.9%에서 8.2%로 인하여 수입액 가중평균으로 54.0%가 인하되었다.

11) 1993년 7월 7일 東京에서 美國, 日本, EC, 캐나다간에 합의된 Quad Package를 말하는 것이며, 철강, 건설장비, 농업기계, 의료기기, 가구, 의약품, 맥주, 증류주 등 8개 분야의 無稅化와 화학제품의 關稅調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農産物에 대한 協商內容을 살펴보자. 이 協商의 長期目標은 1989년 4월 제네바 TNC 會議에서 합의되었는데, 그 內容은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農産物 交易體系를 수립하기 위해서 세계농산물 시장에 왜곡효과를 초래하는 農業支援과 保護措置를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하여 감축하고, 市場接近과 輸出競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한 GATT의 規律과 原則을 강화한다는 것이었다. 農産物 部門은 國境措置, 國內補助金 減縮, 輸出補助金 減縮의 세 분야로 協商이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첫째, 國境措置에 관하여는 수량제한 등의 모든 非關稅率障壁을 폐지하고 關稅만을 유일한 보호수단으로 하는 예외 없는 關稅化, 關稅의 段階的 減縮¹²⁾, 그리고 지나치게 높은 關稅로 輸入량이 미미할 경우에는 最小市場接近을 허용하도록 하는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다. 둘째, 國內補助金은 許容補助金과 減縮對象 補助金으로 구분된다. 식량안보 목적의 公共備蓄, 생산감축과 소득안정 목적의 補助, 지역개발 및 환경보존을 위한 補助 등은 許容補助金으로 인정되고, 이 이외의 모든 國內補助金은 減縮對象 補助金으로 분류되어 협정발효 후 6년 동안 20% 감축하되, 開途國은 10년 동안 13.3%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輸出補助金은 협정발효 후 6년 동안 금액과 물량 기준으로 각각 36%와 21%를 감축하되, 開途國은 10년 동안 각각 24%와 14%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2년 4월에 총 1,269개 품목에 대한 讓許計劃을 제출하면서 쌀 등 15個 品目(NTC 品目)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허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공란으로 제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쌀의 關稅

12) 先進國의 경우는 협정발효 후 6년 동안에 품목별로는 최저 15%, 전체 평균 36%의 關稅를 감축하고 開途國의 경우는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에 품목별로는 최저 10%, 전체 평균 24%의 관세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化 例外 등 기존입장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1993년 11월 말에 이르러 關稅化 例外를 주장하던 대부분의 나라가 關稅化 原則을 수용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2월 13일 韓·美 農水産長官 會談에서 이를 수용하고, 12월 14일 UR 多者次元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1994년 3월 말 履行計劃書의 다자간 확인과정에서 政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國營貿易, 從量稅, 限度讓許의 적용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¹³⁾.

最終履行計劃書의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農産物의 平均關稅率은 1995년부터 10년간 26.7%를 引下하기로 하였다. 또한 國營貿易의 대상품목은 쌀, 보리 등 97개, 從量稅 대상품목은 양파, 마늘 등 63개, 限度讓許(Ceiling Binding)의 대상품목은 무, 파 등 71개로 선정되었다. 品目別로 살펴보면, 쌀은 1995년에 국내소비량의 1%인 5만 1,307톤을 輸入하고 10년간 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 2004년에는 20만 5,228톤을 輸入하기로 했다. 보리, 옥수수, 대두 등 111개 품목은 1988~90년의 관세상당치를 기준으로 10% 감축해 양허하였다. 또한 현재 政府가 1조 7,186억원의 減縮對象 補助金을 주고 있는 쌀, 보리, 콩, 옥수수, 유채 등 5개 農産物은 10년간 補助金을 13.3% 축소된 1조 4,9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13) 再協商 또는 履行計劃書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공언했던 農林水産部는 1994년 3월 最終履行計劃書를 제출하면서 1993년 12월에 제출했던 計劃書보다 개방측면에서 훨씬 후퇴한 計劃書를 제출하였다. 이 計劃書가 UR 多者間 검증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당하게 되자 農林水産部는 對內外的으로 國家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나. 比較優位構造의 變化에 따른 國際競爭力 弱화

우리 經濟는 지난 30년간 저렴하면서도 良質인 노동에 힘입은 低附加價値 商品들에 價格優位를 보여왔으나 그 동안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인력부족이 경제민주화와 맞물려 단기간내 급속한 賃金上昇을 초래함으로써 제조업 임금은 아시아권에서는 日本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表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86년부터 賃金上昇率이 勞動生産性 增加率을 계속 앞질러 單位勞動費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달러에 대한 원貨價値는 <表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89년 기간 동안 23.7% 절상되었으며 엔화에 대한 원貨價値도 1988~89년 기간 동안 26.5% 절상됨으로써 원화절상은 賃金上昇과 함께 對外競爭力의 주요한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0년부터 달러와 엔화에 대한 원貨價値는 다시 切下趨勢에 있으나, 상실한 對外競爭力을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 經濟는 급격한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요소의 比較優位 構造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低附加價値 商品들의 가격우위에 입각한 國際競爭力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低賃金を 바탕으로 한 後發開途國과 價格競爭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수준과 고용여건에 걸맞게 하루속히 高度技術産業 내지 尖端産業으로의 産業構造調整이 시급하며, 後發開途國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한 産業의 高度化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表 4-5〉 製造業의 勞動費用 變化推移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名目賃金指數	100	109.2 (9.2)	121.9 (11.6)	145.8 (19.6)	182.3 (25.1)	219.2 (20.2)	256.2 (16.9)	294.4 (15.7)
勞動生産性指數	100	108.4 (8.4)	118.0 (8.9)	132.6 (12.4)	145.6 (9.8)	168.5 (15.7)	195.9 (16.3)	219.3 (11.9)
單位勞動費用指數	100	100.7 (0.7)	103.3 (2.5)	109.9 (6.4)	125.2 (13.9)	130.1 (3.9)	130.7 (0.5)	134.2 (2.6)

註：1. 단위노동비용지수=명목임금지수÷노동생산성지수×100.

2.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資料：統計廳, 『韓國統計月報』, 各號.

〈表 4-6〉 원貨의 換率推移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對달러貨	890.2 (7.05)	861.4 (-3.34)	792.3 (-8.72)	684.1 (-15.82)	679.6 (-0.66)	716.4 (5.14)	760.8 (5.84)	788.4 (3.50)	808.8 (2.44)
對엔貨	443.66 (25.49)	538.38 (17.59)	642.32 (16.18)	547.72 (-17.27)	472.06 (-16.03)	532.44 (11.34)	607.18 (12.31)	663.00 (4.08)	762.30 (12.39)

註：1. 對달러貨는 원/달러이고, 對엔貨는 원/100엔임.

2. ()안은 전년말 대비 변동률임.

資料：財務部, 『財政金融統計』, 各號.

다. 國際交易秩序의 變化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1) NAFTA가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NAFTA의 발효로 北美地域의 域內關稅가 철폐됨에 따라 멕시코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產業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현재 美國이 높은 關稅를 부과하고 있는 석유류,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등 상당수의 業種에서 우리나라 商品의 價格競爭力이 멕시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美國의 제조업체들이 멕시코로 이전해 멕시코 商品의 價格 및 品質競爭力이 강화되어 美國市場뿐만 아니라 世界市場 전체에서 멕시코와의 競爭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域內生産과 雇用擴大를 위해 原產地規程이 강화됨에 따라 멕시코를 통한 迂廻輸出도 어려울 전망이다.

NAFTA로 인한 對美 輸出減少額은 <表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기준으로 전체 輸出額의 2.21%에 해당하는 3억 5,9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產業研究院이 분석하고 있다. 특히 컬러TV, 승용차, 자동차부품의 경우 1994년부터 당장 關稅가 철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3개 품목의 對美 輸出實績은 1992년 51억 달러로 전체 對美輸出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품목의 輸出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등 이미 關稅가 0%인 尖端電子製品은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NAFTA규정에는 域內生産과 雇用擴大를 위해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제품 등에 대해 엄격한 原產地規程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를 통한 迂廻輸出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自動車의 경우 北美産 부품의 사용의무 비율을 1994년에 50%로 높이고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02년엔 62.5%까지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纖維製品은 域內産 원사와 직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컬러TV 등 家電製品도 주요부품의 경우 北美産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은 부품수출업체들에게도 미주지역 수출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NAFTA에 의해 장기적으로 점차 北美 3국간에 교역이 확대되고 經濟가 활성화되면 輸入需要가 늘어 輸出을 확대할 수 있고, 域內의 技術 및 標準分野가 통일됨에 따라 輸出費用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肯定的인 側面도 있다.

〈表 4-7〉 NAFTA로 인한 産業別 對美輸出 影響

(單位：千달러)

	總 輸 出	總輸出減少額
化學 · 플라스틱 · 고무	661,098	258
皮 革	1,040,208	23,575
織 維 · 衣 類	2,529,221	220,842
(衣 類)	(1,926,198)	(210,502)
신 발	1,527,245	57,602
鐵 鋼	892,753	21,039
非 鐵 金 屬	190,763	4,912
機 械	1,971,063	68
電 氣 · 電 子	4,960,957	25,334
自 動 車	859,617	2,668
其 他	1,597,713	2,923
總 計	16,230,638	359,221

註：1992년 기준임.

資料：産業研究院.

2) UR이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UR에 따른 市場開放이 우리 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工產品의 경우는 이로운 방향으로, 農産物과 서비스분야의 경우는 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工產品의 경우 UR에 따른 輸入開放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1986년의 關稅率을 기준으로 輸入額 加중평균의 33% 이상을 인하해

야 한다는 UR 協商의 목표보다 많은 54.0%의 인하를 양허했음에도 불구하고 讓許稅率 8.2%는 우리나라 工產品의 平均關稅率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輸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그 반면 대부분의 國家들은 UR 協商에 따라 關稅率을 인하해야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輸出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것이다.

UR 타결에 따른 우리나라 商品의 輸出入 增大를 분석한 研究로는 金仁哲(1992), 崔洛均(1993), 李載玉(1993) 등이 있다. 金仁哲(1992)은 SMART 프로그램¹⁴⁾에서 제시된 輸入需要彈力性을 이용하여 UR타결에 따른 우리나라 商品의 輸出增大 效果를 분석하였다. UR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工產品의 輸出은 1991년 총수출액 488억달러의 7.3%에 해당하는 34억달러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品目別로는 생활용품 16.7%, 철강금속제품 12.2%, 섬유와 의류 8.0%, 전자 및 전기 4.3%의 순으로 輸出增加를 예상하고 있고, 主要國別로는 美國 6.8%, 일본 7.4%, EC 5.9%의 수출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崔洛均(1993)은 一般均衡演算模型(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UR타결에 따른 輸出增大效果와 輸入增大效果를 분석하였다. UR이 타결될 경우 輸出은 <表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총수출액 743억 달러의 6.7%에 해당하는 49억 6천만달러가 늘어나는 반면 輸入은 1992년 총수입액 596억 3천만달러의 0.8%에 해당하는 4억 5천만달러에 그쳐서 貿易收支가 45억 1천만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品目別로는 제지 및 목제품 36.0%, 금속제품 24.3%, 화학·석유·고무 22.8%의 순으로 輸出增加를 예상하고 있고, 기계 4.6%, 종이·펄프·인쇄 1%, 비금속 제품 0.2%의 순으로 輸入增加를 예상하고 있다.

14) World Bank와 UNCTAD가 공동으로 개발한 UR 關稅協商의 效果分析技法이다.

〈表 4-8〉 UR로 인한 産業別 輸出·輸入 影響

(單位：百萬달러)

産 業	輸 出		輸 入		貿 易 收 支	
	1992實績	影響	1992實績	影響	1992實績	影響
食料品·담배	847	11	2,268	-25	-1,421	36
纖維·가죽	19,874	180	3,797	-2	16,077	182
製材 및 木製品	261	94	917	-15	-656	109
종이·펄프·印刷	612	-24	1,653	17	-1,041	-41
化學·石油·고무	7,901	1,803	10,940	-432	-3,039	2,235
非金屬鑛物	579	17	1,031	2	-452	15
金屬製品	7,344	1,783	7,983	-76	-638	1,859
機械	22,928	1,015	21,756	993	1,172	22
—電子	20,040	887	7,746	354	12,294	533
—一般機械 및 電氣機器	2,888	128	14,010	639	-11,122	-511
運輸裝備	9,408	37	5,429	-1	3,980	37
其他製造業	4,552	45	3,864	-7	688	52
合 計	74,306	4,961	59,638	524	14,670	4,506

資料：崔洛均(1993).

李載玉(1993)은 農産物市場이 개방될 경우 15개 基礎 農産物에 대한 농가의 피해액은 1995~2001년 기간중 7조 8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輸入開放 첫해인 1995년부터 거의 모든 品目の 價格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輸入物量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UR타결에 따른 피해는 개방초기연도보다 후기로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UR에서 논의되고 있는 11개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 건설, 유통, 환경, 금융, 관광, 운송 등 8개 분야 80개 업종의 讓許計劃案을 확정해 놓은 상태인데, 이들 産業은 先進國에 비해 競爭力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여서 開放에 따른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3. 國際化·開放化時代의 關稅政策

國際化·開放化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적으로 關稅의 기능은 財政收入確保 側面과 國內産業保護 側面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각의 측면에서 본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은 第V章과 VI章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國際化·開放化와 관련하여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輸入開放政策의 基調는 1978년 이전에는 輸入抑制과 輸入管理를 통해 國內産業을 보호하고 輸出을 촉진하려는 것이었고, 1978년 이후에는 經濟安定과 國際競爭力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그 후 貿易規模가 1988년에 1천억달러를 돌파하는 괄목할 성장을 이룩하였고, 1986~89년 동안에는 3低好況에 힘입어 貿易收支黑字를 기록함에 따라 輸入開放政策의 基調는 주로 先進國과의 通商摩擦에 대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輸入開放을 더욱 확대하여 1994년의 輸入自由化率은 工產品의 경우 99.9%, 農產物의 경우 92%, 전체적으로는 98.5%의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先進國으로부터 OECD수준에 준하는 關稅引下를 강력하게 요청받아 1989년의 中心稅率을 1988년의 20%에서 15%로 引下하였고, 그 후 매년 단계적으로 引下하여 1994년의 中心稅率은 8%에 도달하게 되었다. 世界經濟속의 우리 經濟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이와 같이 독자적인 關稅政策의 운용이 점차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協商的 農產物 市場接近分野에서 특히 쌀市場 開放問題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工產品·水產物 市場接近分野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 이유는 1986년의 關稅率을 기준으로 輸入額가 年平均의 33% 이상을 引下해야 한다는 UR 協商的 목표보다 많은 54.0%의 引下를 양허함으로써 양허세율은 17.9%에서 8.2%로 引下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關稅率은 이미 그보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關稅引下豫示制에 의해 지속적으로 關稅引下를 추진하지 않았

더라면 일시적으로 대폭적인 關稅引下가 불가피하여 우리 經濟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향후 새로운 多者間協商을 대비해서 계속 關稅引下를 추진해야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볼 때 關稅引下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GATT(1995년부터는 WTO)를 중심으로 自由貿易을 지향하는 多者主義와 무역불균형을 해소하려는 先進國의 雙務主義가 더욱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UR協商이 타결되기 전의 GATT 體制는 자체의 制度的 결함으로 그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域外國에 대해 차별을 하는 地域主義가 점차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美國을 중심으로 한 先進國의 通商政策은 公正貿易을 내세우는 雙務主義를 통해 輸出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UR協商에서 WTO의 設立이 합의됨으로써 國際交易秩序는 기본적으로 自由貿易에 입각한 多者主義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發展의 단계가 서로 다르고,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 自由貿易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關稅가 撤廢되지 않고 非關稅障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先進國으로부터의 市場開放, 關稅引下, 非關稅障壁 撤廢 등의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關稅政策이 장기적으로 關稅引下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關稅引下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다. 先進國의 關稅引下壓力에 대해 우리 產業의 保護 측면이 강조된다면 점진적인 引下가 필요할 것이고, 競爭力強化 측면이 강조된다면 더 빠른 속도의 引下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關稅引下의 速度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產業의 國際競爭力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만, 多者間協商이나 雙務的 貿易協商과도 연계해서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關稅가 產業 전체의 國際競爭力에 비해 이미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引下되어 왔다는 전제하에 앞으로의 協商을 고려한다면, 빠른 속도의 關稅引下는 그만큼 協商의 餘地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V. 財政收入과 關稅政策

1949년에 關稅法이 제정된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財政收入의 確保는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 1950년대에는 戰爭被害의 復舊,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는 經濟開發計劃의 遂行 등을 위해 많은 資金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로는 貿易政策 또는 產業政策으로서의 關稅의 機能이 중시되는 반면 財政收入確保 手段으로서의 關稅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어 1960년대까지만 해도 總租稅收入의 15% 이상을 차지하였던 關稅收入의 比重이 1970년대에는 13%, 1980년대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8%대가 되었다. 1992년과 1993년에는 租稅收入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비중 뿐만 아니라 關稅收入 절대액이 감소되었다.

本章에서는 우리나라의 經濟發展 段階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關稅收入의 減少趨勢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1. 財政收入의 側面에서 본 適正關稅 負擔率

이론적으로 보면, 國際市場에서의 去來價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小規模 國家의 경우, 國內消費 및 生産要素에 消費稅 또는 所得稅를 賦課하는 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財政收入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Dixit(1985)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Dixit는 一般均衡分析方法을 이용하여 開放經濟下에서의 最適租稅政策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最適租稅分析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Ramsey-Diamond-Mirrlees의 模型에 國際貿易을 포함시킨 것으로

〈表 5-1〉 總租稅收入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比重

(單位 : 億圓, %)

	總租稅收入(A)	總國稅收入(B)	關稅收入(C)	C/A	C/B
1961~1970	14,428	11,840	2,172	15.05	18.33
1971~1980	255,441	217,119	33,075	12.95	15.23
1981~1990	1,159,460	1,459,970	120,955	10.43	12.76
1989	261,949	212,341	21,176	8.08	9.97
1990	332,148	268,474	27,654	8.33	10.30
1991	383,550	303,198	34,355	8.96	11.33
1992	446,805	352,184	31,532	7.06	8.95
1993 ¹⁾	500,167 ²⁾	392,439	28,799	5.75	7.34

註 : 1) 暫定推計值임.

2) 1993년의 國稅收入에 1992년의 總租稅收入 / 國稅收入 비율을 곱하여 추정 하였음.

資料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 年度.

財務部, 『'93年 國稅暫定實績』, 1994. 2.

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¹⁾.

社會的 厚生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選擇(the first best)은 $DRS=DRT=FRT$ 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DRS는 國內 消費의 限界代替率(the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in consumption), DRT는 國內 生産에 있어서의 限界轉換率(the domestic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in production), 그리고 FRT는 國際 貿易에 있어서의 限界轉換率(the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1) Ramsey-Diamond-Mirrlees의 模型은 政府가 一定額의 租稅收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最適 租稅構造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achievable through foreign trade)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가 일치될 때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이 달성되는데, 이 최선의 선택은 정부가 임의적인 所得再分配(lump sum transfer)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해진다. 이때 $DRT=FRT$ 를 가능하게 해주는 最適關稅率은 '0'이다.

극히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의적인 所得再分配(lump sum transfer)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社會的 厚生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조건은 $DRS \neq DRT=FRT$ 가 된다. 이때에도 역시 最適關稅率은 '0'이 되므로 政府가 所得再分配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財源은 國內 生産要素 및 消費에 부과하는 內國稅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外部效果 등의 이유로 特定産業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關稅보다 生産補助金を 지불하는 직접적인 政策을 이용하고, 그 財源은 內國稅의 引上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開放經濟下에서의 次善의 選擇(the second best)으로 Ramsey-Diamond-Mirrlees의 次善의 選擇과 부합되는 것이다. 政府가 필요로 하는 資金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內國稅가 關稅에 비해 우월한 이유는 關稅가 生産과 消費의 왜곡을 동시에 초래하는 반면, 消費稅, 生産要素稅 등 內國稅는 生産의 왜곡과 消費의 왜곡 중 한 가지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財政收入의 確保라는 측면에서 볼 때 關稅가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는 특정한 制約條件에 의해서 政府가 필요로 하는 財源의 一部 또는 全部를 關稅를 통해 조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이때에는 $DRT=FRT$ 가 최적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을 第3의 選擇(the third best)이라고 한다.

最善 또는 次善의 선택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政府가 消費稅, 所得稅 등과 같은 內國稅를 통해 필요한 財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財政收入源으로서의 關稅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일부 後進國에서는 行政의 制度가 미비하여 關稅가 거의 유일한 租稅收入源이 될 수도 있다. 즉, 小規模 農業이나 零細한 自營業이 産業의 大部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近代의인 流通構造가 확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內國稅 賦課가 매우 어려워 國境을 넘나드는 商品에 부과하는 關稅가 거의 유일한 政府收入의 源泉이 될 것이다. 그러나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 關稅收入은 점차 內國稅收入으로 대체될 것이며 점차 강화되는 先進國으로부터의 關稅引下 壓力은 이러한 추세를 가속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經濟가 발전할수록 關稅收入의 比重은 약화될 것으로 추측되며 이러한 추측은 <表 5-2>에 의해서 입증된다.

<表 5-2> 經濟發展 程度에 따른 關稅收入의 重要性(1990)

(單位 : 달러, %)

1人當 GDP	1人當GDP平均	關稅의 對GDP 比重	關稅의 對財政收入 比重
1萬 5千달러 以上	21,653	0.23	0.91
5千달러 以上 1萬 5千달러 未滿	9,056	2.12	6.71
1,500달러 以上 5千달러 未滿	2,520	2.38	10.33
1,500달러 未滿	838	3.62	19.92

<表 5-2>는 全世界의 國家 中에서 60개의 國家를 추출하여 所得規模別로 GDP에서 關稅가 차지하는 비중과 總財政收入에서 關稅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것인데 자료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인당 GDP가 1만 5천달러 이상이 되는 國家의 경우 關稅가 GDP 및 財政收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23%, 0.91%로 매우 낮다. 그러나 所得水準이 하락함에 따라 이 비중은 점차 높아져서 1인당 GDP가 1,500달러 미만인 국가의 경우에는 關稅가 GDP의 3.62%를 차지하고 總財政收入에서는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의 關稅負擔能力 推定

財政收入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關稅率 水準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關稅負擔能力을 추정하였다. 먼저 各國의 關稅負擔率이 이에 영향을 미치는 獨立變數들의 變化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 회귀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關稅負擔能力을 推定하였다.

推定模型은 다음과 같다.

$$R = f(X_1, X_2, X_3)$$

R : 關稅負擔率

X_1 : 內國稅 賦課에 대한 제약조건

X_2 : 關稅 賦課에 대한 제약조건

X_3 : 輸入規模

한 國家의 關稅收入은 關稅率과 輸入額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중 關稅率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 첫번째는 內國稅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의 制約要件이며 이에 대해서는 앞 節에서 서술한 바 있다. 두번째는 關稅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의 制約要件이다. 한 국가가, 특히 소규모 국가의 경우,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財政收入을 확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제약요건이 따른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外國의 關稅引下 壓力이라고 할 수 있다. 外國의 關稅引下 壓力이 크면 클수록 關稅負擔率은 낮아질 것이다. 위 式에서는 이 두 가지 변수를 X_1 과 X_2 로 표기하였다. X_3 은 輸入規模를 나타낸다.

關稅負擔率을 나타내는 指標로는 關稅의 GDP에 대한 비율을 이용하였다. 이는 租稅負擔을 나타내는 指標로 租稅收入의 對GDP(또는 GNP)比重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것이다. 內國稅 부과에 대한 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內國稅가 GDP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이용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租稅體系와 行政能力이 발달하여 內國稅로서 필요한 財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때에는 關稅를 內國稅로 代替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理論的으로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內國稅 負擔率이 높다는 것은 租稅體系 및 流通構造가 발달되어 財政收入確保를 위한 關稅賦課의 필요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변수는 關稅負擔率과 負(-)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GDP에 대한 輸出의 比重은 1인당 GDP와 함께 關稅賦課에 대한 제약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었다. 여기서 關稅賦課에 대한 制約은 다른 나라로부터 가해지는 關稅引下 壓力과 그 압력이 유효한 정도를 의미한다. 經濟發展水準이 낮은 後進國의 경우 높은 關稅를 통한 國內産業 保護가 國際社會에서 容認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 交易相對國으로부터 받는 關稅引下 壓力은 거세질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1인당 GDP가 높을수록 外部로부터 받는 關稅引下 壓力이 커서 關稅負擔率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經濟가 발전함에 따라 증가되는 關稅引下 壓力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제의 關稅政策에 반영되는가 또는 이러한 關稅引下 壓力에 대해 壓力을 받는 政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가는 그 國家의 輸出이 國家 經濟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A國이 B國에 關稅引下 壓力을 가할 때 그 壓力의 手段이 되는 것은 B國으로부터 들어오는 A國의 輸入에 대한 制裁이다. 이때 A國으로의 輸出이 B國의 經濟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B國 政府는 A國의 關稅引下 要求를 들어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GDP에 대한 輸出의 比重이 높은 국가일수록 關稅引下 壓力에 대한 抵抗力이 낮으며, 결과적으로 關稅率도 낮을 것이다.

또 하나의 獨立變數는 輸入額의 GDP에 대한 비중이다. 위에서 언급한 內國稅 賦課에 대한 制約條件을 대표하는 變數와 外部的인 關稅引下 壓力과 이에 대한 對應能力을 나타내는 變數들은 關稅率에 영향을 미치

는 變數들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關稅負擔率은 關稅率뿐만 아니라 輸入의 規模에 의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關稅率이 일정하다고 할 때, 輸入規模가 크면 클수록 關稅負擔率이 높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模型을 추정한 연구로는 孫光洛(1993)이 있다. 孫光洛(1993)은 內國稅 賦課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GDP에 대한 內國稅의 비중 대신에 內國消費稅의 비중을 채택하였다. 이는 消費稅와 關稅가 모두 間接稅라는 관점에서 內國消費稅와 關稅의 代替性이 所得稅와 關稅間的 代替性보다 클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代替性的의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國內의 生産要素에 賦課되는 所得稅를 포함하는 內國稅 全體가 關稅의 代替財가 된다. 所得稅制度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所得稅收가 충분히 많아 內國消費稅 收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關稅를 통한 稅收增大의 必要性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本 보고서에서는 內國消費稅 대신에 內國稅 全體의 GDP에 대한 比重을 獨立變數로 채택하였다. 또한 孫光洛(1993)은 關稅賦課에 대한 외부적인 제약요인 중 外國의 關稅引下 壓力이 유효한 정도를 나타내는 輸出의 對GDP 比重을 고려하지 않았다.

全世界 國家들 중에서 60個 國家를 추출하여 횡단면분석으로 위에서 설명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사용된 모든 자료는 IMF의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1992)와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1992)에서 얻었으며, 이 두 資料에 수록된 國家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60개 국가를 추출하였다: (1) 輸入額이 10억달러가 못 되는 국가들은 제외하였다; (2) 1990년의 資料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1990년의 資料가 없는 경우 1989년의 資料를 이용하였으며, 위에서 언급된 變數 中 어느 한 부분 또는 전부에서 1990년 또는 1989년의 資料가 없는 국가들은 제외하였다.

이 60個 國家들의 分布를 보면 1인당 GDP가 1만달러를 넘는 高所得 國家가 18개국이며 1인당 GDP가 2,000달러 이하인 低所得 國家가 22개

국이다. 各 國家의 1인당 GDP, 輸出額, 輸入額, 關稅收入 및 內國稅收入의 對GDP 比重은 <表 5-3>에 수록하였다.

<表 5-3> 租稅負擔率 및 輸出入比重

(單位 : 千달러, %)

	1人當 GDP	輸入/ GDP	輸出/ GDP	內國稅/ GDP	關稅/ GDP
핀란드	27.51	19.67	19.35	30.98	0.28
스웨덴	25.56	24.88	26.32	45.75	0.25
덴마크	25.15	24.93	27.18	39.78	0.02
노르웨이	24.93	25.40	32.25	47.06	0.21
일본	24.26	7.85	9.59	14.17	0.19
독일	23.52	23.27	27.57	29.15	0.00
미국	21.88	9.45	7.20	19.55	0.31
캐나다(89)	21.16	21.58	21.94	19.47	0.71
프랑스	21.02	19.66	18.17	40.63	0.00
오스트리아	20.25	31.15	26.16	34.57	0.52
이탈리아	18.99	16.62	15.56	38.83	0.00
네덜란드	18.53	45.54	47.60	48.23	0.00
호주	17.21	14.04	13.54	25.51	1.04
영국	17.09	22.73	18.88	37.27	0.02
뉴질랜드	12.85	22.07	22.04	41.90	0.91
아일랜드	12.17	48.51	55.72	36.99	3.11
싱가포르	11.96	169.75	147.04	32.72	0.55
이스라엘	11.60	30.53	21.65	45.58	0.47
이란	9.85	2.92	2.85	16.71	1.35
스페인(89)	9.78	18.66	11.42	31.60	0.66
사우디	7.87	46.60	17.37	23.80	4.40
바레인	7.81	95.08	96.36	31.26	2.48
말타	6.62	84.77	48.04	30.62	8.59
한국	5.69	28.62	26.64	16.44	2.13
그리스(89)	5.39	29.88	13.96	34.07	0.05
포르투갈(89)	4.61	41.89	28.11	37.00	0.89
유고슬라비아(89)	4.14	15.11	13.71	2.93	1.33
트리니다드	3.54	28.41	36.37	26.38	0.96
토바고(89)					
헝가리	3.18	26.35	29.03	50.66	2.52
브라질	3.15	4.76	6.63	74.35	0.46
체코슬로바키아	2.90	30.34	26.20	48.53	0.80
남아프리카공화국(89)	2.67	19.38	24.08	27.79	2.60

〈表 5-3〉의 계속

	1人當 GDP	輸入/ GDP	輸出/ GDP	內國稅 /GDP	關稅/ GDP
우 루 과 이	2.67	15.91	20.44	24.73	2.06
베 네 수 엘 라	2.52	14.55	36.01	22.17	1.32
말 레 이 시 아	2.39	69.05	69.42	24.39	2.98
멕 시 코 (89)	2.38	12.18	11.48	17.85	0.94
모 리 투 스	2.21	68.52	50.57	15.10	10.55
파 나 마	2.04	31.10	6.87	26.79	3.00
터 키	1.94	20.54	11.94	18.80	1.18
코 스타 리 카	1.91	35.53	25.55	18.25	4.87
아르헨티나 (89)	1.73	7.63	17.39	12.03	0.49
페 루	1.69	9.52	8.87	7.72	0.88
루 마 니 아	1.62	26.16	15.60	35.11	0.19
시 리 아 (89)	1.59	11.21	16.06	23.51	1.30
튀 니 지	1.55	44.29	28.18	22.61	8.29
태 국	1.38	43.08	29.77	16.29	4.45
파 라 과 이	1.23	24.94	18.22	10.54	1.72
콜 롬 비 아 (89)	1.22	12.66	14.46	10.75	2.11
이 집 트 (89)	1.12	12.47	4.30	31.48	4.55
도미니카공화국	0.99	28.96	10.33	7.73	4.47
요 르 단	0.99	65.90	26.97	26.76	6.60
에 콰 도 르	0.99	17.52	25.54	14.49	2.18
엘 살 바 도 르	0.97	24.70	11.38	8.48	1.15
과 테 말 라 (89)	0.94	19.67	13.17	7.29	2.95
인 도 네 시 아	0.62	19.68	23.14	18.14	1.21
필 리 핀	0.60	35.20	21.78	15.30	4.78
스 리 랑 카	0.47	33.43	24.69	17.99	5.22
인 디 아	0.37	7.81	5.94	10.37	4.04
파 키 스 탄	0.35	18.57	14.07	13.57	5.72
케 나	0.34	26.39	12.67	20.37	3.24

註 : (89)는 1989년도 資料임을 의미함.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2.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2.

본 研究의 推定結果와 孫光洛(1993)의 推定結果는 〈表 5-4〉와 같
이 요약된다. 여기서 GDPPC는 1인당 GDP를 나타내며, TARIFFG,
TAXG, EXPG, IMPG는 각각 關稅收入, 內國稅收入額, 輸出額, 輸
入額을 GDP로 나눈 것이다. DOMTR은 孫光洛(1993)의 추정에서 이
용된 內國消費稅收入의 對GDP 비중을 의미한다.

推定된 計數의 부호들이 모두 예측한 바와 같으며 유의성도 비교적 높다. 가장 낮은 유의수준을 보이는 것이 內國稅收에 대한 계수로서 t값이 약 1.58이다. 이 推定結果에 따르면 한 국가의 (1) 1인당 GDP가 낮을수록, (2) 內國稅負擔率이 낮을수록, (3) 輸出比重이 낮을수록, 그리고 (4) 輸入比重이 높을수록 關稅負擔率이 높다.

〈表 5-4〉 關稅負擔率 推定結果

	孫光洛 (1993)		本 研究	
	係 數	t 값	係 數	t 값
常數項	0.031288	4.641	2.86143	5.302
GDPPC	-0.001885	-4.442	-0.09051	-3.042
TAXG			-0.02929	-4.519
DOMTR	-0.127124	-2.154		
EXPG			-0.08396	-3.391
IMPG	0.040868	2.444	0.09656	1.581
R ²	0.4215		0.48688	
F	11.901		13.04733	
標本數	53		60	

註 : TARIFFG = 關稅收入/GDP (從屬變數)

GDPPC = 1人當 GDP

TAXG = 內國稅 收入/GDP (%)

DOMTR = 內國消費稅 收入/GDP (%)

EXPG = 輸出/GDP (%)

IMPG = 輸入/GDP (%)

위에서 추정한 式이 한 국가의 經濟發展 水準, 輸入比重, 輸出比重, 그리고 內國稅負擔率에 비추어 그 국가의 적절한 關稅負擔能力을 나타내 준다는 假定下에서 우리나라의 1990년 關稅負擔能力을 추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text{실제 關稅負擔率(\%)} = 2.13358$$

$$\text{추정된 關稅負擔率(\%)} = 2.39161$$

이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經濟發展 水準, 輸入比重, 輸出比重, 內國稅負擔率이 類似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關稅負擔率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內國稅賦課에 대한 제약이 없다면 關稅負擔率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제약이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에 잘 반영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는 內國稅 및 關稅賦課에 대한 制約條件에 비추어 지나치게 內國稅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財源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政策的 示唆點

위의 推定結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示唆한다. 첫째, 關稅率 調整을 통해 關稅負擔率을 현 수준보다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의 능력에 비해 지나친 內國稅負擔을 초래하거나 財政收入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平均關稅率을 특별한 이유없이 現行 水準보다 낮추는 것은 財政收入의 確保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一部 品目の 關稅率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한 關稅收入의 변동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輸入需要의 價格彈力性이 낮은 品目에 상대적으로 높은 關稅率을 부과하는 것이 資源 配分の 歪曲을 최소화하고 財政收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結論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 推定이 1990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의 與件變化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本節에서의 논의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최근의 변화는 金融實名制의 實施이다. 金融實名制의 實施는 우리나라 政府의 內國稅 課稅能力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關稅負擔의 필요성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정부가 金融實名制 실시 이후 국민의 稅負擔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內國

稅率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內國稅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므로, 金融實名制 실시로 인한 內國稅 負擔率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關稅負擔率의 인하에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平均關稅率이 1990년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여 최근 關稅收入額 자체를 감소시키는 데 이르고 있는바, 1994년의 關稅負擔率은 1990년의 2.13%보다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VI. 産業政策과 關稅政策

최근 들어 關稅政策은 財政收入 確保의 수단으로 보다는 産業政策으로서의 기능 측면에서 더 강조되고 있다. 그 理由는 第V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關稅의 財政收入 確保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産業政策的 側面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本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內容과 産業構造의 問題點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향후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을 모색해 보고, 마지막으로 産業政策과 連繫強化를 위한 關稅政策의 장기적인 發展方向을 강구해 본다.

1. 産業政策의 概觀

가. 産業政策의 概念

産業政策(industrial policy)에 대한 定義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市場失敗를 보완하여 資源配分の 效率性を 높임으로써 産業構造를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고자 市場에 개입하는 政府의 政策을 말한다. 여기서 市場失敗란 市場의 본질상 完全競爭과 情報의 완전한 公開가 불가능하여 市場機構를 통한 資源配分이 最適이 아닌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政府介入의 가장 중요한 理由가 되고 있다. 産業政策은 정책수단의 목표에 따라 産業構造形成政策, 産業構造維持政策, 産業構造調整政策의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¹⁾, 정책수단의 기능측면

1) 政策手段의 目標에 따른 분류는 Hans-Rudolf Peters (1975) 참조. 國內文獻으로는 李甲銖(1992) 참조.

에서는 경쟁의 촉진과 규제를 다루는 産業組織政策까지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産業政策을 구성하는 네 가지 政策은 각각 다음과 같이 定義될 수 있다. 産業構造形成政策은 幼稚産業이나 有望産業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단기간내에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經濟成長을 이루어 국민경제의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려는 政府의 政策을 말하고, 産業構造維持政策은 특정산업의 價格을 통제하거나 補助金을 지급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생산규모나 고용규모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政府의 政策을 말한다.

産業構造調整政策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産業構造調整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産業構造調整이란 舊産業에서 新産業으로 資源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자원이동의 불완전성에 기인한 轉換費用(transitional cost)이 발생하게 되는데, 轉換費用은 자원이 일시적으로 비고용되는 기간중에 발생하는 사회전체의 생산량의 감소분을 의미하는 社會的 費用(social cost)과 같은 기간 동안에 생산요소 소유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私的 費用(private cost)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私的 혹은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 내지 기업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취하는 정책을 産業構造調整政策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産業構造調整政策은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政府의 調整的 支援만을 말한다. 그렇지만 어떠한 産業政策도 반드시 자원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産業構造調整政策은 新·舊産業의 교체과정에서의 調整的 支援뿐만 아니라 특정산업의 신장이나 축소를 위한 支援과 産業組織政策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²⁾.

2) 이에 따라 최근에 産業構造調整政策은 産業政策의 한 부분이면서도 産業政策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産業組織政策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自由競爭의 市場機能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시장에 개입하여 競爭促進과 規制를 하는 政府의 政策을 말한다³⁾.

나. 産業政策의 國際的 潮流

先進工業國의 전통적인 産業政策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자유시장이론에 바탕을 둔 英美型 産業政策이고, 다른 하나는 獨逸이나 日本과 같이 政府가 市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後發先進國型 産業政策이다. 美國이나 英國의 경우 政府의 경제정책은 전통적으로 産業政策보다는 주로 巨視經濟政策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들 국가들의 産業政策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경제활동에 政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市場의 自由競爭秩序를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産業組織政策이 産業政策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英國이나 美國에 비해 경제가 낙후되었던 獨逸이나 日本의 産業政策의 특징은 外國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고 습득하여 공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政府가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직접 개입하여 支援과 規制를 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工業化를 이루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産業政策은 獨逸과 日本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고, 또한 開途國에 의해 모방되어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들 국가들의 産業政策은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産業構造形成政策과 産業構造維持政策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産業組織論에는 市場에 대한 政府의 개입에 관해서 다음의 두 理論이 있다. Harvard學派는 市場의 실패에 대해 政府가 개입하여 경쟁시장구조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Chicago學派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경제의 효율적 운영이 市場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政府의 개입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先進工業國⁴⁾들은 심각한 不況과 失業으로 인해 斜陽産業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産業政策을 産業構造調整政策의 方向으로 전환해야만 했다. 이와 아울러 주목할 만한 사실은 後發先進國型 産業政策을 사용하는 국가들의 급성장에 위협을 느낀, 英美型 産業政策을 사용하는 국가들도 세계시장에서 市場占有率을 유지하고 競爭力을 회복하기 위해 産業構造形成政策과 産業構造維持政策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美國의 경우는 Economic Recovery Tax Act (1981)의 제정으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租稅支援을 하고 있고, Stevenson-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1980)와 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1984)의 제정으로 기업간의 共同研究를 합법화하는 등 獨占禁止法의 규제조항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英國의 경우도 Industry Act(1972)의 제정으로 개별산업에 대해 政府가 財政支援을 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展開過程

1960년대 이후 부족한 자본, 협소한 시장, 낙후한 기술수준의 여건하에서도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産業政策은 주로 輸出戰略産業에 대한 집중지원의 형태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産業政策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962년에 작성된 제1차 技術振興5個年計劃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政府는 1960~70년대에 機械工業振興法(1967), 造船工業振興法(1967), 電子工業振興法(1969), 石油化學工業育成法(1970), 非鐵金屬工業振興法(1971), 纖維工業近代

4) 여기서 先進工業國은 美國과 英國뿐만 아니라 日本과 獨逸과 같은 後發先進國을 포함한다.

化促進法(1969, 1979) 등의 特別法의 제정을 통해 특정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産業政策을 사용하였다. 이들 산업에 대해 補助金을 지급하고, 金融과 租稅面에서 支援을 하고, 公共料金を 割引해 주는 등 강력한 産業構造形成政策과 産業構造維持政策을 실시하여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政府主導의 일방적인 개입이 일부 市場의 기능을 무시함으로써 심각한 社會的 費用을 발생시킨 것도 사실이다. 즉, 1960~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양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産業構造形成政策과 産業構造維持政策은 한편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특히 1970년대 초반부터 무리하게 시행된 重化學工業育成政策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첫째, 重化學工業의 육성을 위해 대규모의 투자재원과 기술을 거의 대부분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지나치게 海外依存的인 經濟構造를 발생시켰다. 둘째, 重化學工業의 집중적인 육성은 組立·加工 위주의 수출구조를 야기시켰고, 이에 따라 국내 각 산업간에 유기적인 관련이 결여되어 部品·素材産業의 발전이 저해되었다. 셋째, 중화학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한 大企業과 낙후성을 면치 못한 中小企業간의 불균형적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한 政府는 1979년 제2의 석유파동을 계기로 시장개입에 대한 政府의 役割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중화학부문의 經營不實과 과잉투자로 인한 不實化를 막기 위해 1980년 발전설비 및 건설중장비, 자동차, 중전기, 전자교환기, 디젤엔진, 동계련산업에 대한 重化學工業投資調整方案을 발표함으로써 産業政策은 産業構造形成政策과 産業構造維持政策에서 産業構造調整政策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조정 후에도 여전히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의 투자재원조달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후속조치의 부족으로 構造不況産業이 발생하였다. 이후 政府는 1986년에 工業發展法을 제정하여 자동차, 건설중장비, 디젤엔진, 중전기기산업을 競爭力補完分野로 지정하고, 직물, 합

금철, 염색가공업, 무기질화학비료산업을 競爭力喪失分野로 지정하여 金融과 租稅面에서 각각 필요한 지원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企業의 대형화, 독점화 현상에 따라 經濟力集中問題 특히 財閥의 問題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1980)을 제정하게 되면서 產業組織政策도 중요한 產業政策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財閥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나라 產業政策의 중요한 課題가 되고 있다. 政府는 1991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財閥에 대한 業種專門化施策을 시행하였다. 業種專門化施策의 기본취지는 財閥이 과다하게 여러 業種에 참여함으로써 한정된 資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財閥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資源을 主力業體 혹은 業種에 집중함으로써 企業을 大型化하여 國際競爭力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業種專門化施策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부터 시행된 첫번째 施策은 主力業體制度로서 與信管理制度內에서 業種專門化를 추진하려는 것이었고⁵⁾, 1993년 10월에 발표되어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두번째 施策은 主力業種制度로서 與信管理 등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⁶⁾. 두 施策의 차이점은 첫번째 施策은 政府의 市場介入이 주로 與信管理 등 金融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반면에 두번째 施策은 본격적인 產業政策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5) 政府는 1991년 3월 與信管理制度를 개편하여 각 기업집단이 3개 정도의 主力業體를 선정하게 하고, 主力業體에 대해서는 與信規制를 대폭 완화하고 비주력업체에 대해서는 與信規制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집단별 專門化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6) 政府는 1993년 10월, 産業을 15개 業種으로 분류하여 재벌 중 상위 10대 그룹은 3개, 11위부터 30위까지는 2개의 主力業種을 선정하게 하고 주력업종에 속하는 기업 중 해당업종에서 매출액 10% 이상을 차지하는 企業을 主力企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主力業種에 속하는 主力企業에 대해서는 여신관리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하며 해외금융 및 국내직접금융에 있어서 우대하고, 공업입지 및 기술개발관련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 그러나 이러한 方向設定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⁷⁾. 業種專門化施策의 시행으로 自由競爭市場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198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시행되어 온 產業組織政策의 目標과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產業構造의 現況 및 問題點

가. 우리나라 產業構造의 現況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經濟가 高度成長을 하면서 產業構造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부터 工業部門이 農業部門보다 앞서는 產業構造 高度化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雇用側面에서의 產業構造는 이보다 훨씬 늦은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비로소 工業部門이 農業部門을 앞서는 高度化 단계로 이행되었다. 國內總生産에서 차지하는 2次産業의 비중을 <表 6-1>에서 살펴 보면 1961년에는 13.6%에 불과하였으나, 그 후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30%를 상회하였고 1980년대 말부터는 다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3次産業의 成長速度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졌기 때문이다. 3次産業의 비중은 1961년의 45.4%에서 1992년에는 64.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雇用側面에서 보아도 그 비중은 1963년 28.2%에서 1992년 58.5%로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반면 1次産業의 비중은 1961년 39.1%에서 1992년 7.6%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雇用側面에서도 그 비중이 1963년에는 63.1%이었으나 1992년에는 16.0%에 그치고 있다.

7) 이에 대해서는 第4節에서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表 6-1〉 産業構造의 變化

(單位 : %)

	1961 ¹⁾	1966	1971	1976	1981	1986	1990	1991	1992
農林漁業									
生産	39.1	34.9	27.0	23.6	15.6	11.5	9.0	8.0	7.6
雇用	63.1	57.9	48.4	44.4	34.2	23.6	18.3	16.7	16.0
鑛工業									
生産	15.5	20.5	22.3	28.7	31.3	32.6	29.4	28.6	27.7
雇用	8.7	10.8	14.2	21.8	21.3	25.9	27.3	26.9	25.5
(製造業)									
(生産)	(13.6)	(18.6)	(21.0)	(27.6)	(29.9)	(31.7)	(28.9)	(28.2)	(27.3)
(雇用)	(8.0)	(9.9)	(13.3)	(21.3)	(20.4)	(24.7)	(26.9)	(26.6)	(25.2)
서비스·其他									
生産	45.4	44.6	50.7	47.7	53.1	55.9	61.6	63.4	64.7
雇用	28.2	31.3	37.4	33.8	44.5	50.5	54.4	56.4	58.5

註 : 1) 雇用은 1963년 통계임.

資料 : 統計廳, 「主要統計指標」, 各年度.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先進國型으로 변모해 가고 있으나, 2次産業을 기준으로 볼 때는 高度化가 아직도 미흡한 단계에 있다. 〈表 6-2〉에서는 1990년 우리나라의 1인당 國民所得水準과 비슷한 시점인 1970년의 日本 및 西獨의 産業構造를 우리나라의 産業構造와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3次産業의 비중은 61.6%로 日本의 47.2%나 西獨의 40.5%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반면, 2차 산업의 비중은 29.4%로 日本의 46.4%나 西獨의 55.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先進國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이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技術力에 바탕을 둔 製造業主導의 건실한 經濟成長構造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經濟成長構造보다는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製造業의 産業構造를 상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基調가 1970년대 초반부터는 重化學工業을 집중적으로

〈表 6-2〉 主要 先進國의 産業構造

(單位 : %)

	韓 國	日 本	西 獨
1 次 産 業	9.0	6.4	3.8
2 次 産 業 (製 造 業)	29.4 (28.9)	46.4 (37.5)	55.7 (45.3)
3 次 産 業	61.6	47.2	40.5

註 : 日本, 西獨은 1970년 기준이고, 韓國은 1990년 기준임.

資料 : 日本通商省, 『通商白書』.

統計廳, 『主要經濟指標』, 1992.

支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製造業의 成長主導業種은 1960년대의 勞動集約的 輸出産業에서 1970년대 이후에는 重化學産業으로 변동하게 되었다. 〈表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1년 重化學工業의 비중은 輕工業의 비중의 30%에 지나지 않는 23.5%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1970년대의 重化學工業育成政策에 힘입어 重化學工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에는 輕工業 비중의 두 배 이상인 69.2%를 기록하였다. 1961~1990년 기간 동안 輕工業部門 중에서는 식음료품이 36.8%에서 14.0%로, 섬유 및 가죽제조업의 비중이 21.6%에서 9.9%로 크게 위축된 반면, 重化學工業部門 중에서는 반도체, 컴퓨터, VCR, 자동차 등의 급성장으로 인해 전기·전자, 운수장비업의 두드러진 성장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 現況을 輸出商品의 構造推移로 살펴 보면, 重化學製品的 輸出比重은 〈表 6-4〉와 같이 1987~90년 기간중 51.7%에서 62.8%로 높아진 반면, 輕工業製品的 輸出比重은 42.3%에서 33.0%로 낮아져 輸出産業構造가 점진적으로 高度化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先進國에서 成長後期 혹은 成熟期에 도달한 가정용 전자기기, 철강, 반도체, 승용차, 조선산업 등에서 현재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尖端技術 製品에 있어서는 아직 수입대체와 OEM 방식의 생산을 주로 하는 단계에 있으며, 섬유, 신발, 완구 등 先進國

〈表 6-3〉 製造業 業種別 構成比 推移

(單位：%)

	1961	1971	1981	1987	1988	1989	1990
輕工業	76.5	56.9	43.2	35.3	33.2	32.7	30.8
食飲料品	36.8	19.4	15.8	14.6	14.2	14.5	14.0
纖維 및 가죽	21.6	17.4	19.8	13.2	11.7	10.9	9.9
製紙 및 木製品	2.7	2.6	1.5	1.1	1.1	1.1	1.0
종이 및 印刷	6.4	4.9	4.1	3.9	3.9	4.3	4.2
其他 製造業	9.0	12.6	2.0	2.5	2.2	1.9	1.7
重化學工業	23.5	43.1	56.8	64.7	66.8	67.4	69.2
石油化學	7.6	25.4	20.0	19.0	19.5	19.1	19.5
非金屬礦物	3.9	5.6	5.0	4.4	4.5	4.5	4.4
金屬1次製品	2.2	2.8	8.4	6.4	6.2	7.1	7.1
金 屬	2.0	1.3	3.6	3.4	3.2	3.2	3.2
一般機械	3.0	1.3	3.4	4.7	4.9	5.3	5.7
電氣·電子	1.0	3.6	8.6	14.1	15.2	14.3	14.1
運輸裝備	3.2	3.2	6.9	11.5	12.3	12.8	14.2
精密機械	0.2	0.3	0.9	1.2	1.1	1.1	1.0
製 造 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註：부가가치기준임.

資料：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各 年度.

에서 成熟後期에 접어든 產業에서는 後發開途國으로부터 추격이 심한 가운데 製品差別化 分業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다.

지난 20년 간의 輸出商品의 推移를 보아도 우리 產業의 國際競爭力이 輕工業製品에서 重化學製品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에는 수출 1위를 기록한 섬유제품이 전체 수출의 40.8%를 차지하는 등 輕工業製品 위주의 輸出産業構造를 보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기·전자제품이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일반기계 등이 10대 輸出商品으로 등장하고 있어 輸出産業構造가 高度化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日本의 輸出商品構造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重化學工業의 國際競爭力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表 6-4〉輸出商品の構造推移

(單位：%)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次 産品	6.0	5.6	5.5	5.0	4.6	4.3
輕工業製品	42.3	40.2	39.2	38.5	35.5	33.0
纖維類	25.0	23.2	24.3	22.6	21.6	20.5
신발	6.0	6.3	5.8	6.6	5.3	4.2
玩具 및 人形	2.3	1.6	1.4	1.1	0.8	0.5
타이어	1.4	1.3	1.2	1.3	1.3	1.4
重工業製品	51.7	54.2	55.3	56.5	59.9	62.8
電氣·電子	23.8	25.9	27.4	27.4	28.0	28.2
鐵鋼	6.2	6.3	6.9	6.5	6.3	7.0
自動車	6.2	6.0	3.8	3.3	3.2	3.7
船舶	2.4	2.9	2.9	4.3	5.7	5.4
一般機械	2.0	2.0	2.3	2.7	3.3	3.2

資料：韓國貿易協會，「貿易年鑑」，各 年度。

우리나라는 〈表 6-5〉와 같이 1992년에 輕工業製品이 33.0%, 重化學工業製品이 62.7%로, 日本의 輕工業製品 9.5%, 重化學工業製品 87.5%에 비해 重化學工業製品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이다. 특히 日本의 重化學工業製品 중 전기·전자와 수송기계에 대한 輸出規模는 우리나라 총 수출 규모인 766억 달러를 각각 상회하는 774억 달러와 87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1992년의 10대 赤字 品目은 〈表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물 등의 1次産品, 석유를 비롯한 鑛物性 燃料, 목재, 알루미늄 등 原資材, 기계류, 광학기기, 항공기 등 尖端資本財로 나누어진다. 특히 기계류의 적자폭이 73억 3천만달러에 달하여 기술수준이 先進國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6-5〉 韓·日의 輸出商品構造 比較(1992)

(單位：百萬달러, %)

	韓 國			日 本		
	金 額	比 重	增加率	金 額	比 重	增加率
1 次 產 品	3,279	4.3	-1.4	10,269	3.0	10.4
輕 工 業 製 品	25,258	33.0	-0.9	32,103	9.5	7.0
織 維 類	15,710	20.5	1.5	8,590	2.5	8.1
非 織 維	9,548	12.5	-4.3	25,513	6.9	6.6
重 化 學 製 品	48,095	62.7	11.7	297,278	87.5	8.0
一 般 機 械	2,482	3.2	6.2	76,270	22.5	9.7
電 氣 電 子	21,573	28.2	7.1	77,410	22.8	5.0
輸 送 機 械	3,779	4.9	23.6	87,140	25.7	11.8
鐵 鋼 金 屬	7,853	10.2	18.2	21,333	6.3	1.0
化 學 製 品	4,242	5.5	27.5	19,118	5.6	9.4
總 輸 出	76,632	100.0	6.6	339,650	100.0	8.0

註：增加率은 전년 대비 增加率임.

資料：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93.

〈表 6-6〉 10大 赤字品目 現況(1992)

(單位：百萬달러)

	品 目	輸 出	輸 入	貿易收支赤字
1	鑛 物 性 燃 料	1,742	14,636	12,894
2	機 械 類	6,601	13,936	7,334
3	光 學 機 器	807	2,723	1,916
4	木 材	103	1,790	1,687
5	航 空 機	279	1,966	1,687
6	有 機 化 學 品	1,446	2,935	1,489
7	穀 物	1	1,442	1,441
8	鑛 石	20	1,339	1,319
9	木 材 펄 프	-	983	982
10	알 루 미 늄	278	1,120	842

註：1. HS 2단위 기준임.

2.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 기준임.

資料：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1993.

나.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産業은 産業構造上 加工·組立産業과 機械·部品·素材 産業間의 不均衡, 그리고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不均衡이라는 두 가지의 큰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1) 加工·組立産業과 機械·部品·素材 産業間의 不均衡

우리나라 經濟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輸出指向工業化戰略은 비교적 단순한 설비, 기술과 저임금만으로도 組立生産이 가능하고 단기간의 支援으로도 輸出增大 效果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부문에 집중적으로 租稅 및 金融支援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政策下에서 우리나라의 産業은 저임금을 배경으로 주로 完製品을 조립·가공하여 수출하고, 이에 필요한 素材·部品 및 生産施設의 대부분은 해외로부터의 輸入에 의존하게 되는 二重構造的 生産體制를 갖게 되었다. 또한 기초기술과 고부가가치화 기술이 결합된 生産構造를 갖지 못하고, 생산공정에서 주로 조립·가공기술을 중심으로 발전함으로써 設計技術이 낙후되었고, 尖端技術이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이에 따라 完製品 組立·加工 部門은 크게 발전하였으나, 일반기계 등 生産財 部門과 부품 소재 등 中間財 部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데에는 第Ⅶ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초반까지 시행되었던 差等關稅率制度의 영향도 비교적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

機械·部品·素材産業의 낙후는 産業의 競爭力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주로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에 의존함으로써 우리나라 조립업체들의 수출증대에 따른 산업간 파급효과가 日本의 기업으로 누출되고, 이에 따라 對日貿易赤字가 지속되는 構造的 問題點이 있다. 먼저 機械産業의 경우를 살펴 보자. 이 産業은 조립금속,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운송용기계, 정밀기계 등 5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狹義로는

一般機械만을 말하기도 한다. 一般機械産業은 각 産業에서 사용되는 機械를 제조·공급하는 資本財産業으로서 각 産業의 성장발전과 構造高度化, 競爭力強化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一般機械産業의 1992년 對日 貿易收支 赤字는 <表 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억 3천만달러를 기록하여 機械産業 全體의 對日 貿易收支 赤字인 97억 3천만달러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102억달러의 製造業 全體의 對日 貿易收支 赤字와 116억달러의 우리나라 貿易收支 赤字의 主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시급히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一般機械産業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동화 설비 등의 투자확대를 통한 國産化의 촉진이 요망되고 있다.

<表 6-7> 機械産業의 對日 貿易收支(1992)

(單位：百萬달러)

	對 日 貿 易		
	輸 出	輸 入	貿易收支赤字
一 般 機 械	302	5,131	4,829
精 密 機 械	111	872	761
電 氣 · 電 子	1,872	5,405	3,533
運 送 裝 備	141	745	604
計	2,426	12,153	9,727
製造業全體	8,843	19,047	10,204

資料：關稅廳.

다음으로 1992년 우리나라 重化學工業製品 輸出의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2년 對日 貿易收支 赤字의 36.3%를 기록하고 있는 電氣·電子産業을 살펴 보자. 이 産業은 조립 위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核心 및 高價部品の 海外依存度가 높아서 生産 및 輸出의 증대를 위해서는 設備와 部品の 輸入을 늘려야 하는 構造的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表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電氣·電子製品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

당하는 금액이 部品の 輸入에 사용되고 있다⁸⁾. 이에 따라 수출이 증대되어도 산업간 波及效果가 국내산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많은 부분이 先進國, 주로 日本으로 누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表 6-8〉 電氣·電子製品 輸出 및 電子部品 輸入 現況

(單位 : 百萬달리, %)

	1988	1989	1990	1991	1992
電氣·電子製品輸出	16,255	17,087 (5.1)	17,816 (4.3)	20,157 (13.1)	21,573 (7.0)
電子部品輸入	5,414	5,824 (7.6)	6,188 (6.3)	6,973 (12.7)	7,668 (10.0)

註 : ()안은 前年比 增加率임.

資料 : 商工資源部, 「輸出統計」, 各 年度.

商工資源部, 「輸入統計」, 各 年度.

이와 같이 機械·部品·素材産業이 취약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研究開發에 대한 投資가 先進國에 비해 크게 낮아 技術水準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研究開發費의 규모는 1990년에 44억 8천만달리로 GNP 對比 1.91%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日本은 1989년에 790억 7천만달리로 GNP 對比 2.69% 수준을, 美國은 1990년에 1,500억달리로 GNP 對比 2.74%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賣出額 對比 研究開發費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日本과 美國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製造業의 경우 매출액의 2.07%를, 전체산업으로는 매출

8) 總投入額에 대한 輸入中間財의 投入比重을 의미하는 輸入依存度는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우리나라가 1990년에 23.2%를 기록한 반면, 日本은 1988년에 3.0%로 우리나라의 輸入依存度는 日本의 그것에 비해 8배 정도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韓國銀行, 「1990年 産業聯關表」, 1993 참조.

액의 1.88%를 研究開發費로 사용하였다. 반면 日本은 1990년에 製造業의 경우 매출액의 3.3%를, 전체산업으로는 賣出額의 2.7%를 研究開發費로 사용하였고, 美國은 製造業의 경우 매출액의 3.2%를 研究開發費로 사용하였다⁹⁾.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研究開發에 대한 投資가 미흡하여 産業의 부문별 技術水準이 <表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先進國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加工·組立産業과 機械·部品·素材産業間의 不均衡問題는 다음에 논의할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두번째 問題點과 직접적으

<表 6-9> 國內産業의 部門別 技術水準

	技術水準 程度
半 導 體	기억소자부문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 요소기술 자급도(설계기술:40%, 재료기술:10%, 장비제조기술:4% 수준)
컴 퓨 터	선진국의 30~40% 수준 본체와 핵심부품 및 주요기술은 낙후
家電製品	조립생산기술은 선진국의 80% 설계기술은 선진국의 50~60% 차세대 제품의 기반기술은 선진국의 10% 수준 원천기술은 낙후
自 動 車	제품기술(핵심기능부품기술, 신소재기술이 낙후) 생산기술(열처리, 시험검사기술 낙후)
工作機械	설계기술(시스템엔지니어링기술, 자동화기술, 핵심부품설계기술 취약) 설계기술은 선진국과 약 3년의 격차 검사·측정기술은 초정밀 단계가 미흡
造 船	선진국(일본)의 낙후(생산기술:75%, 설계기술:70%, 관리기술:70% 수준)

資料: 科學技術處, 『科學技術年鑑』, 1992.

9) 科學技術處, 『科學技術年鑑』, 1993 참조.

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기계류는 수많은 部品과 素材를 가공·조립하기 때문에 완성기계를 생산하는 大企業이 部品과 素材를 모두 자급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수요패턴이 다양하기 때문에 全製造 과정의 自動化가 곤란하다. 따라서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관관계를 통한 專門化와 系列化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育成이 필수적이다.

2) 大企業과 中小企業간의 不均衡

우리나라는 經濟成長의 과정에서 國際競爭力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가 국내시장의 需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출발한 大企業에 대해 과대한 支援을 하였다. 이에 따라 大企業은 巨大 獨寡占企業으로 성장한 반면, 中小企業은 대기업과 상호보완적인 分業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構造的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資本, 技術, 市場基盤이 취약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市場構造는 獨寡占的 市場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데, 상위 3社의 市場占有率이 50% 이상인 非競爭型 市場이 1989년 현재 62.7%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企業集團에 의한 獨寡占的 市場支配現狀이 두드러진다. 1990년에 지정된 獨寡占 品目이 127개인데 이 중에서 企業集團이 참여하고 있는 업종이 105개로 82.7%를 차지하고 있고, 獨寡占 事業者數는 총 293개인데 이 중에서 企業集團의 系列企業數는 193개로 65.9%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총액이 4천억원 이상인 企業集團은 1987년 32개 企業集團의 509개 계열기업에서 1992년 78개 企業集團의 1,056개 기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¹⁰⁾. 또

10) 그러나 大規模企業集團의 指定基準인 자산총액 4천억원에 의해 지나치게 많은 그룹이 지정됨에 따라 管理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1993년부터는 자산총액 상위 30대 企業集團으로 指定基準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企業集團의 계열기업수는 1993년에는 30개 그룹 604개, 1994년에는 30개 그룹 616개로 줄어들게 되었다.

한 30대 企業集團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1989년 현재 鑛工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出荷額기준으로 35.2%를 차지하고 있다.

〈表 6-10〉 製造業部門의 中小企業 比重 變化推移

		1963	1975	1980	1985	1990	1991
事業體數 (個, %)	中小企業	18,073 (98.7)	21,438 (94.1)	29,779 (96.6)	42,950 (97.5)	67,679 (98.3)	71,105 (98.5)
	大企業	237 (1.3)	1,349 (5.9)	1,044 (3.4)	1,087 (2.5)	1,193 (1.7)	1,108 (1.5)
	計	18,310 (100.0)	22,787 (100.0)	30,823 (100.0)	44,037 (100.0)	68,872 (100.0)	72,213 (100.0)
從業員數 (千名, %)	中小企業	267 (66.4)	534 (37.6)	1,000 (49.6)	1,368 (56.1)	1,864 (61.7)	1,853 (63.5)
	大企業	135 (33.6)	886 (62.4)	1,015 (50.4)	1,070 (43.9)	1,156 (38.3)	1,065 (36.5)
	計	402 (100.0)	1,420 (100.0)	2,015 (100.0)	2,438 (100.0)	3,020 (100.0)	2,918 (100.0)
生産額 (億원, %)	中小企業	977 (58.5)	19,707 (24.1)	115,709 (31.9)	273,043 (35.4)	757,130 (42.7)	917,550 (44.6)
	大企業	692 (41.5)	61,993 (75.9)	247,082 (68.1)	497,286 (64.6)	1,015,958 (57.3)	1,139,440 (55.4)
	計	1,669 (100.0)	81,700 (100.0)	362,791 (100.0)	770,329 (100.0)	1,773,088 (100.0)	2,056,990 (100.0)
附加價值 (億원, %)	中小企業	325 (52.8)	7,159 (27.2)	41,683 (35.2)	100,592 (42.4)	314,319 (44.3)	395,630 (45.8)
	大企業	290 (47.2)	21,122 (72.8)	76,883 (64.8)	166,774 (57.6)	394,926 (55.7)	468,035 (54.2)
	計	615 (100.0)	28,281 (100.0)	118,566 (100.0)	267,366 (100.0)	709,245 (100.0)	863,665 (100.0)

註 : 중소기업의 범위는 1975년까지는 5인 이상 200인 미만, 그 이후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임.

資料 : 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年度.

반면 주로 國內市場을 대상으로 한 中小企業¹¹⁾은 열위의 資本力과 技術力으로 對外競爭力을 갖지 못하고 大企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으며, 산업 전체적으로 基礎基盤技術이 蓄積되지 못하여 우리나라 産業이 품질향상이나 고부가가치의 産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中小企業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事業體數, 從業員數, 附加價値의 比重은 <表 6-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의 98.7%, 66.4%, 52.8%에서 1991년에는 각각 98.5%, 63.5%, 45.8%로 그 비중이 줄어들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까지는 수출확대를 위한 기업규모의 대형화로 인해 中小企業의 비중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中小企業育成施策과 重化學部門에서의 中小企業의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1980년대에 와서 다시 量的인 신장을 이룩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의 中小企業의 量的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中小企業은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저임금 노동에 의존함으로써 <表 6-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生産構造面에서 주로 섬유·의복 및 가죽, 나무·나무제품 및 가구, 종이·인쇄·출판 등 勞動集約的 輕工業産業에서 그 비중을 증대해 왔다. 1975년 이후부터만 본다면 化合物·석유·고무,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등 重化學工業에서도 中小企業의 비중이 증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大企業에 生産額의 70% 내외가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中小企業이 꾸준히 國際化를 추진함에 따라 中小企業의 輸出도 현저히 증가하였고, 수출비중도 상당히 늘어났다. 中小企業의 輸出이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27.8%에서 1990년 42.1%를 기록할 때

11) 中小企業基本法에서는 제조업부문 中小企業의 범위를 업종에 따라 약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從業員數가 300명 이하인 業體라고 정의하고 있다.

〈表 6-11〉 中小企業의 生産比重 變化推移

(單位：%)

	1963	1975	1980	1985	1990
飲 食 料 品	44.3	22.1	34.4	41.7	47.4
纖維·衣服 및 가죽	51.3	21.2	36.7	45.3	63.2
나무·나무製品 및 家具	33.3	24.4	39.5	57.9	65.8
종이·印刷·出版	36.5	45.1	55.1	58.3	60.7
非 金 屬 鑛 物	47.4	38.7	48.8	56.0	65.6
化合物·石油·고무	38.9	17.8	26.0	29.7	37.7
第 1 次 金 屬	38.3	17.3	17.6	19.5	25.7
組立金屬·機械裝備	30.5	25.5	29.1	27.7	34.6
其 他 製 造 業	6.9	35.2	67.4	72.3	74.6
製 造 業 合 計	58.5	24.1	31.9	35.4	42.7

資料：統計廳,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 年度.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후 조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40%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中小企業의 業種別 輸出實績을 〈表 6-12〉에서 살펴보면, 重化學工業에서 차지하는 中小企業의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90~92년 기간 동안 1차산품과 섬유·의복, 생활용품, 기타 제품 등의 輕工業製品에 대한 中小企業의 輸出比重은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증가한 반면, 기계·운송장비, 철강·금속, 전기·전자 등 重化學製品에 대해서는 30% 미만의 낮은 輸出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전자를 제외하고는 그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였다. 따라서 重化學工業 分野에서의 中小企業의 지속적인 成長과 國際化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러나 中小企業은 1990년대 들어와서 經濟成長이 둔화되면서 大企業에 비해 資金, 人力, 技術面에서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980년대 후반의 貿易黑字時代에 발생한 勞使紛糾와 급속한 賃金의 上昇, 圓貨切上 등 內外經濟與件的 급격한 변화로, 이에 대응하려는 우리 산업 전체의 構造調整과정에서 자생력이 없는 많은 中小企業들이 不渡로 쓰러지고 있다. 不渡業體의 수는 1980년대에는 매년 4천개 내외였으

〈表 6-12〉業種別 中小企業의 輸出實績

(單位：百萬달리, %)

	中小企業輸出		總輸出		A/C	B/D
	1990(A)	1992(B)	1990(C)	1992(D)		
1 次 產 品	2,061	2,250	3,288	3,278	62.7	68.6
플라스틱·고무·가죽	1,937	2,530	3,053	3,827	50.6	66.1
纖維 · 衣服	9,409	10,123	14,670	15,710	64.1	64.4
生 活 用 品	3,986	3,288	6,575	5,120	60.6	64.2
化 學 工 業 製 品	761	980	2,336	4,242	17.9	23.1
非 金 屬 鑛 物	430	405	1,489	2,555	28.9	27.2
鐵 鋼 金 屬	1,644	1,508	6,464	7,853	25.4	23.3
電 氣 電 子	4,413	6,398	17,816	21,573	24.8	29.7
機 械 運 輸 裝 備	2,097	2,642	8,590	11,872	24.4	22.3
其 他 製 品	645	552	735	601	87.8	91.8
計	27,383	30,676	65,016	76,632	42.1	40.0

資料：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現況』, 1992.

商工部, 『商工白書』, 1993.

나, 1991년에는 6,159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1992년에는 1만개를 넘었다. 金額基準의 어음부도율은 1988~90년 동안은 0.04% 정도였으나, 1991년에는 0.06%, 1992년에는 0.12%, 1993년에는 0.15%로 크게 높아졌다. 不渡金額도 1980년대에는 매년 1조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1991년에는 3조 7천억원, 1992년에는 7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¹²⁾.

中小企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게 資金難, 人力難, 技術難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中小企業이 資金不足을 겪는 이유는 까다로운 기업공개 요건으로 증권시장을 통한 자기자본조달이 어렵고, 신용력, 담보력 등의 부족으로 大企業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높은 금

12)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他人資金에 대한 依存率을 <表 6-13>에서 살펴보면 中小企業이 大企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92년의 경우 他人資金에 대한 依存率은 中小企業이 59.6%로 大企業의 51.9%에 비해 7.7% 포인트가 높다. 또한 資金調達費用面에서도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있다. 1985년 中小企業의 借入金에 대한 平均利子率은 14.4%로 大企業의 13.3%에 비해 1.1% 포인트가 높았는데, 그 이후에도 매년 1% 포인트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¹³⁾. 中小企業의 他人資金에 대한 依存率과 借入金에 대한 平均利子率이 그 전에도 大企業의 그것보다도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1990년대 초반에 中小企業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內需의 부진과 輸入의 확대로 인한 販賣不振, 販賣代金の 회수지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製造原價의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더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表 6-13> 法人企業의 資金調達 構成比

(單位：%)

	大企業					中小企業				
	1985	1988	1990	1991	1992	1985	1988	1990	1991	1992
自己資金	46.4	69.5	36.9	38.4	48.1	43.4	49.8	36.2	32.1	40.4
(增資)	(6.8)	(9.9)	(4.6)	(3.3)	(4.6)	(6.5)	(8.0)	(8.8)	(6.2)	(6.7)
他人資金	53.6	30.5	63.1	61.6	51.9	56.6	50.2	63.8	67.9	59.6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13)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참조. 1992년에 中小企業의 借入金에 대한 平均利子率은 13.1%, 大企業은 12.3%를 기록함으로써 平均利子率의 차이가 처음으로 1% 포인트 이하인 0.8% 포인트로 떨어지게 되었다.

中小企業이 겪고 있는 두번째 어려움은 人力難이다. 중소기업의 技術·技能人力 不足現狀은 全業種에 걸쳐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기능인력의 부족률은 1980년의 4.3%에서 1991년에는 25.7%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기술인력과 기능인력으로 나누어 <表 6-14>에서 살펴보면, 1991년 기술인력의 부족률은 28.2%, 기능인력의 부족률은 24.9%로 기술인력의 부족이 더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業種別로는 輕工業 중 나무·가구와 重化學工業 중 조립금속·기계·장비의 인력부족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해 低賃金과 열악한 勞動條件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產業構造의 高度化가 진전됨에 따라 中小企業의 人力不足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

<表 6-14> 業種別 技術·技能人力 不足率(1991)

(單位：名, %)

	不 足 人 員			不 足 率		
	計	技術	技能	計	技術	技能
中 小 製 造 業	365,547	11,077	354,470	25.7	28.2	24.9
飲食料品	18,037	1,328	16,709	19.9	55.5	19.0
纖維·衣服·가죽	104,330	1,056	103,274	23.8	27.7	23.8
나무·家具	15,988	249	15,739	32.3	45.4	32.2
종이·印刷·出版	19,251	417	18,834	25.3	19.8	25.4
化合物·석유·고무· 플라스틱	42,639	1,625	41,014	26.6	29.2	26.5
非金屬鑛物	12,057	502	11,555	16.4	15.4	16.5
第1次金屬	7,294	288	7,006	19.4	18.7	19.5
組立金屬·機械·裝備	131,449	4,900	126,549	29.7	26.3	29.9
其他製造業	14,502	712	13,790	25.5	51.5	24.9

註：1. 기술인력은 기사 2급 이상의 자격자이거나, 무자격자로서 대졸 이상 혹은 전문대졸로 경력 3년 이상인 자.

2. 기능인력은 기능사보 이상 기능장까지의 자격자이거나, 나머지 무자격자.

資料：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現況』, 1992.

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人力不足의 문제는 產業構造 高度化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中小企業이 겪고 있는 세번째 어려움은 技術難인데, 이는 주로 앞에서 논의한 두 가지 問題點으로부터 파생하는 問題點이다. 中小企業 중 技術開發投資를 하는 업체는 <表 6-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 현재 전체 中小企業의 10.5%에 지나지 않으며, 賣出額 對比 技術開發費의 비중도 1990년 현재 0.25%로서 1989년 大企業의 2%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한 조사에 의하면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에 대한 活動이 부진한 이유는 資金不足이 22.1%, 技術人力의 부족이 20.3%, 技術開發成果의 불확실이 11.6%, 研究施設의 부족이 8.6%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資金難과 人力難이 技術難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技術開發은 資金과 技術人力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中小企業의 활발한 技術開發을 위해서는 中小企業이 資金調達이나 金利面에서 大企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技術人力의 양성과 교육을 위한 政策支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表 6-15> 中小企業의 技術開發投資 推移

	1985	1987	1988	1989	1990
技術開發 投資業體數 (個)	5,630	7,522	9,821	5,962	6,701
全體 中小企業對比 (%)	14.0	15.7	18.5	10.3	10.5
技術開發 投資額 (億원)	652	1,086	1,655	1,196	1,889
1社當 平均投資額 (百萬원)	11.4	14.4	16.9	20.1	28.2
賣出額對比 投資率 (%)	0.22	0.22	0.29	0.19	0.25

資料: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現況』, 1992.

14)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現況』, 1992.

3. 産業政策의 當面課題

가. 政府役割의 再定立

對內外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産業發展을 이룩하기 위해서 향후 우리나라 産業政策은 第2節에서 제기되었던 産業의 構造的인 問題點을 해결하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産業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政府의 役割을 再定立하는 問題이다. 우리나라는 이 시점에서 後發先進國型 産業政策을 계속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英美型 産業政策의 方向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인가를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産業政策의 국제적 조류는 第1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英美型 産業政策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後發先進國型 産業政策을 가미하는 경향이 있고, 後發先進國型 産業政策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政府의 개입을 축소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後發先進國型 産業政策을 사용하던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부터 市場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産業組織政策이 중요한 産業政策으로 등장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政策方向이 경제이론 측면에서 올바른 方向이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産業政策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촉진과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産業組織政策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市場의 競爭的 秩序가 확립되어야 함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方向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現時點에서 市場의 기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政府의 支援과 規制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버려야 할 것인가 하는 疑問은 여전히 남아있다.

産業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政府의 市場介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産業組織政策은 과도한 經濟力集中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인데, 問題는 이러한 産業組織政策의 目的을 달

성하면서도 産業政策¹⁵⁾의 주요한 目標인 國際競爭力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産業政策은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産業組織政策과 서로 상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¹⁶⁾. 産業組織政策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産業政策으로는 199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業種專門化施策을 들 수 있다. 業種專門化施策은 우리나라 先導企業의 자산규모가 세계일류기업의 4~10%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財閥의 자원을 광범위한 업종에 분산하는 현재의 企業戰略을 지양하고 내부자원의 집중을 통하여 내실있는 소수의 기업을 키워 우리 産業의 競爭力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業種專門化施策이 올바른 産業政策의 方向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異見이 있을 수 있다. 첫째, 財閥이 非關聯多角化를 추구하는 이유는 業種間 서로 다른 경기사이클이나 業種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危險을 分散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業種專門化施策은 主力業體의 선정이 政府에 의한 進入障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 경쟁우위의 원천이 변할 때 主力業體를 신속히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점, 산업별로 上位 大企業의 규모가 커지게 되어 市場集中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國內市場에서의 치열한 경쟁없이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의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어 1981년부터 꾸준히 시행해 온 産業組織政策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 셋째, 1991년 與信管理制度下의 業種專門化施策이 시행되자, 30대 財閥이 막

15) 여기서 産業政策이란 政策手段의 機能側面에서 분류된 産業組織政策을 제외한 나머지 産業構造形成政策, 産業構造維持政策, 그리고 産業構造調整政策을 의미한다.

16) 産業政策과 産業組織政策間의 이와 같은 상충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國內需要의 규모가 작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石油化學業에 집중적으로 主力企業을 선정함에 따라 過剩投資된 사업에 참여하는 企業들에게 資金配分の 우선권이 주어지는 모순이 발생했는데, 199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業種專門化施策 下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된다면 심각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세 가지 理由 때문에 政府가 기업의 多角化 行爲를 直接 規制하는 것은 競爭制限的 市場介入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政策方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業種專門化施策의 例와 같이 政府의 직접적이고 지나친 介入은 문제가 있겠으나, 아직까지 市場의 失敗가 산업전반에서 발견되고 있고 국제경쟁력이 낮은 産業構造를 보이고 있는 우리 經濟의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政府의 介入을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政策의 育成이 절실한 분야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政府의 介入이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 대신 政府의 개입은 産業이나 企業에 직접 介入하는 것이 아니라 市場競爭이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市場失敗 분야에 대해서는 企業 스스로 市場失敗를 교정할 수 있도록 하고, 政府는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産業政策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企業行動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産業政策의 基本方向

우리나라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은 기본적으로 市場競爭의 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産業組織政策을 基調로 하면서도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政策을 가미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産業政策의 基本方向을 설정함에 있어서 制約條件으로 작용하는 것이 UR의 補助金·相計關稅協定이다. UR 協定은 補助金에 해당하는 産業支援制度를 貿易歪曲 効果의 크기에 따라 禁止補助金, 相計可能補助金, 許容補助金으로 분류하고 각각 상이한 규제와 의무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特定性

(specificity)이 없는 政府의 지원이나 特定性이 있더라도 研究活動, 地域開發, 環境保護 등에 대한 政府의 지원은 許容補助金으로 분류되어 허용되지만, 그 이외의 지원은 폐지 혹은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產業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國內產業의 피해를 最小化하면서도 產業支援制度의 效率性을 극대화하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制約條件下에서 우리나라의 產業政策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方向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機械·部品·素材產業과 尖端技術產業¹⁷⁾ 등 有望產業의 育成을 위한 합리적인 產業構造形成政策의 추진이 필요하다. 機械·部品·素材產業의 특징은 第2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순가공과 조립에 주로 의존하는 大規模 企業型보다 주문생산에 의존하고 설계와 정밀가공이 필요한 中小企業型이 많다는 점이다. 이들 產業의 技術은 선진국으로부터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研究開發投資를 늘려 직접 開發해야 하는 기술이므로 先進國 중 특히 日本의 中小企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中小企業은 大企業에 비해서 資金力, 人力, 技術力, 情報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므로 政府의 적극적인 介入이 요청된다. 또한 尖端技術產業의 경우에는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할 정도로 投資規模가 큰 반면, 投資危險은 매우 높기 때문에 政府의 선도적인 역할과 적극적인 支援이 없이는 國際競爭力을 갖기 어렵

17) 尖端技術產業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집약적 產業이며 技術革新의 속도가 빠르다. 1980년대 중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 의한 技術革新으로부터 시작하여 新素材, 生命工學 등의 技術革新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고 이들 尖端技術의 응용범위가 확대되어 새로운 製品들이 속속 開發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섬유, 철강, 조선, 화학, 기계 등의 在來產業에도 광범위하게 응용됨으로써 방대한 市場創出力을 지니게 되고, 향후 全產業에 걸쳐 國際競爭力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競爭力 確保를 위해서는 尖端技術產業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다. 그러나 機械·部品·素材産業과 尖端技術産業을 지원함에 있어서 政府는 개별 産業이나 企業에 대한 直接的인 介入은 가능한 지양하고, 간접적이고 一般的인 介入을 한다는 原則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¹⁸⁾.

産業政策의 두번째 基本方向은 構造不況産業의 退出合理化와 産業內 構造調整 등 斜陽産業의 合理化를 위한 효율적인 産業構造調整政策의 추진이다. 1980년대 초의 重化學投資調整, 1984년의 構造不況業體의 合理化措置, 1986년 이후 工業發展法에 의한 業種別 合理化 指定 등을 보면 업종 선택과정이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恣意的이었던 측면이 많았다. 그러나 향후 斜陽産業의 조정에 있어서는 民間企業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고, 政府는 원활한 조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社會的 費用을 최소화하는 역할에 한정하여 개입한다는 基本原則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後發開途國의 추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勞動集約的인 産業의 경우에도 産業內 構造調整을 통해서 技術集約産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租稅·金融支援政策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租稅·金融上의 支援 이외에도 斜陽産業으로부터 발생하는 失業勞動力이 쉽게 成長産業에 재배치될 수 있도록 전직 교육, 기술재교육 등의 雇用對策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8)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政府의 介入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開發이 가능하고 競爭力을 발휘할 수 있는 戰略的 部門을 기업과 전문가의 참여하에 선정하여 그 發展方向을 제시한다. 둘째, 租稅·金融支援은 機械·部品·素材의 技術開發과 尖端技術開發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 國際競爭力의 강화를 유도한다. 셋째, 이러한 技術開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政府의 역할을 良質의 研究開發人力의 養成에 가장 역점을 둔다. 즉, 政府는 인력개발을 위한 中長期 計劃을 수립하여, 大學의 정원관리를 産業社會의 발전방향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인력양성기관인 大學·研究所·企業들에 대해 적극적인 支援을 하고, 부족한 技術人力의 양성을 위해 產·學·研 連結體系를 구축한다. 넷째, 공정한 都給去來秩序의 확립으로 公正去來制度의 운영을 강화하고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원활한 垂直的 協力關係를 유도한다.

4. 産業政策 機能側面에서의 關稅政策

가. 關稅를 통한 産業保護의 理論的 根據: 保護貿易理論

關稅나 非關稅障壁이 없는 自由貿易이 關稅下에서의 貿易보다 國民 厚生을 더 크게 한다는 自由貿易論은 국제무역의 理想으로 오래 전부터 인정되고 있다. 自由貿易論은 「리카도」(Ricardo)의 比較生産費原理에 입각하여 産業革命을 이룩한 英國에서 19세기에 구체화된 古典學派 貿易理論이다. 이 理論에 따르면 국가간에 比較生産費差가 존재할 경우 比較優位論에 따라 각국이 외국에 비하여 유리한 財貨에 각각 特化하여 貿易을 개시하면 生産자원의 合理的 配分이 실현되어 生産총량이 증가하고, 生産요소가 절약되며, 소비자의 이익이 실현되어 經濟的 厚生이 증대된다는 것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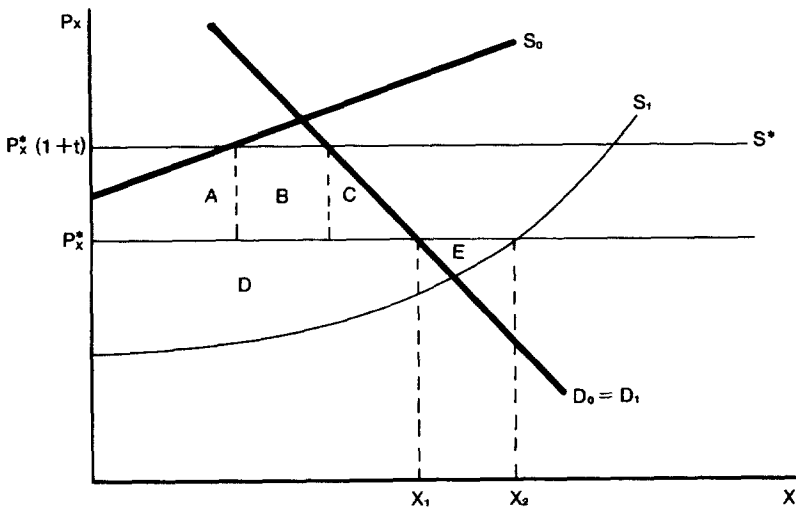
그러나 경제적으로 낙후된 後進國이 先進工業國과 무역을 하게 되면 資本과 技術이 풍부한 先進工業國은 부가가치가 높은 産業에, 資本과 技術이 부족한 後進國은 부가가치가 낮은 産業에 特化하게 되어 불평등한 國際分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分業下에서는 貿易으로부터 발생하는 利益이 先進工業國에 집중되어 富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고, 工業化도 달성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自由貿易論에 반대하면서 關稅를 통해 國內産業을 保護해야 한다고 주

19) 그러나 古典學派貿易理論은 몇 가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比較生産費原理은 完全競爭이나 산업간 國內要素의 完全移動性 등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그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古典學派 貿易理論의 比較優位의 개념은 정태적인 개념으로 自由貿易이 이루어지면 각국의 産業에 있어서 生産特化가 고정된다는 것인데, 현실에서는 장기적인 경제발전단계에서 각국의 比較優位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장한 保護貿易理論이 獨逸을 비롯한 19세기의 後發工業國에서 대두되었다. 保護貿易理論의 대표적인 것이 幼稚産業保護論인데, 이는 19세기 초반 獨逸의 「리스트」(List)에 의하여 체계화된 理論이다. 이 理論에 따르면 현재에는 國內의 生産기반이 허약하여 外國의 大企業과 경쟁할 능력이 없으나 장래에는 外國과 경쟁할 수 있는 産業을 선정하여 同 産業의 生産費가 충분히 하락하여 國際競爭力을 확보할 동안은 政府가 高率의 保護關稅를 부과함으로써 同 産業을 保護·育成해야 한다는 것이다.

幼稚産業에 대한 政府介入의 필요성을 [圖 6-1]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S_0 와 D_0 는 각각 X財에 대한 현재의 國內供給曲線과 國內需要曲線을 나타내고, S^* 는 무한대의 供給彈力性을 가진 外國의 供給曲線을 나타낸다. 國內供給曲線이 국제가격 수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自由貿易이 개시되면 國內生産量은 전혀 없게 되고, 國內消費量은 전량 수입해야 한다. 현재는 기술수준이 낮아서 生産비가 높지만 일정기간 동안 X財의 수입에 t만큼의 保護關稅를 부과함으로써 다음 期에는 國內供給曲

[圖 6-1] 保護貿易政策의 正當性



線이 S_1 으로 이동하여 국제시장에서 오히려 X_1X_2 만큼 수출을 할 수 있다면 政府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다음 期의 生産者 剩餘 즉, 사각형 D와 삼각형 E의 합이 關稅가 부과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재의 厚生 損失 즉, 삼각형 A와 C의 합보다 크다면 保護貿易政策은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幼稚産業保護를 위해서 政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理論的 根據로는 앞에서 말한 國際競爭力의 確保 이외에도 이 産業이 생성되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外部經濟를 들 수 있다. 幼稚産業에 속하는 企業은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流通産業이나 部品·素材産業 등과 같은 他産業의 발달을 자극하여 他産業의 費用節減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外部經濟를 발생시키는 企業은 그들의 企業 成果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어떤 財貨의 생산에 外部經濟가 존재하게 되면 私的 限界費用이 社會的 限界費用보다 크기 때문에 國內 生産量은 社會的 限界費用과 限界收入이 같아지는 最適生産量에 훨씬 못미치게 된다. 따라서 政府가 개입하여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最適生産량을 유도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²⁰⁾.

政府의 市場介入을 정당화하는 幼稚産業保護論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比較優位가 경제발전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動態的 比較優位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幼稚産業의 選定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基準은 그 産業이 一時的인 保護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20) 그러나 이 경우 최선의 정책은 關稅政策이 아니라 補助金政策이다. 補助金의 지급은 私的 限界費用을 社會的 限界費用과 같아지게 함으로써 最適生産량을 유도하기 때문에 關稅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厚生損失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開途國이 주로 關稅政策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關稅는 財政收入을 가져 오지만 補助金은 財政支出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나. 保護貿易理論의 現代的 評價

開途國들이 國際貿易과 관련하여 工業化를 추진하는 方向은 대체로 輸入代替工業化와 輸出指向工業化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輸入代替工業化戰略은 開途國이 外國과의 경쟁을 차단하여 輸入에 의존하던 工產品을 국내에서 생산하게 함으로써 工業化를 이루려는 政策이다. 「넉시」(Nurkse)의 均衡成長論²¹⁾과 「허쉬만」(Hirschman)의 不均衡成長論²²⁾으로 이론화된 輸入代替工業化戰略은 앞에서 설명한 幼稚產業保護論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輸出指向工業化戰略은 國內產業을 보호하기 보다는 比較優位에 입각한 產業의 特化를 촉진하고 海外市場을 대상으로 하여 輸出工業을 발전시킴으로써 工業化를 이루려는 政策이다.

1930년대부터 南美에서 시작된 輸入代替工業化戰略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대부분 실패했으나,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오늘날 新興工業國으로 불리우는 아시아의 後進國들이 채택한 輸出指向工業化戰略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輸入代替工業化戰略이 실패한 주요한 理由²³⁾는 다음과 같다. 첫째, 國內市場이 협소하여 大規模 生産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規模의 經濟를 실현할 수 없었다. 둘째, 지나친 국내 산업의 보호로 產業이 獨占化되어 生産性 向上을 이룰 수 없었다. 셋째,

21) 均衡成長論은 공업화과정에서 상호 연관된 여러 종류의 工業을 동시에 일으켜서 상호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균형된 成長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anger Nurkse(1953) 참조.

22) 不均衡成長論은 공업화과정에서 기초산업의 개발보다 노동집약적인 消費財產業부터 시작하여 經濟成長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O. Hirschman (1958) 참조.

23)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輸入代替工業化戰略의 단점으로는 高率의 關稅賦課로 국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消費者의 厚生이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술적으로 단순한 消費財를 생산할 때에는 이 戰略이 성공을 거두었으나, 中間財나 資本財의 생산에 있어서는 資本과 技術을 海外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輸出이 감소되자 필요한 外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工業化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반해 아시아 新興工業國의 輸出指向工業化가 성공한 주요한 理由는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교적 比較優位가 있는 產業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資源配分이 가능하였고, 國內市場만이 아니라 海外市場을 상대로 생산과 판매를 함으로써 規模의 經濟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輸出指向工業化戰略이 保護貿易理論을 기초로 한 輸入代替工業化戰略에 비해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많은 研究結果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다²⁴⁾. 그러나 輸出指向工業化戰略이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 戰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方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輸出指向工業化戰略을 사용하여 經濟發展을 하는 과정에서 주로 國內의 풍부한 低賃金 勞動力과 저급한 加工技術을 바탕으로 정부의 집중적인 租稅·金融上的 輸出支援과 先進國의 產業構造 변화로 인한 低技術·低附加價值 商品의 수입확대에 힘입은 바가 컸고 이로 인해 單純加工型의 貿易으로도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적지 않은데, 우리 經濟는 수출산업에 대한 과보호로 인해 產業의 각 부문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國內市場의 育成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이 先進國의 輸入需

24) J. Bhagwati, *Anatomy and Consequences of Exchange Control Regimes*,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1978; A. O. Krueger,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 Cambridge Massachusetts: Ballinger, 1978; I. Little, *Economic Development: Theory,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Basic Books, 1982. 國內文獻으로는 李均(1991), 南宗鉉(1992) 등이 있다.

要의 成長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문제에도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위해서 이제는 單純加工型 貿易에서 벗어나 機械·部品·素材産業을 중심으로 輸入代替産業에 기초한 産業構造의 고도화가 요청되며, 이러한 이유로 輸入代替工業化戰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關稅政策 役割의 再定立

본격적인 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이하여 關稅의 財政收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産業政策으로서의 기능도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國際化·開放化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輸入規制나 우리나라의 독단적인 關稅政策의 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은 第1次 關稅引下豫示制가 시작된 1984년에 21.9%였으나,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가 끝나는 1994년에는 7.9%에 불과하여 關稅가 産業政策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셋째, 産業政策의 방향이 特定産業을 선별지원하는 政策에서 機能別 支援政策으로 전환됨에 따라 關稅政策에서도 對産業 中立性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産業構造의 問題點으로 第2節에서는 加工·組立産業과 機械·部品·素材産業間의 不均衡과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不均衡을 들었다. 이러한 問題點이 발생하게 된 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産業政策의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 특히 첫번째의 問題點은 産業政策뿐만 아니라 이에 의거한 關稅政策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는 第Ⅶ章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差等關稅率制度下에서는 單純組立型 産業이 生産의 迂廻도가 큰 産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過保護되고, 이에 따라 單純組立型 産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關稅率制度는 1984년부터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均等關稅率制度로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關稅의 產業政策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해서 產業政策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된다. 물론 國際化·開放化가 진전됨에 따라 關稅政策은 점차 產業構造形成政策으로서의 기능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多者間協商과 雙務的 貿易協商에 의해서 關稅의 引下 壓力이 계속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關稅 引下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히 機械·部品·素材産業을 중심으로 한 幼稚産業이나 尖端産業은 보호·육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關稅의 產業構造形成政策으로서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輸入規制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關稅政策의 產業構造維持政策으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더 중요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國內産業이 海外供給에 의해 위협을 받을 때, 市場秩序를 회복하기 위한 産業被害救濟의 수단으로서 相計關稅, 報復關稅, 緊急關稅 등이 關稅政策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關稅의 產業政策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더 알맞는 關稅率制度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均等關稅率制度를 통한 實效保護水準의 均一化는 原料, 中間財, 完製品에 대한 균일한 關稅의 부과 이외에도 換率이나 內國稅制上の 保護 등 모든 保護構造가 동일하여 實效保護에 미치는 영향이 같을 때에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關稅의 對産業 中立性を 강조하여 均等關稅率制度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부 幼稚産業이나 有望産業에 대한 關稅率을 결정함에 있어서 均等關稅率體系를 벗어난 약간의 差等的 關稅의 설정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産業의 競爭力은 幼稚産業保護論에 입각하여 靜態的인 개념보다는 動態的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關稅政策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므로 產業政策과 잘 조화하여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斜陽産業에 대한 構造調整의 문제와 관련하여 關稅政策의 產業構造

되어야 할 것이다.

斜陽産業에 대한 構造調整의 문제와 관련하여 關稅政策의 産業構造調整政策으로서의 역할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때 우리나라의 輸出主導 品目이었던 일부 輕工業 製品이 國際競爭力을 잃게 되어 輸出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品目에 대한 關稅率을 조정함에 있어서 該當 産業의 성격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該當 産業 자체가 斜陽産業인 경우가 있고, 該當 製品이 임금상승 등의 이유로 製造原價가 급격히 상승하여 國際競爭力을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각 경우에 대해 産業構造調整政策의 측면에서 각기 다른 關稅政策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該當 産業의 構造調整이 필요할 때에는 關稅를 통한 보호로 構造調整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産業內의 構造調整이 필요할 때에는 關稅를 통해 該當 産業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경우에 그와 반대되는 關稅政策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第Ⅷ章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第 Ⅲ 篇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

Ⅶ. 關稅率體系의 定立方向

1. 關稅率制度에 대한 論議

우리나라 關稅率制度는 1984년을 분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 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첫째, 1983년까지는 差等關稅率制度(Tariff Escalation System)를 유지해 왔으나, 1984년부터 均等關稅率制度(Uniform Rate System)로 이행하였다. 둘째, 1983년의 관세율 전면 개편시에 關稅率引下豫示制(1984~1988)를 채택하여 관세율 수준을 사전에 예시하였으며, 현재 第2次 關稅率引下豫示制(1989~1994)를 시행하고 있다. 本節에서는 먼저 論議의 출발점으로 實效保護率 理論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關稅率制度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制度에 대한 評價와 이의 계속 施行與否를 논의한다.

가. 實效保護率 理論

어떤 상품에 關稅를 부과하면 부과된 關稅만큼 그 상품의 名目價格이 상승하고, 그 상품생산에 있어서의 附加價値도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상품생산에의 要素 配分의 증가가 이루어져서 國內生産量이 증가하게 된다. 이것이 生産側面에서 본 關稅의 保護效果인데, 그 보호효과 의 정도는 名目關稅率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품의 생산 요소로서 中間財¹⁾가 사용되고 있으며 關稅가 中間財에도 동시에 부과

1) 여기서 中間財라는 용어는 原料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되고 있기 때문에, 名目關稅率은 실제적인 保護效果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어떤 商品의 國內생산비는 그 商品의 生産에 투입되는 中間財에 부과되는 關稅만큼 상승하게 되므로, 결국 中間財에 대한 關稅의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國內생산비의 인상효과가 크면 클수록 그 商品에 대한 關稅의 保護效果는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關稅로 인한 國內산업의 보호정도는 名目關稅率만으로는 알 수 없고, 中間財에 부과되는 關稅의 효과도 아울러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中間財에 부과되는 關稅의 효과도 감안하려는 것이 實效保護率인데, 이는 한 商品의 價格에서 그 生産에 소요된 中間財의 價格을 차감한 附加價值가 關稅賦課 前과 後에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내는 變化率로 정의한다²⁾.

實效保護率을 간단한 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g_j = \frac{V_j - V_j^*}{V_j^*} \dots\dots\dots (1)$$

여기서 g_j 는 完製品 j 의 實效保護率을, V_j 는 關稅賦課後 完製品 j 의 단위당 附加價值를, V_j^* 는 自由貿易時 完製品 j 의 단위당 附加價值를 말한다. 그런데 實效保護率을 실제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의 假定이 필요하다. 첫째, 어떤 商品을 自國內에서 生産할 때 關稅를 부과하기 前과 後의 投入-產出係數는 항상 일정하다. 이것은 關稅가 부과되더라도 이로 인해 生産要素와 投入財間 혹은 投入財 상호간의 대체

2) 이러한 實效保護率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국제무역분야의 문헌에서 언급되고는 있었으나, 1955년에 와서야 Barber에 의해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Leontief의 投入-產出分析(input-output analysis)의 보급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 實效保護率을 측정한 많은 實證的 研究結果가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實效保護率을 추정된 연구로는 金光錫·웨스트팔(1976), 南宗鉉(1981), 金光錫·洪性德(1982), 兪京得(1989), 兪正鎬(1993) 등이 있다.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假定이다. 둘째, 自國의 輸入에 대한 外國의 供給彈力性과 自國의 輸出에 대한 外國의 需要彈力性은 無限大이다. 이것은 한 나라의 經濟는 小規模이기 때문에 自由貿易下에서 完製品 및 投入財의 價格은 海外市場의 價格에 의해 결정된다는 假定이다. 셋째, 關稅의 부과후에도 輸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關稅가 輸入을 금지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는 假定이다.

이러한 假定下에서 實效保護率을 계산하는 公式을 도출해 보자. 自由貿易時 j財의 單位당 附加價値 V_j^* 는 總生産額에서 그 生産에 투입된 모든 中間財의 投入額을 차감한 總附加價値를 總生産量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begin{aligned}
 V_j^* &= \frac{1}{Q_j^*} (Q_j^* P_j^* - \sum Q_{ij}^* P_i^*) \\
 &= P_j^* (1 - \sum \frac{Q_{ij}^*}{Q_j^*} \frac{P_i^*}{P_j^*}) \\
 &= P_j^* (1 - \sum a_{ij}^*) \dots\dots\dots (2)
 \end{aligned}$$

여기서 Q_j^* 는 自由貿易時 j財의 生産量, $P_i^*(P_j^*)$ 는 自由무역시 i財(j財)의 國內價格, Q_{ij}^* 는 j財를 Q_j^* 만큼 生産하는 데 소요되는 i財의 投入量, a_{ij}^* 는 j財를 1원어치 生産하는데 필요한 i財의 投入額 즉, j財의 한 單位 生産에 소요되는 中間財의 投入係數를 말한다.

關稅賦課後의 j財의 單位당 附加價値 V_j 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begin{aligned}
 V_j &= \frac{1}{Q_j} (Q_j P_j - \sum Q_{ij} P_i) \\
 &= P_j (1 - \sum \frac{Q_{ij}}{Q_j} \frac{P_i}{P_j}) \dots\dots\dots (3)
 \end{aligned}$$

여기서 *가 붙지 않은 것은 關稅賦課後의 變數들을 나타낸다. 投入-
 產出係數는 항상 일정하다는 假定에 따라 $(Q_{ij}/Q_j) = (Q_{ij}^*/Q_j^*)$ 의 관
 계가 성립되며, 關稅賦課後 가격과 自由貿易時 가격의 관계를 $P_j = P_j^*$
 $(1+t_j)$, $P_i = P_i^*(1+t_i)$ 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式(3)에 대입
 하면 다음과 같은 등식을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V_j &= P_j^*(1+t_j) \left[1 - \sum \frac{Q_{ij}^* P_i^* (1+t_i)}{Q_j^* P_j^* (1+t_j)} \right] \\ &= P_j^* [1+t_j - \sum a_{ij}^* (1+t_i)] \quad \dots\dots\dots (4) \end{aligned}$$

여기서 $t_i(t_j)$ 는 i 財(j 財)의 名目保護率을 말한다. 式(2)와 式(4)를
 式(1)에 대입하여 j 산업에 대한 實效保護率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g_j &= \frac{V_j - V_j^*}{V_j^*} \\ &= \frac{P_j^* [1+t_j - \sum a_{ij}^* (1+t_i)]}{P_j^* [1 - \sum a_{ij}^*]} - 1 \\ &= \frac{t_j - \sum a_{ij}^* t_i}{1 - \sum a_{ij}^*} \quad \dots\dots\dots (5) \end{aligned}$$

式(5)의 분자의 두번째 항은 中間財에 부과되는 關稅로 인해 상승하
 게 되는 中間재 구입비용의 上昇率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
 의 實效保護率은 式(5)를 측정하는 것이고, 中間財에 부과되는 關稅와 中
 間財의 投入比率에 따라 名目保護率과는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式(5)에서 분모가 0보다 크다는 假定下에 분자의 두번째 항이 名目保護
 率 t_j 보다 작으면 j 산업에 미치는 關稅의 효과는 附加價値를 증가시키는
 것이고, 그 항이 名目保護率 t_j 보다 크면 附加價値를 감소시키는 것이
 다. 實效保護率을 실제로 측정함에 있어서 交易財의 生産에 소요되

는 非交易財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Corden方式과 Balassa方式이 있다. Corden方式은 非交易財를 國內生産要素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어느 産業의 附加價値에 그 産業의 附加價値뿐만 아니라 그 産業의 生産에 투입된 非交易財에 포함되어 있는 附加價値도 그 産業의 附加價値에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 Balassa方式은 非交易財를 輸入可能中間財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어느 産業의 附加價値에 그 産業의 附加價値만을 포함시킨다. 이는 輸入國이 小國이라면 輸入可能中間財의 供給彈力性은 無限大이고, 따라서 그 價格은 일정하다고 假定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實效保護率의 算式은 여러 가지 假定을 전제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實效保護率의 算式은 內國稅, 換率變動, 市場構造의 差異, 輸出入補助 등의 保護政策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둘째, 實效保護率이 負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實效保護率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産業別 等級이 실제로 받고 있는 保護의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自由貿易下에서 附加價値가 負의 값을 갖지만 關稅의 부과로 인해 附加價値가 正의 값을 갖게 되는 産業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産業은 關稅에 의해 保護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式(1)에서 알 수 있듯이 算式에 의한 實效保護率은 負의 값을 갖게 됨으로써, 이 産業에 대한 關稅의 부과는 非經濟的인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다. 셋째, 實效保護率의 측정시 投入-產出係數는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나, 投入-產出係數는 經濟의 발전과 保護構造의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實效保護率은 關稅에 의한 産業의 전반적인 保護構造를 파악하고, 다음에서 논의할 均等關稅率制度和 差等關稅率制度를 評價하는 데 유용한 분석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나. 均等關稅率制度의 評價

均等關稅率制度의 支持者들은 어떠한 왜곡도 없는 자유무역을 最善策으로 보지만, 이를 시행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보다 낮은 관세율을 산업간·품목간 균등하게 부과하는 것을 次善策으로 보고 있다³⁾. 均等關稅率制度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實效保護率 理論에 근거하여 均等關稅率이 각 부문간의 實效保護率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보호의 비용을 최소화하고 關稅의 對產業 中立性을 유지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orden(1958)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수량적인 수입제한과 관세의 복잡한 체제를 均等關稅로 대체하기를 권고하였고, Macario(1964)는 라틴아메리카의 산업화과정에서 均等關稅率制度의 채택을 권고하였으며, Balassa(1989)와 Harberger(1990)는 개발도상국의 무역개혁과 관련하여 均等關稅率制度의 채택을 주장하였다. 실제로 均等關稅率制度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國家가 칠레인데, 1970년대 후반 이래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均等關稅率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制度도 第Ⅲ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差等關稅率制度로부터 산업간·품목간 동일한 關稅率을 부과하는 均等關稅率制度로 이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부족한 자본, 협소한 시장, 낙후한 기술수준의 여건하에서도 고도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產業政策의 중점을 주로 수출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두었으며, 또 이를 위해 關稅政策 측면에서 가공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高率의

3) 國際貿易論에서는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정할 때 外國貿易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하지 않는 自由貿易이 厚生을 극대화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理論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도 완전한 자유무역정책을 펴지는 못하고 있으며, 產業保護나 財政收入의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貿易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關稅를 부과하는 差等關稅率制度를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產業은 크게 보아 完製品의 組立·加工部門은 상당히 발전하였으나, 일반기계 등 生産財部門과 부품·소재 등 中間財部門은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⁴⁾.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例에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어떤 完製品의 輸入價格이 100달러이고, 이 상품 1단위의 生産에 사용되는 原料와 中間財의 輸入價格이 각각 40달러, 80달러라고 가정하자. 또한 原料에 대해서는 5%, 中間財에 대해서는 20%, 完製品에 대해서는 50%의 關稅가 부과되는 差等關稅率制度가 시행된다고 가정하자. 輸入完製品에 50%의 關稅가 부과되면 이 完製品의 國內가격은 달러로 표시하여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상품이 國內에서 生産되는 경우에도 150달러까지 價格상승이 허용될 것이다. 이때 150달러에서 100달러를 차감한 50달러는 이 상품의 國內生産에 사용되는 生産요소에 추가로 지불되는 報酬를 의미하게 된다. 生産요소에 대한 報酬는 附加價値이므로 결국 關稅의 부과는 國內生産의 附加價値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입상품에 關稅를 부과하는 것은 輸入商品의 價格을 높임으로써 수입상품과 경쟁하는 國內生産품을 保護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먼저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中間財를 수입하여 조립·가공하는 單純組立型 産業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상품 1단위의 生産에 80달러의 中間재가 사용되므로 이 상품의 당초 國內附加價値는 100달러에서 80달러를 차감한 20달러가 된다. 한편 수입상품에 關稅를 부과하게 되면 完製品의 國內가격은 150달러, 中間재의 國內가격은 96달러가 되어 附加價値는 150달러에서 96달러를 차감한 54달러가 된다. 관세의 부과로 부가가치가 34달러 더 상승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상

4) 財務部 關稅局, 「關稅率政策運用實績 및 方向」, 1991, p. 56.

승률을 나타내는 實效保護率은 170%가 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原料를 수입하여 中間財를 국내에서 생산·사용하는 迂廻度가 큰 산업의 實效保護率을 구하면 80%가 된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差等關稅率制度下에서는 單純組立型 産業이 생산의 迂廻度가 큰 産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過保護됨에 따라 單純組立型 産業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産業政策은 第VI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도성장하에서 파생된 모순점을 시정하려는 産業構造調整政策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産業政策의 방향전환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와서 關稅政策도 均等關稅率制度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는 差等關稅率制度가 산업간·품목간의 實效保護의 차등에 의해 자원 배분을 왜곡하여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산업간·품목간의 균등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均等關稅率制度의 기본취지는 關稅를 산업간·품목간 균등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保護率을 균등화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經濟의 效率性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例를 다시 들어 보자. 어떤 完製品의 수입가격이 100달러이고, 이 상품 1단위의 생산에 사용되는 原料와 中間財의 수입가격이 각각 40달러, 80달러이며 原料, 中間財, 完製品의 구별없이 20%의 均등관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먼저 原料를 수입하지 않고 中間財를 수입하여 조립·가공하는 단순조립형 산업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상품 1단위의 생산에 80달러의 中間財가 사용되므로 이 상품의 당초 國內附加價値는 100달러에서 80달러를 차감한 20달러가 된다. 한편 수입상품에 關稅를 부과하게 되면 完製品의 국내가격은 120달러, 中間財의 국내가격은 96달러가 되어 附加價値는 120달러에서 96달러를 차감한 24달러가 된다. 關稅의 부과로 附加價値가 4달러 더 상승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상승률을 나타내는 實效保護率은 20%가 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原料를 수입하여 中間財를 국내에서 생산·사용하는 우회도가 큰 산업의 實效保護率을 구하면 單純組立

型産業과 마찬가지로 20%가 된다. 이렇게 되면 실효보호율이 균등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왜곡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關稅의 對産業 中立性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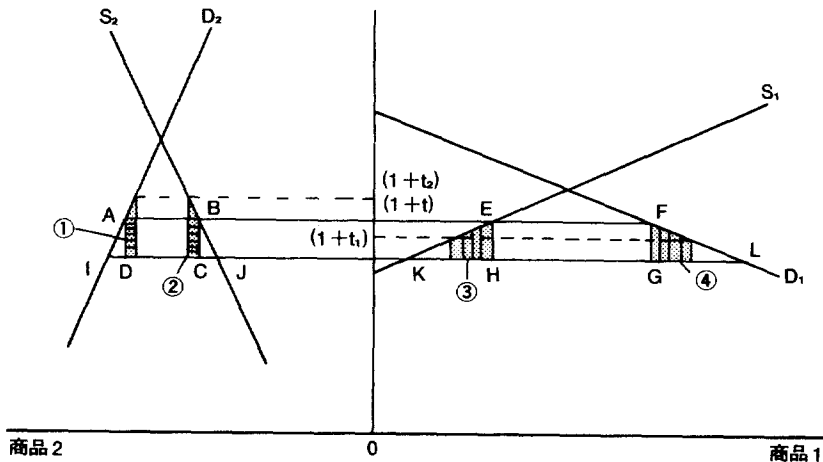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實效保護率 理論의 입장에서 본다면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우월한 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우월한 制度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간단히 답하기는 쉽지 않다. 最適關稅率構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지난 30여년 동안 國際貿易論의 많은 논문이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差等關稅率制度의 支持者들은 理論과 現實의 兩側面에서 均等關稅率制度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한 經濟理論上의 비판을 자세히 논의해 보기로 한다. 均等關稅는 保護의 비용을 최소화하지도 부문간 實效保護率을 반드시 같게 하지도 않는다는 주장이 이미 30년전부터 여러 學者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이를 關稅의 부과목적에 따라 財政收入과 産業保護의 두 경우로 나누어 검토해 보자. 먼저 關稅를 부과하는 목적이 財政收入에 있다고 가정할 때 均等關稅率制度는 最適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일반적으로 Ramsey(1927) 理論이 最適租稅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理論이 最適關稅를 결정하는 데에도 역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Ramsey 理論을 따른다면 最適關稅收入은 각 부문의 關稅率이 需要의 價格彈力性에 반비례하여 부과될 때 얻어지는 것이다. 즉 輸入需要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關稅率은 낮아야 하고, 輸入需要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關稅率은 높아야 한다. 이를 Panagariya(1990)의 도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圖 7-1]의 1四分面에는 商品 1에 대한 需要와 供給曲線이 그려져 있고, 2四分面에는 商品 2에 대한 需要와 供給曲線이 原點에서부터 왼쪽으로 그려져 있다. 각 商品의 價格이 1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수평축

은 각 商品의 數量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商品의 價値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自由貿易下에서 각 商品의 消費量과 生産量은 國內需要 및 國內供給曲線과 無限大의 供給彈力性을 가지는 世界供給曲線 IL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商品 1의 需要 및 供給曲線은 商品 2의 그것들보다 더 彈力的이다. 財政收入은 사각형 ABCD와 EFGH의 합이 되는데, 關稅政策이 財政收入을 목적으로 할 때 이 목적은 두 商品에 t의 均等關稅率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商品에 高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다른 商品에 低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財政收入을 유지하면서도 厚生을 증대할 수 있을까? 需要의 彈力性이 높은 商品 1에 低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需要의 彈力性이 낮은 商品 2에 高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같은 수준의 財政收入을 유지하면서도 厚生을 증대할 수 있다. 均等關稅率下에서 厚生損失은 삼각형 AID, BJC, EKH, FLG의 합이다. 商品 1에 關稅率 t_1 만큼을 부과하면 t의 關稅率을 적용할 때보다 ③과 ④의 합만큼 厚生損失이 줄어들게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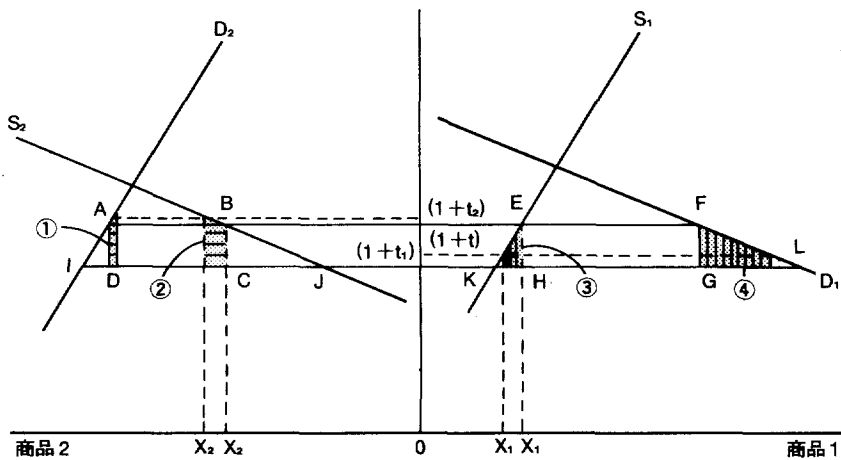
[圖 7-1] 關稅政策의 目的이 財政收入일 境遇



商品 2에 關稅率 t_2 만큼을 부과하면 t 의 關稅率을 적용할 때보다 ①과 ②의 합만큼 厚生損失이 늘어나게 된다. ③과 ④를 합친 면적이 ①과 ②를 합친 면적보다 넓기 때문에 關稅率에 差等を 둬으로써 均等關稅率 下에서 보다 厚生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關稅를 부과하는 목적이 産業保護에 있다고 할 때 關稅만을 부과하는 것은 最善의 政策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理論이다. 關稅의 부과는 厚生의 損失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産業保護를 위해서는 生産에 대해 補助金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政策이다⁵⁾. 補助金을 지급

[圖 7-2] 關稅政策의 目的이 産業保護일 境遇



5) 이를 [圖 7-2]에서 설명해 보자. 商品 1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면, 商品 1에 대해서 關稅率 t 만큼을 부과하면 輸入財의 國內生産은 증가하고 國內消費는 감소하게 되어 ③과 ④의 합만큼 厚生損失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生産에 대한 補助金을 關稅率과 같은 비율만큼 지급하면 이 商品에 대한 生産비는 하락하여 供給曲線 S_1 이 하향 이동하여 점 H를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消費를 줄이지 않고도 國內生産을 X_1 만큼 유지하게 되어 厚生損失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結果는 t_1 만큼의 關稅率을 부과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 않고 關稅만을 부과하는 경우에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반드시 效率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圖 7-2]에서 설명해 보자. 여기서는 商品 1에 대한 需要가 商品 2에 대한 需要보다 더 彈力的인 반면 商品 1에 대한 供給이 商品 2에 대한 供給보다 덜 彈力的인 경우를 가정한다⁶⁾. 두 商品의 生産額은 OX_1 과 OX_2 의 합이 되는데, 關稅政策이 産業保護를 목적으로 할 때 이 목적은 두 商品에 t 의 均等關稅를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商品에 高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다른 商品에 低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OX_1 과 OX_2 의 합만큼의 生産額을 유지하면서도 厚生을 증대할 수 있을까? 需要의 彈力性이 높은 商品 1에 低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需要의 彈力性이 낮은 商品 2에 高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厚生을 증대시킬 수 있다. 均等關稅率下에서 厚生損失은 삼각형 AID, BJC, EKH, FLG의 합이다. 商品 1에 t 보다 낮은 t_1 만큼의 關稅率을 적용하면 ③과 ④의 합만큼 厚生損失이 줄어들게 되고, 商品 2에 t 보다 높은 t_2 만큼의 關稅率을 적용하면 ①과 ②의 합만큼 厚生損失이 늘어나게 된다. ③과 ④를 합친 면적이 ①과 ②를 합친 면적보다 넓기 때문에 차등적인 關稅率의 설정이 均等關稅率下에서보다 厚生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상에서 經濟理論上으로 均等關稅率制度가 반드시 差等關稅率制度보다 效率的인 制度라고 말할 수 없다는 論議를 하였다.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이 制度의 現實的인 限界에 관한 것이다. 均等關稅率制度가 추구하는 實效保護率의 均等化라는 目標을 달성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均等關稅率制度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原料에 대해서는 中間財나 完製品보다 이주

6) [圖 7-1]의 경우와 같이 商品 1의 需要 및 供給曲線이 商品 2의 그것들보다 더 彈力的이면 均等關稅率制度가 累進關稅率制度보다 더 효율적인 制度이다.

낮은 關稅率을 적용하고 있고, 加工度가 낮은 中間財의 경우도 다른 中間財나 完製品에 비해 비교적 낮은 關稅率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엄밀한 의미의 均等關稅率制度는 아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賦存資源이 부족하여 원자재를 輸入에 의존하여 製品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完製品의 國際競爭力을 위해서는 原料나 加工度가 낮은 中間財에 대해 낮은 關稅率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完製品에 대해서 비교적 균등한 關稅率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實效保護率이 균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첫째, 原料 및 中間財에 대해 부과되는 關稅率이 품목간 균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輸入原料 및 輸入中間財의 투입비율이 서로 달라서 각 完製品에 균등한 關稅率을 적용하더라도 實效保護率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둘째, 換率이나 內國稅制上的 保護 등 모든 保護構造가 동일하지 않는 한, 각 產業에 균등한 稅率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實效保護率이 균등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결과로 최근 均等關稅率制度의 支持者들은 經濟理論보다는 주로 行政의 간편성과 政治經濟的인 논리에 의지하여 均等關稅率制度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첫째, 均等關稅率制度는 貿易體制를 더 명료하게 하고 行政을 더 쉽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輸入業者는 자기가 輸入하는 商品의 關稅率에 관해 혼란이 생기지 않아 資源의 낭비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差等關稅率制度下에서는 關稅率의 수준이 政治的 壓力 즉 로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資源의 낭비 즉, 社會的 費用이 발생하게 되는 반면, 均等關稅率制度下에서는 이러한 社會的 費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均等關稅率制度 支持者의 입장에서 볼 때 만일 均等關稅率制度가 理論的으로 差等關稅率制度보다 非效率的이라고 하더라도, 均等關稅率制度에 의한 行政의 간편화가 經濟에 주는 利益이 最適關稅率로부터 멀어져서 발생하는 損失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均等關稅率制度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均等關稅率制度의 정당성을 입증하

기는 매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에 비해 반드시 效率的인 制度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關稅率을 책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均等關稅率制度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均等關稅率制度를 지향하는 關稅政策의 기초를 장기적으로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幼稚産業의 保護와 有望産業의 국제경쟁력 배양, 斜陽産業의 保護, 奢侈性 消費財의 억제 등 産業政策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差等的인 關稅率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産業 혹은 品目에 대한 차등적인 關稅의 부과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關稅引下豫示制의 評價

關稅引下豫示制는 關稅率을 일시에 대폭 변경할 경우 국내 産業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1983년 關稅改編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關稅率의 引下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産業界에 관세율개편에 따른 적용기간을 부여하고, 향후 5년 동안의 關稅政策의 방향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未來에 대한 不確實性을 덜어 주려는 것이었다. 關稅引下豫示制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간에 걸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현재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1989~1994)가 시행되고 있다.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가 시행되는 동안 1990년 12월로 防衛稅法이 폐지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輸入分 防衛稅를 關稅로 일부 흡수하기 위하여 關稅引下豫示制를 1년씩 順延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1990년의 關稅率表를 계속적으로 적용하였고, 이후 1년씩 順延하여 1994년에는 1993년의 關稅率表를 적용하고 있다.

關稅引下豫示制가 시행되는 동안의 平均關稅率 推移를 <表 7-1>에서 살펴보면, 第1次 關稅引下豫示制의 첫 시행연도인 1984년은 前年度

에 비해 전체적으로 7.6%가 인하되었고, 전체기간 동안 17.5% 정도가 인하되어 마지막 年度인 1988년에는 平均關稅率이 18.1%를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의 첫 시행연도인 1989년은 前年度에 비해 전체적으로 29.8%가 인하되었고, 전체기간 동안 37.8% 정도가 인하되어 마지막 年度인 1994년에는 7.9%의 낮은 平均關稅率을 유지하게 되었다.

〈表 7-1〉 年度別 平均關稅率 推移

(單位: %)

	1983	第1次 關稅引下豫示制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91	1992	1993	1994
全體	23.7	21.9	21.3	19.9	19.3	18.1	12.7	11.4	10.1	8.9	7.9
工產品	22.6	20.6	20.3	18.7	18.2	16.9	11.2	9.7	8.4	7.1	6.2
農產物	31.4	29.6	28.8	27.1	26.4	25.2	20.6	19.9	18.5	17.8	16.6
中心關稅率						20.0	15.0	13.0	11.0	9.0	8.0

資料: 財務部 關稅局.

이러한 關稅引下豫示制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關稅引下豫示制 자체에 대한 評價가 있을 수 있다. 關稅引下豫示制는 그동안 關稅率을 급격히 인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肯定的인 役割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급작스런 關稅率의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產業界의 사전대비를 촉진시켰다. 둘째, 未來의 不確實性을 줄임으로써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었다. 셋째, 豫示制에 의해 단계적으로 關稅를 인하함으로써 일시적인 關稅 引下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넷째, 政府는 단기적인 問題點을 보완하기 위해 關稅率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다음으로 關稅引下豫示制에 의한 關稅 引下의 速度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評價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關稅率은 第2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의 經濟力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하되었다는 면에서는 否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關稅率을 현행 關稅引

下豫示制보다 훨씬 느리게 引下해 왔다면, 1986년의 關稅率을 기준으로 수입액 가중평균의 33%를 引下해야 하는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타결에 의해 일시적으로 대폭적인 關稅 引下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產業界는 급작스런 關稅率의 변동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關稅引下豫示制를 肯定的으로도 評價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關稅 引下の 速度面에서 關稅引下豫示制는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海外依存度가 높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이하여 독자적으로 關稅政策을 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結果的으로 關稅引下豫示制에 의한 關稅 引下の 速度에 대해서는 否定的이기 보다는 肯定的으로 評價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關稅引下豫示制의 시행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체로 肯定的이었다고 평가하였지만, 이의 계속적인 施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물론 현재 잘 실시하고 있는 制度를 철폐한다는 것은 政府의 施策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또한 關稅引下豫示制의 肯定的인 측면을 인정한다고 할 때, 새로운 多者間協商을 대비해서라도 關稅引下豫示制는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둘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反論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關稅率 수준을 고려해 볼 때 關稅引下豫示制의 계속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關稅率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引下할 여지가 크지 않다. 따라서 만일 매년 일정비율로 引下하게 되면 그 引下幅은 지나치게 소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關稅行政을 매우 번거롭게 할 것이며, 關稅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引下함으로써 급작스런 關稅率의 변동으로 인한 產業界의 충격을 덜어 주려는 關稅引下豫示制의 본래의 목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둘째, 多者間協商 측면에서 보더라도 關稅引下豫示制의 계속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리 關稅率을 引下

하여 協商의 餘지를 줄이는 것보다는 當分간은 現水準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새로운 多者間協商이 시작되더라도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보았듯이 단기간에 協商이 終結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때 가서 對策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全品目에 걸쳐 매년 一定率을 낮추는 것보다 經濟與件의 變化에 맞추어서 個別 品目的 關稅率을 개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2. 中心稅率의 適正性에 대한 論議

우리나라 關稅率政策의 장기적인 發展方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現行 關稅率 水準이 國內外 經濟與件에 비추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差等關稅率制度下에서는 品目에 따라 각기 다른 關稅率이 적용되므로 關稅率 水準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各 品目別로 개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基礎原資材를 제외한 대부분의 工產品에 8%의 中心關稅率을 적용하는 均等關稅率制度를 택하고 있으므로 本節에서는 8%의 中心關稅率이 적절한가의 여부만을 평가한다. 8%의 中心稅率이 적용되지 않는 基礎原資材와 農產物, 그리고 앞으로 中心稅率과는 다른 稅率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一部 工產品의 關稅率 調整에 대해서는 다음 章(第Ⅶ章)에서 자세하게 논의한다.

平均關稅率의 適正性 與否는 두 가지 方向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關稅가 交易財의 國內外 價格差異를 적절히 보전하여 주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關稅賦課의 기본 목표는 輸入品의 國內 價格을 인상시켜 國內에서 生産되는 輸入競爭製品의 價格競爭力을 확보해주는 데 있으므로 關稅率이 交易財의 國內外 價格差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 못한다면 關稅賦課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租稅制度 및 經濟의 發展水準에 비추어 보아 財政收入의 일부는 關稅收入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現 關稅率 水準이 적절한

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本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現中心稅率 8%가 交易財의 國內外 價格差를 적절하게 보전하여 주는가에 대해서 검토한 후 第V章의 推定結果를 인용하여 財政收入 측면에서도 現稅率水準이 적절한가를 검토해 본다.

1988년에 작성된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 構造는 1987년 韓國產業銀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產業의 國際競爭力 分析을 근거로 한 것이다. 同 分析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 交易財의 內外價格差는 평균 13%였다. 이는 5년전인 1983년의 22%에서 4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第2次 關稅引下計劃豫示制가 끝나는 시점인 1993년 交易財의 內外價格差는 평균 8%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전망을 근거로 하여 1993년의 中心稅率이 8%로 책정되었으나, 1990년 防衛稅 廢止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의 시행을 1년씩 順延함으로써 1994년의 中心稅率이 8%가 되었다.

이와 같이 現行 中心稅率은 1988년 당시의 비교적 단순한 예측에 기초한 것으로서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國內外的 經濟環境 變化를 감안하여 재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발생했던 國內外的인 經濟環境의 변화 중 關稅政策 수립에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貿易收支의 변화이다. 1980년대 초에는 연간 약 30억달러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貿易收支 赤字가 1986년에는 黑字로 전환되었으며 그 후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1988년에는 110억달러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러한 貿易收支 黑字가 상당기간 지속되리라고 여겨졌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貿易收支는 다시 赤字로 돌아서 1992년까지 年間 20억~70억달러에 이르는 貿易收支 赤字를 기록하였다. 최근 1993년 10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비로소 黑字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그것이 장기적인 黑字基調로의 再反轉이라고 斷定하기에는 아직 이른 실정이다.

이러한 貿易收支의 변천은 그 동안 國內 產業의 競爭力에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92년에 발표된 韓國產業銀行의 조사

결과(〈表 7-2〉 참조)에 따르면 實質價格差 平均은 1982~1987년의 기간에 40% 하락한 데 반하여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년 동안에는 오히려 40% 악화되어 18.8%로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非價格差가 同 期間中에 대폭적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2.4%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名目價格差는 1987년의 -5.3%에서 1991년 6.4%로 11.7%포인트나 상승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名目價格差가 크게 악화된 이유는 1987년 이후 賃金 및 原料費의 上昇 등으로 인해 製造原價가 크게 상승한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表 7-2〉 交易財의 業種別 内外價格差

(單位 : 個, %)

	調査品目數		實質價格差					
			平均		名目價格差		非價格差	
	1987	1991	1987	1991	1987	1991	1987	1991
織 維	21	29	4.5	6.9	-1.8	3.2	6.3	3.7
製 紙 · 木 材	9	15	9.3	16.3	-2.9	19.6	12.2	-3.2
고 무 · 가 죽 · 신 발	7	5	5.2	9.5	-8.8	2.5	14.0	7.0
窯 業	9	8	12.1	11.5	-6.0	1.5	18.1	10.0
石 油 化 學	26	37	15.6	21.4	7.2	18.4	8.4	3.0
精 密 化 學	7	13	21.4	38.1	8.4	29.9	13.0	8.2
鐵 鋼	19	19	13.3	5.9	4.5	6.3	8.8	-0.4
非 鐵 金 屬	11	15	25.4	13.9	20.2	2.8	5.2	11.1
機 械	37	65	14.7	14.4	-12.9	-6.8	27.6	21.2
電 氣 · 電 子	49	65	12.7	26.5	-9.4	9.0	22.1	17.6
輸 送 用 機 械	14	15	13.3	16.1	-26.2	-5.0	39.5	21.1
雜 製 品	14	8	8.8	46.1	-18.5	18.3	27.3	27.9
交 易 財 全 體	223	294	13.0	18.8	-5.3	6.4	18.3	12.4

註 : 1. 名目價格差 (價格競爭力) = (國內價格 - 輸入價格) / 輸入價格 × 100

2. 非價格差 (非價格競爭力) = (輸入價格 - 輸出價格) / 輸入價格 × 100

3. 實質價格差 (綜合競爭力) = 名目價格差 + 非價格差

4. 輸出價格 및 輸入價格은 FOB價格 基準임.

資料 : 韓國產業銀行,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 分析」, 1992.

業種別로 보면 雜製品의 國內外 實質價格差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정밀화학, 전기 및 전자, 석유화학의 순이다. 實質價格差가 다른 産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産業은 철강, 섬유, 고무, 가죽, 신발 등이다. 1987년에 비해 競爭力이 향상된 産業은 요업, 철강, 비철금속 및 기계산업이다.

産業銀行이 內外價格差를 조사한 1991년 이후 貿易收支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의 交易財 內外價格差 平均은 1991년의 그것보다 낮은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제 겨우 貿易收支 赤字가 黑字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貿易收支 黑字가 최고조에 달했던 1987~1988년의 內外價格差의 3분의 2 수준인 8% 정도까지 내려갔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행 中心稅率은 이러한 최근의 經濟環境 變化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재 交易財의 國內外 價格差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 水準이 財政收入 確保의 側面에서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 앞의 第V章에서 본 바와 같이 內國稅를 부과함으로써 정부가 필요로 하는 財源을 조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財政收入 確保를 위해서 關稅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後進國일수록 內國稅體系 및 流通構造의 後進性 등으로 인해 財政收入의 일부를 비교적 社會的 抵抗이 적고 課稅가 용이한 關稅收入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추정한 우리나라의 關稅收入 對 GDP 比重의 적절한 수준은 1990년에 2.39%였고 同期 우리나라의 實際 關稅負擔率은 2.13%였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負擔能力에 비해 關稅依存率이 낮다고 할 수 있다.

經濟發展 水準, 輸入 및 輸出 比重, 內國稅 負擔率이 類似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關稅負擔率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로 쌀을 비롯한 農產物 部門의 非關稅 障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交易財의 關稅率을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

유로는 우리나라가 그 동안 輸出을 중심으로 하는 工業發展 戰略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주로 價格競爭力을 바탕으로 한 輸出 增大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輸出市場에서의 마찰이 비교적 심하였고 따라서 關稅引下에 대한 外部의 壓力이 類似한 다른 나라에 비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볼 때 內國稅 賦課에 대한 制約이 없다면 關稅負擔率은 낮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이러한 제약이 第V章의 推定式에 잘 반영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나라는 關稅賦課에 대한 內部的 및 外部의 制約條件에 비추어 지나치게 內國稅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財源을 충분히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關稅率 調整을 통해 關稅負擔率을 더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의 能力에 비해 지나친 內國稅負擔을 초래하거나 財政收入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 水準은 適正水準보다 약간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平均關稅率 水準을 높이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UR, NAFTA, APEC 등으로 이어지는 國際 經濟協力 또는 協議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關稅率을 인하하고 其他의 貿易障壁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新經濟 國際化 戰略을 마련하는 등 國際社會 속에서의 發展方向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現行 關稅率이 지나치게 낮아 國內 產業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확고한 판단없이 平均關稅率을 인상시키는 것은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輸出市場인 美國 등 일부 국가의 逆反應을 초래하여 輸出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루과이라운드 協商過程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輸出指向的 工業化를 추진하여 온 까닭에 一部 品目,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農業의 경우에도, 이의 보호를 위해 다른 品目の 輸出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로 인한 損失이 保護를 통한 리

得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關稅率이라는 것이 한번 결정하여 國內外的으로 공표를 하고 난 후에는 國際的인 약속이 되므로 쉽게, 자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의 잦은 關稅法改正에도 불구하고 基本關稅率 構造는 한번 결정되면 대체로 5년 정도는 지속되어 왔다. 그러므로 關稅率 構造의 개편은 현재의 상황보다 中長期的인 전망에 기초를 두고 실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貿易收支가 黑字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서 一部 品目에서는 競爭力을 확보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의 經濟發展 및 實名制 實施가 內國稅賦課 能力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中心稅率을 인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一部 品目에서 現行 關稅率에 큰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平均關稅率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극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조정의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VIII. 基本關稅率의改編方向

政府는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 現行 關稅率體制의 基本들을 유지하면서 產業政策的 기능을 보강하는 方向으로 基本關稅率을 改편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첫째, 多者間協商과 雙務協商을 통한 先進國들의 關稅 引下 壓力을 고려할 때 基本關稅率의 전반적인 引上은 불가능하며, 둘째, 이미 많이 進行된 均等關稅率制度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問題가 되고 있는 일부 品目에 대해 稅率을 조정하여 그 短點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本章에서는 먼저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 關稅率의 調整對象으로 거론된 일부 品目에 대해서 關稅率을 조정할 需要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다음으로 原料의 無稅化 問題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品目에 대한 從量稅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본다.

1. 一部 品目에 대한 關稅率 調整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 關稅引上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產業 및 物品은 戰略的 育成이 필요한 產業, 사치성 消費財 및 輸入急增 物品 등이다. 그리고 賃金上昇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에 대해서는 加工度別 稅率隔差를 고려하고 있다. 이 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產業의 國際競爭力을 분석해 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個別 產業이나 製品에 대한 關稅率의 調整方案을 강구해 본다.

가. 우리나라 產業의 國際競爭力 分析

國際競爭力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Balassa의 顯示比較優位指數(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가 있다. 이 指數는 어떤 商品에 대한 한 國家의 世界市場占有率을 전체

商品에 대한 이 國家의 世界市場占有率로 나누어 구한 相對的인 世界市場占有率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이 指數가 1보다 크면 比較優位가 있는 商品으로 간주되고, 1보다 작으면 比較劣位가 있는 商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本 報告書에서는 輸入對抗力의 개념이 포함된 貿易特化指數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海外市場에서의 國際競爭力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輸出部門만으로 한정된 顯示比較優位指數가 유용하겠지만, 關稅는 輸入部門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關稅率調整을 위한 產業의 競爭力分析을 위해서는 輸入對抗力의 개념이 포함된 貿易特化指數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貿易特化指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貿易特化指數} = \frac{(X_i - M_i)}{(X_i + M_i)} \times 100$$

여기서 X_i 는 i 産業의 수출총액을, M_i 는 i 産業의 수입총액을 말한다. 貿易特化指數는 한 産業의 발전과정이 그 商品의 輸入에서 시작하여 國內生産을 통하여 輸入代替가 이루어진 후에 그 商品이 輸出된다는 假說에 근거하고 있다. 貿易特化指數는 -100부터 100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00이면 그 産業은 전혀 輸出을 하지 않고 전부 輸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이면 그 産業은 전혀 輸入을 하지 않고 輸出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指數는 貿易去來實績을 통해 事後的으로 評價된 것이기 때문에 採算性이 惡化되더라도 輸出이 輸入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競爭力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缺點이 있다. 이러한 缺點에도 불구하고 貿易特化指數를 사용한 이유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採算性이 악화되는 産業의 輸出은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 指數의 장기적인 變化推移는 단기적인 問題點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貿易特化指數에 의한 우리나라 産業¹⁾의 競爭力의 變化추이는 <表 8-1>에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나타난 貿易特化指數의 變化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産業全體의 貿易特化指數는 1988년에 8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貿易特化指數가 貿易收支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貿易收支가 악화된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이 기간 동안 급속한 貨金上昇과 원貨切上을 겪으면서 國際競爭力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輸出의 증가가 輸入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貿易特化指數의 産業別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競爭力 優位에 있는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과 일부 電子製品에서 競爭力 優位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産業別로는 섬유·피혁산업 중 衣類, 생활용품 중 신발, 수송기계 중 조선과 철도, 電氣·電子機器 중 컬러TV와 VCR, 잡품 중 완구 등에서 비교적 높은 競爭力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次產物, 原料, 重化學製品에서는 여전히 競爭力 劣位에 있다. 産業別로는 농축산물, 광업 및 에너지, 목재·제지, 무기화학·정밀화학, 비철금속, 수송기계 중 항공기, 기타 정밀기계 등에서 비교적 낮은 競爭力을 보이고 있다.

셋째, 1988~92년 기간 동안 競爭力의 강화가 두드러진 産業은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競爭力의 약화가 두드러진 産業이 상당히 많이 있다. 競爭力이 강화된 産業은 석유화학이고, 競爭力이 약화된 産業은 농축산물, 수송기계, 일부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계, 잡품 등이다.

1) 여기서 우리나라의 交易財를 크게 17개 産業으로 분류한 것은 財務部 關稅局의 『'88 關稅率改編白書』의 분류방법을 따른 것이다.

〈表 8-1〉産業別 貿易特化指數의 變化推移

	1988	1989	1990	1991	1992
農畜産物	-10	-19	-27	-32	-36
農畜産物	-50	-54	-58	-60	-64
水産物	64	65	57	42	50
鑛業 및 에너지	-79	-83	-71	-80	-79
에너지	-98	-98	-29	-98	-98
鑛業	-65	-75	-80	-85	-84
石油精製業	-33	-39	-68	-34	-35
無機化學·精密化學	-49	-56	-58	-61	-57
醫療用品	-35	-34	-44	-44	-50
肥料	54	27	30	16	19
化粧品	-99	-70	-78	-81	-74
其他 無機精密化學	-64	-65	-66	-67	-62
石油化學	-43	-34	-25	-19	1
有機化學	-73	-75	-63	-57	-34
合成樹脂	-28	0	2	8	24
고무	18	22	27	24	29
纖維·皮革	52	50	48	48	50
纖維	25	26	31	33	39
衣類	99	98	96	94	91
皮革	24	30	26	29	33
木材·製紙	-62	-64	-65	-68	-65
木材	-76	-79	-83	-87	-88
製紙	-48	-51	-49	-49	-46
신발 등 生活用品	97	96	95	94	92
신발	98	98	96	95	93
假髮	100	98	95	98	91
其他 生活用品	75	74	71	68	71
유리 등 窯業製品	0	1	-10	-20	-18
유리産業	-40	-37	-43	-45	-44
其他 窯業製品	30	25	10	-3	1

〈表 8-1〉의 계속

	1988	1989	1990	1991	1992
貴金屬 및 寶石	-18	16	7	5	3
鐵鋼業	9	6	5	-7	17
非鐵金屬	-56	-56	-61	-66	-57
工具 및 雜鐵製品	31	35	21	17	17
工具	10	27	14	13	12
雜鐵製品	55	49	35	27	29
一般機械	-49	-38	-41	-42	-36
電氣·電子機器	57	25	26	24	23
電氣機器	26	25	27	21	19
컬러 TV	98	97	95	97	98
VCR	95	91	95	95	95
半導體	2	6	8	11	14
其他 電子機器	7	12	15	8	1
輸送機械	70	44	31	41	38
自動車	68	53	43	36	49
造船	80	62	58	90	66
鐵道	93	95	88	90	86
航空機	-30	-74	-70	-72	-75
精密機械	-21	-47	-48	-51	-48
時計	23	7	0	1	2
其他 精密機械	-35	-55	-54	-57	-54
雜品	58	67	53	41	35
玩具	98	95	92	87	78
其他 雜品	58	53	41	29	27
產 業 全 體	8	1	-4	-6	-3
品 目 數	1,228	1,231	1,228	1,232	1,232

資料: 關稅廳.

다음으로, 競爭力水準別 品目數의 變化推移, 産業別 競爭力水準別 品目 分布, 産業別 品目別 競爭力水準의 變化推移를 분석하기 위해 HS 4단위 品目에 대해 韓國産業銀行의 분류방법에 따라 <表 8-2>와 같이 競爭力水準을 구분하였다²⁾.

<表 8-2> 競爭力水準의 區分

競爭力水準	貿易特化指數의 範圍
A (輸出特化品目)	$70 \leq A \leq 100$
B (輸出優位品目)	$30 \leq B < 70$
C (輸出入均等品目)	$0 \leq C < 30$
D (輸出入均等品目)	$-30 < D < 0$
E (輸入優位品目)	$-70 < E \leq -30$
F (輸出特化品目)	$-100 \leq F \leq -70$

競爭力水準에 따라 個別品目の 等級을 나누어 보면 <表 8-3>과 같다. 1988~92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産業은 전반적으로 競爭力이 약화되어 1992년에는 輸出特化 및 輸出優位品目の 비중이 輸入特化 및 輸入優位品目の 비중에 절반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輸出特화와 輸出優位에 해당하는 A와 B등급에 속하는 品目の 비중은 1988년의 30.5%에서 점차 감소하여 1992년에 24.8%에 불과한 반면, 輸入特화와 輸入優位에 해당하는 F와 E등급에 속하는 품목의 비중은 1988년의 54.6%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2년에는 59.8%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韓國産業銀行, 『國內産業의 國際競爭力分析』, 1992.

〈表 8-3〉 競爭力水準別 品目數의 變化推移

(單位 : 個, %)

	1988	1989	1990	1991	1992
A	245 (20.0)	218 (17.7)	198 (16.1)	177 (14.4)	186 (15.1)
B	129 (10.5)	127 (10.3)	134 (10.9)	119 (9.7)	119 (9.7)
C	98 (8.0)	94 (7.6)	88 (7.2)	97 (7.9)	91 (7.4)
D	85 (6.9)	100 (8.1)	104 (8.5)	96 (7.8)	99 (8.0)
E	172 (14.0)	183 (14.9)	182 (14.8)	208 (16.9)	211 (17.1)
F	499 (40.6)	509 (41.3)	522 (42.5)	535 (43.4)	526 (42.7)
合 計	1,228 (100.0)	1,231 (100.0)	1,228 (100.0)	1,232 (100.0)	1,232 (100.0)

註 : ()안은 연도별 각 등급의 비중임.

資料 : 關稅廳.

HS 4단위 品目的 産業別 競爭力水準別 分布는 〈表 8-4〉에 표시되어 있다. 輸出特化 및 輸出優位에 해당하는 A와 B등급에 속하는 品目的 比重이 1988~92년 기간 동안 증가한 産業은 纖維·皮革産業과 非鐵金屬産業뿐이다. 纖維·皮革産業의 경우는 그 비중이 1988년 48.3%에서 1992년 51.8%로 증가하였고, 非鐵金屬産業의 경우는 그 비중이 1988년의 11.9%에서 1992년에는 23.7%로 증가하였다. 나머지 産業들에서는 모두 그 比重이 감소하였다. 輸入特化 및 輸入優位에 해당하는 F와 E등급에 속하는 品目的 比重이 감소한 産業도 纖維·皮革産業과 非鐵金屬産業뿐이다. 纖維·皮革産業의 경우는 그 比重이 1988년 36.5%에서 1992년 33.5%로 감소하였고, 非鐵金屬産業의 경우는 그 비중이 1988년

〈表 8-4〉産業別・競争力水準別 品目 分布

(單位：個，%)

	1988年度						計
	A	B	C	D	E	F	
農畜産物	46 (23.4)	25 (12.7)	12 (6.1)	10 (5.1)	13 (6.6)	91 (46.2)	197 (100.0)
鑛業 및 에너지	5 (8.2)	1 (1.6)	2 (3.3)	5 (8.2)	8 (13.1)	40 (65.6)	61 (100.0)
無機化學 精密化學	13 (9.7)	6 (4.5)	6 (4.5)	8 (6.0)	19 (14.2)	82 (61.2)	134 (100.0)
石油化學	6 (7.1)	15 (17.7)	5 (5.9)	2 (2.4)	18 (21.2)	39 (45.9)	85 (100.0)
纖維・皮革	61 (35.9)	21 (12.4)	18 (10.6)	8 (4.7)	19 (11.2)	43 (25.3)	170 (100.0)
木材・製紙	14 (20.9)	9 (13.4)	3 (4.5)	4 (6.0)	10 (14.9)	27 (40.3)	67 (100.0)
신발 等 生活用品	12 (60.0)	3 (15.0)	0 (0.0)	0 (0.0)	2 (10.0)	3 (15.0)	20 (100.0)
유리 等 窯業製品	7 (14.3)	4 (8.2)	6 (12.2)	8 (16.3)	9 (18.4)	15 (30.6)	49 (100.0)
貴金屬 및 寶石	4 (22.2)	1 (5.6)	2 (11.1)	2 (11.1)	3 (16.7)	6 (33.3)	18 (100.0)
鐵鋼業	12 (21.8)	11 (20.0)	8 (14.6)	5 (9.1)	2 (3.6)	17 (30.9)	55 (100.0)
非鐵金屬	5 (6.6)	4 (5.3)	9 (11.8)	4 (5.3)	13 (17.1)	41 (54.0)	76 (100.0)
工具 및 雜鐵製品	9 (34.6)	3 (11.5)	4 (15.4)	4 (15.4)	4 (15.4)	2 (7.7)	26 (100.0)
一般機械	4 (4.7)	4 (4.7)	3 (3.5)	7 (8.2)	21 (24.7)	46 (54.1)	85 (100.0)
電氣 및 電子機器	7 (14.6)	9 (18.8)	6 (12.5)	7 (14.6)	10 (20.8)	9 (18.8)	48 (100.0)
輸送機械	12 (32.4)	4 (10.8)	3 (8.1)	2 (5.4)	5 (13.5)	11 (29.7)	37 (100.0)
精密機械	6 (12.8)	2 (4.3)	5 (10.6)	2 (4.3)	14 (29.8)	18 (38.3)	47 (100.0)
雜品	22 (41.5)	7 (13.2)	6 (11.3)	7 (13.2)	2 (3.8)	9 (17.0)	53 (100.0)
合 計	245 (20.0)	129 (10.5)	98 (8.0)	85 (6.9)	172 (14.0)	499 (40.6)	1,228 (100.0)

〈表 8-4〉의 계속

	1992年度						
	A	B	C	D	E	F	計
農畜産物	23 (11.6)	15 (7.6)	9 (4.6)	9 (4.6)	28 (14.1)	114 (57.6)	198 (100.0)
鑛業 및 에너지	5 (7.9)	1 (1.6)	1 (1.6)	3 (4.8)	8 (12.7)	45 (71.4)	63 (100.0)
無機化學 精密化學	6 (4.5)	8 (6.0)	6 (4.5)	7 (5.2)	29 (21.6)	78 (58.2)	134 (100.0)
石油化學	4 (4.7)	10 (11.8)	11 (12.9)	10 (11.8)	21 (24.7)	29 (34.2)	85 (100.0)
纖維·皮革	68 (40.0)	20 (11.8)	13 (7.7)	12 (7.1)	17 (10.0)	40 (23.5)	170 (100.0)
木材·製紙	7 (10.5)	3 (4.5)	5 (7.5)	4 (5.8)	13 (19.4)	35 (52.2)	67 (100.0)
신발 等 生活用品	9 (45.0)	2 (10.0)	1 (5.0)	2 (10.0)	0 (0.0)	6 (30.0)	20 (100.0)
유리 等 窯業製品	0 (0.0)	5 (10.2)	7 (14.3)	6 (12.2)	12 (24.5)	19 (38.8)	49 (100.0)
貴金屬 및 寶石	3 (17.7)	1 (5.9)	0 (0.0)	4 (23.5)	3 (17.7)	6 (35.3)	17 (100.0)
鐵鋼業	8 (14.6)	11 (20.0)	11 (20.0)	6 (10.9)	6 (10.9)	13 (23.6)	55 (100.0)
非鐵金屬	8 (10.5)	10 (13.2)	4 (5.3)	11 (14.5)	7 (9.2)	36 (47.4)	76 (100.0)
工具 및 雜鐵製品	8 (30.8)	3 (11.5)	1 (3.9)	3 (11.5)	6 (23.1)	5 (19.2)	26 (100.0)
一般機械	3 (3.5)	3 (3.5)	5 (5.9)	6 (7.1)	19 (22.4)	49 (57.7)	85 (100.0)
電氣 및 電子機器	6 (12.5)	9 (18.8)	7 (14.6)	5 (10.4)	12 (25.0)	9 (18.8)	48 (100.0)
輸送機械	11 (29.0)	5 (13.2)	1 (2.6)	1 (2.6)	6 (15.8)	14 (36.8)	38 (100.0)
精密機械	3 (6.4)	2 (4.3)	2 (4.3)	6 (12.8)	16 (34.0)	18 (38.3)	47 (100.0)
雜品	14 (25.9)	11 (20.4)	7 (13.0)	4 (7.4)	8 (14.8)	10 (18.5)	54 (100.0)
合 計	186 (15.1)	119 (9.7)	91 (7.4)	99 (8.0)	211 (17.1)	526 (42.7)	1,232 (100.0)

註：()안은 각 산업의 품목수 합계에 대한 비중임.
資料：關稅廳.

71.1%에서 1992년 56.6%로 감소하였다. 그 이외에 철강업이 변화가 없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産業들에서는 그 비중이 증가하여 경쟁력 수준의 분포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纖維·皮革産業과 非鐵金屬産業의 경우에도 <表 8-1>의 결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경쟁력 수준별 품목분포상으로는 競爭力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産業別 貿易去來實績으로 구한 貿易特化指數上으로는 競爭力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農畜産物의 競爭力 水準別 分布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A와 B등급에 속하는 品目の 비중이 1988년 36.1%에서 1992년 19.2%로 감소한 반면, F와 E등급에 속하는 品目の 비중이 52.8%에서 71.1%로 증가하였다.

産業別·品目別 競爭力水準의 변화는 <表 8-5>에 나타나 있는데, 1988년, 1990년, 1992년 중 한 年度라도 輸出入實績이 없는 품목을 제외한 HS 4단위 1,219개 品目を 그 대상으로 하였다. 纖維·皮革産業과 非鐵金屬産業에 속한 제품의 競爭力 等級의 상승이 두드러질 뿐, 대부분의 업종에서 競爭力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表 8-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農畜産物의 競爭力 弱화가 두드러진다. 1988~92년 기간 동안 競爭力 水準이 상승한 農畜産物의 品目數는 11개에 불과한 반면, 競爭力水準이 하락한 品目數는 66개나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1988~92년 기간 동안 특별히 競爭力의 強化가 두드러진 産業은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競爭力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關稅의 産業政策으로서의 기능은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農畜産物의 경우와 같이 輸入이 급증하는 産業에 대한 關稅政策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國際競爭力의 강화를 위해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産業이나 産業構造調整이 필요한 産業에 대해서도 産業政策的 側面에서 關稅政策의 役割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表 8-5〉 産業別·品目別 競爭力水準의 變化

(單位：個, %)

	1988~1990			1990~1992			1988~1992		
	하락	보합	상승	하락	보합	상승	하락	보합	상승
農畜産物	49	126	17	46	137	9	66	115	11
鑛業 및 에너지	11	43	7	11	45	5	11	43	7
無機化學·精密化學	22	96	16	16	102	16	28	87	19
石油化學	18	54	13	11	55	19	21	42	22
纖維·皮革	29	107	34	22	115	33	29	98	43
木材·製紙	20	36	10	16	44	6	23	34	9
신발等 生活用品	4	16	0	4	15	1	8	12	0
유리等 窯業製品	17	22	10	18	25	6	25	17	7
貴金屬 및 寶石	6	10	1	1	13	3	4	12	1
鐵鋼業	16	32	7	10	31	14	16	30	9
非鐵金屬	11	41	24	12	55	9	11	44	21
工具 및 雜鐵製品	9	16	1	6	15	5	12	10	4
一般機械	15	64	6	10	60	15	15	56	14
電氣·電子機器	9	30	9	7	37	4	9	32	7
輸送機械	11	18	7	7	23	6	11	18	7
精密機械	14	27	6	7	32	8	16	23	8
雜品	16	25	11	17	27	8	23	23	6
計	227 (22.72)	763 (62.59)	179 (14.68)	221 (18.13)	831 (68.17)	167 (13.70)	328 (26.91)	696 (57.10)	195 (16.00)

註：()안은 전체품목수에 대한 비중임.

資料：關稅廳.

나. 戰略的 育成이 필요한 産業

國際化·開放化가 진전되면서 關稅政策은 産業構造形成政策으로서의 기능보다는 産業構造維持政策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産業構造維持政策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고 해서 産業構造形成政策으로서의 기능을 빨리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第Ⅶ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幼稚産業保護論의 입장에서 현재는 기술수준이 낮아서 生産費가 높지만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미래에 충분히 國際競爭力을 가질 수 있는 産業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 産業을 保護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幼稚産業이나 有望産業의 國內企業들이 國際競爭力을 보유하기도 전에 輸入開放과 關稅引下로

해 外國業體와 競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國內企業들은 製品開發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幼稚産業이나 有望産業의 競爭力은 靜態的인 개념보다는 動態的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戰略的 育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關稅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奢侈性 消費財 및 輸入急増 物品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는 奢侈性 消費財에 대해 關稅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本 報告書에서는 편의상 奢侈性 消費財를 特別消費稅의 과세대상에 국한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奢侈性 消費財로 고려될 수 있는 品目은 特別消費稅의 과세대상 중 嗜好食品 등의 第3種과 석유류 등의 第4種을 제외하고, 나머지 귀금속류 등의 第1種 7개 품목과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의 第2種 15개 품목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들 品目은 <表 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에서 60% 사이의 높은 세율의 特別消費稅가 부과되고 있고, 보석류, 모피와 同製品, 승용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다른 完製品과 비슷한 수준인 8%의 關稅가 부과되고 있다.

이들 品目の 輸出入額을 <表 8-7>에서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이들 産業에서 전체적으로 貿易收支 黑字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의 가장 큰 요인은 이들 産業에 우리나라의 輸出戰略産業인 電子製品과 乘用車 등이 속해 있기 때문이다. 컬러 TV, 전기음향기기, VTR 등의 電子製品과 乘用車의 貿易收支 黑字額은 53억 1천만달러로, 이는 奢侈性 消費財 전체 흑자액 73억 2천만달러의 72.5%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아직 先進國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부 奢侈性 消費財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品目에 비해 비교적 높은 關稅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 우리나라 消費者의 外製選好度는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관세율이 낮으면 奢侈性 消費財의 輸入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貿易收支의 악

〈表 8-6〉 特別消費稅 對象品目에 대한 特別消費稅率과 關稅率

(單位 : %)

	特 別 消費稅率	關稅率의 單純平均				
		90/91	1992	1993	1994	
1. 寶石類	60	10.8	9.3	8.0	7.0	
2. 貴金屬製品	20	13.0	11.0	9.0	8.0	
3. 毛皮와 同製品	60	13.0	11.0	8.5	6.5	
4. 투전기 等 娛樂用	60	14.0	11.7	9.3	8.0	
5. 撞球 골프 狩獵用	60	16.0	13.0	10.0	8.0	
6. 家具	10	13.4	11.3	9.1	8.0	
7. 特殊化粧品	10	16.0	13.0	10.0	8.0	
8. 空氣調節器	25	15.6	12.8	9.9	8.0	
9. 냉장고	{ 大型 小型	20	14.0	11.7	9.3	8.0
		15				
10. 電氣세탁기		10	12.9	11.1	9.1	8.0
11. 칼라 TV	{ 大型 小型	20	13.4	11.3	9.1	8.0
		15				
12. 電氣音響機器		15	16.0	13.0	10.0	8.0
13. 電氣電熱器具		15	14.0	11.7	9.3	8.0
14. 乘用自動車	1,500cc 이하	10	20.0	17.0	15.0	10.0
	1,500cc~2,000cc	15				
	2,000cc 이상	25				
15. 모터보트, 요트		30	13.0	11.0	9.0	8.0
16. 피아노	{ 그랜드 其他	20	16.0	13.0	10.0	8.0
		10				
17. 高級時計		20	14.2	11.8	9.4	8.0
18. VTR		20	10.0	13.0	10.0	8.0
19. 영상촬영기		25	13.0	11.0	9.0	8.0
20. TV 영상투사기		30	13.0	11.0	9.0	8.0
21. 크리스탈 유리		10	16.0	13.0	10.0	8.0
22. 雪上·水上스키		25	13.0	11.0	9.0	8.0

註 : 關稅率은 HS 10단위 品目の 單純平均 關稅率임.

資料 : 三逸會計法人, 『國稅便覽』, 1994.

韓國國稅研究所, 『關稅率表』, 1992.

〈表 8-7〉 特別消費稅 對象品目の 輸出入 推移

(單位:百萬달러, %)

	1990		1991		1992	
	輸出額	輸入額	輸出額	輸入額	輸出額	輸入額
寶石類	69	133	69 (0.0)	69 (-48.1)	71 (2.9)	61 (-11.6)
貴金屬製品	193	327	206 (6.7)	376 (15.0)	256 (24.3)	455 (21.0)
毛皮와 同製品	5	87	6 (20.0)	131 (50.5)	7 (16.7)	128 (-2.3)
투전기 等 娛樂用	49	25	55 (12.2)	8 (-68.0)	59 (7.3)	15 (87.5)
撞球 골프 狩獵用	33	22	30 (-9.1)	22 (0.0)	31 (3.3)	27 (22.7)
家具	160	55	142 (-11.3)	59 (6.3)	116 (-18.3)	81 (37.3)
特殊 化粧品	18	46	19 (5.6)	62 (34.8)	25 (31.6)	69 (11.3)
空氣調節器	13	12	18 (38.5)	1 (-91.7)	52 (188.9)	11 (1000.0)
냉장고	180	157	232 (28.9)	144 (-8.3)	298 (28.4)	205 (42.4)
電氣세탁기	61	12	72 (18.0)	10 (-16.7)	91 (26.4)	9 (-10.0)
컬러 TV	1,348	32	1,485 (10.2)	16 (-50.0)	1,423 (-4.2)	7 (-56.3)
電氣音響機器	1,737	204	1,832 (5.5)	403 (97.5)	1,859 (1.5)	444 (10.2)
電氣電熱器具	569	46	692 (21.6)	55 (19.6)	668 (-3.5)	49 (-10.9)
乘用自動車	1,856	98	2,143 (15.5)	41 (-58.2)	2,537 (18.4)	58 (41.5)
모터보트, 요트	8	2	5 (-37.5)	2 (0.0)	8 (60.0)	2 (0.0)
피아노	105	2	104 (-1.0)	2 (0.0)	96 (-7.7)	2 (0.0)
高級時計	145	36	141 (-2.8)	38 (5.6)	153 (8.5)	34 (-10.5)
VTR	1,140	29	1,286 (12.8)	32 (10.3)	1,181 (-8.2)	28 (12.5)
영사촬영기	0	3	0 (0.0)	3 (0.0)	0 (0.0)	2 (-33.3)
TV 영상투사기	39	23	73 (87.2)	28 (21.7)	145 (98.6)	30 (7.1)
크리스탈 유리	29	61	36 (24.1)	66 (8.2)	38 (5.6)	63 (-4.5)
雪上·水上스키	2	8	1 (-50.7)	10 (25.0)	1 (0.0)	10 (0.0)
合 計	7,759	1,420	8,647 (11.4)	1,578 (11.1)	9,115 (5.4)	1,790 (13.4)

註: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資料: 國稅廳.

商工資源部, 『輸入統計』, 各 年度.

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自動車·家電製品 등의 耐久消費財의 생산에는 수많은 부품과 소재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産業에 대한 生産波及效果가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나 첫째, 消費財의 輸入은 그 消費財가 생활필수품이든 사치품이든 消費者의 상품선택의 폭을 더 넓혀 준다는 점, 둘째, 價格이나 品質面에서 國產品보다 輸入品이 消費者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면 消費財의 輸入은 消費者의 厚生을 더 높여 준다는 점, 셋째, 奢侈品이면서도 주로 高所得層이 소비하는 품목들에 대해 所得再分配와 단일세율적용에 따른 消費課稅의 逆進性을 해결하기 위해 特別消費稅를 별도로 課稅하고 있다는 점, 넷째, 奢侈性 消費財에 대한 상대적인 高關稅率은 이 부문의 國內生産을 늘리는 대신 다른 부문의 生産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奢侈性 消費財라고 해서 반드시 높은 稅率의 關稅를 부과해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이들 제품에 대해 關稅率을 引上하는 것은 通商摩擦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의 한 예를 들면, 韓·美通商實務會議에서 美國은 우리나라에 대해 自動車가 內需에 비해 輸出比重이 높다는 이유로 關稅率을 引下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國內稅制도 배기량 기준에서 연료효율 및 배기가스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奢侈性 消費財의 關稅引上問題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關稅率의 引上으로 通商摩擦을 유발하기보다는 特別消費稅 등 國內稅制를 外國의 압력으로부터 보호·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다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輸入이 急增하는 품목에 대한 關稅率의 調整問題를 논의하기로 한다. <表 8-8>에는 HS 4단위 기준으로 전년대비 輸入增加率 상위 20개 품목이 표시되어 있다. 상위 20개 품목 중에는 특히 農畜產物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1989년에는 20개 품목 중 8개가 農畜產物이었는데, 1990년에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하여 13개를 기록하였고, 그 후 1991년에는 11개, 1992년에는 4개로 감소하였다. 農畜產物 이외에 주목할 만한 품목은 纖維·衣服製品이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매년 1개 품

목만이 상위 20개 품目に 속하였으나, 1992년에는 갑자기 4개의 품목이 상위 20개 품목에 속하게 되었다. 이들 품목이 상위 20개 품目に 많이 속하게 된 것은 農畜産物의 경우는 특히 中國으로부터, 纖維·衣服의 경우는 後發開途國으로부터 低價品의 輸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關稅率의 調整問題가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들 품목의 輸入急增을 억제하기 위해서 첫째, 關稅率을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둘째, 從價稅 대신에 從量稅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두번째 問題에 대해서는 第3節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첫번째 問題만을 논의하기로 한다. 만일 關稅率의 인상을 통해 輸入이 急增하는 품目的 輸入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輸入急增 품目 각각에 대해 適時에 關稅率을 계속해서 조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行政의 費用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정치적 압력, 즉 로비에 의해 行政의 透明性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이하여 市場開放과 이로 인한 輸入急增 또는 不公正한 貿易行爲에 의한 輸入增大는 어느 정도 불가피해지고 있고, 이를 關稅率의 調整으로 억제하는 것도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따라서 輸入이 急增하는 품目は 關稅率의 인상을 통해 輸入을 抑制하기 보다는, 輸入의 急增이 우리 産業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 緊急關稅, 調整關稅, 割當關稅 등의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輸入이 급증하는 품目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斜陽化되는 産業에 속하는 製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품目的 關稅率調整 問題에 대해서는 이 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表 8-8〉年度別 輸入急増品目

(單位 : %)

	1989		1990		1991		1992	
	品 目	增加率	品 目	增加率	品 目	增加率	品 目	增加率
1	니켈매트등	493,496 (7501)	차주식의 전	983,391 (8710)	감자	635,873 (0703)	버터밀크, 요	160,375 (0403)
2	동물성 또는 식물성비료	187,012 (3101)	돼지비계, 가금의 비계	69,996 (0209)	식유 및 역청 유(원유)	127,266 (2709)	곡분(밀가루 제외)	15,475 (1102)
3	롤상 등 판지	101,677 (4805)	마태	15,308 (0903)	석탄, 연탄 등 고형연료	124,425 (2701)	철강 제조시 생기는 슬래	4,889 (2619)
4	우주선 및 운반로켓트	84,542 (8802)	양배추, 케일	10,850 (0704)	우표, 수입인지 등	78,002 (9704)	타르, 기타 광 물성 타르	3,627 (2706)
5	신문용지	67,806 (4801)	폭약 (화약제 외)	10,051 (3602)	식용설육	28,118 (0206)	불꽃, 신호용 조명탄	2,596 (3604)
6	사과, 배 및 마르멜로	26,251 (0808)	당근, 순무, 선모 등	3,672 (0706)	물(천연, 인조 광수), 얼음등	20,642 (2201)	수수	1,935 (1007)
7	조란(껍질이 붙지 않은것)	21,699 (0408)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등	3,000 (1503)	유채(채종 또는 콜자)	15,246 (1205)	기타 선박	1,443 (8906)
8	조란(껍질이 붙은 것)	16,780 (0407)	기타과실 (신선한 것)	2,859 (0810)	감자	6,817 (0701)	아연제의 기타제품	864 (7907)
9	가공한 곡물 (껍질제거)	8,770 (1104)	연제의 관과 관련결구류	2,770 (7805)	육과 조분 돼지 고기 등	3,883 (0210)	아동용 그림 책과 습화용	638 (4903)
10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7,916 (0811)	일차형상의 철 비합금강	2,739 (7206)	수집품, 표본	3,059 (9705)	남자, 소년용 싱글리트 등	636 (6207)

〈表 8-8〉의 계속

(單位 : %)

	1989		1990		1991		1992	
	品 目	增加率	品 目	增加率	品 目	增加率	品 目	增加率
11	불꽃, 신호용 조명탄 등	3,728 (3604)	소시지 기타 유사한 물품	2,727 (1601)	오리지날 조 각과 조상	2,272 (9703)	플라스틱의 조합제품	634 (6809)
12	맥아	2,138 (9304)	파이프 오르간, 하모늄	2,317 (9203)	신호 등 관제용 기기	1,867 (8608)	파이프 오르간, 하모늄	597 (9203)
13	폭약 (화약제의)	1,700 (3602)	가금류의 육 과 식용설육	2,003 (0207)	밀크와 크림	1,763 (0402)	면(카드, 코움)	585 (5203)
14	공기총 등의 무기류	1,422 (9304)	대두유와 그 분획물	1,860 (1507)	대추야자, 무 화과 등	1,528 (0804)	알루미늄 용기	564 (7611)
15	철제품 (해면질 등)	1,398 (7203)	호밀	1,859 (1002)	자주식의 전차, 장갑차 등	1,451 (8710)	가죽 기타의 웨 이스트	546 (4110)
16	수수	1,114 (1007)	철, 비합금강의 기타 봉	1,655 (7214)	맥아	1,365 (1104)	의류(5602-03 5903, 5906-07)	536 (6210)
17	산화연, 연단 오렌지연	1,111 (2824)	건조한 채두류	1,422 (0713)	동물의 장, 방광 등	1,260 (0504)	연광과 그 정광	497 (2607)
18	감자	1,000 (0701)	사과, 배 및 마르멜로	1,325 (0808)	버터 및 기타 지와 유	1,214 (0405)	주석의 웨이스트 스크랩	493 (8002)
19	커피, 차 등의 조제품	953 (2101)	엔진을 갖춘 차시	1,245 (8706)	포장용의 빈 포대	1,083 (6305)	유람선 등의 선박	418 (8901)
20	남자, 소년용 바지 자켓등	924 (6103)	아이스크림 기타 빙과류	1,165 (2105)	도화선, 전기 뇌관 등	1,079 (3603)	바닐라두	398 (0905)

註 : 1. ()안은 HS 분류번호임.

2.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資料 : 關稅廳.

라. 勞動集約的인 輕工業 製品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는 賃金上昇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에 대해 加工度別 稅率隔差를 고려하고 있다. 勞動集約的인 輕工業은 대체로 1970년대와 1980년대 중반까지도 높은 國際競爭力을 보였으며 輸出總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은 產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生産活動이 크게 위축되는 등 심각한 景氣沈滯에 직면하여 經營難에 처한 限界企業들의 倒産事態가 계속되면서 外國市場에서의 國際競爭力 이외에 國內市場에서 後發開途國과의 競爭力 問題도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產業의 대표적인 例가 衣類產業과 新발產業이다. 이들 產業은 <表 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美國, 日本 등 先進國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關稅를 부과하고 있는 업종들로서 우리나라의 經濟力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낮은 關稅率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表 8-9> 主要 輕工業製品의 國別 關稅率 比較

(單位 : %)

	韓國(1994)	美國	日本	EC
衣 類	8	17	14~16.8	14
신 발	8	0~37.5	27~30	8~20
가 죽 제 품	6.32	0~5	0~60	0~7

資料 : 財務部.

衣類產業과 신발產業의 경우는 關稅政策의 두 가지 목적인 財政收入과 產業保護 중 주로 產業保護의 목적으로 關稅 引上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류와 신발의 輸入이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에 각각 0.3%, 0.1%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關稅率를 대폭 引上하지 않는 한 이들 품목을 財政收入의 확보를 위한 財源으로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産業保護의 목적으로 衣類産業과 신발産業의 關稅率을 引上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자. <表 8-10>은 衣類와 신발의 輸出入變化 推移를 보여 주고 있다. 衣類의 경우는 1989년을 정점으로 輸出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輸入은 그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衣類의 貿易收支 黑字幅이 가장 작은 1992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輸入額은 輸出額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발의 경우도 衣類의 輸出入變化 推移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신발의 貿易收支 黑字幅이 가장 작은 1992년을 기준으로 輸入額이 輸出額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表 8-10〉 衣類·신발의 輸出入 變化推移

(單位：百萬달러, %)

	1988		1989		1990		1991		1992	
	輸出額	輸入額	輸出額	輸入額	輸出額	輸入額	輸出額	輸入額	輸出額	輸入額
衣類	8,449 (16.6)	9 (62.5)	8,763 (3.7)	21 (133.3)	7,600 (-13.3)	45 (114.2)	7,141 (-6.1)	173 (284.4)	6,483 (-9.2)	255 (47.4)
신발	3,801 (34.6)	31 (3.3)	3,587 (-5.6)	43 (38.7)	4,307 (20.1)	91 (111.6)	3,836 (-10.9)	92 (1.1)	3,184 (-17.0)	113 (22.8)

註：()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資料：關稅廳.

이와 같이 신발과 의류는 貿易收支上으로는 國際競爭力이 絕對優位에 있는 품목이나 輸出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輸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産業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衣類産業과 신발産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輸出側面과 輸入側面으로 나누어 살펴 보자. 이들 産業의 輸出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로 先進國 景氣의 回復遲延으로 輸入에 대한 需要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들 産業이 공통적으로 輸出構造上에 근본적인 몇 가지 問題點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1980년대 후반부터 높은 賃金上昇, 人力難의 심화, 國際收支黑字에 따른 원貨의 절상 등으로 급격한 製造原價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低賃金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後發開途國과의 價格競爭에서 競爭力을 상실하고 있다. 둘째, OEM 방식의 輸出이 90% 이상의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브랜드나 현지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하여 輸出單價의 상승에 따른 外國바이어들의 輸入先轉換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製造技術은 先進國 수준이지만 製品設計, 디자인, 部品 素材開發技術이 낙후되어 있어서 세계시장의 수요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輸入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들 産業은 향후 점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들 産業에 대한 關稅率이 <表 8-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속히 引下되었고, 國內市場의 開放이 본격화됨에 따라 後發開途國의 製品이 國內市場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後發開途國은 저렴한 勞動力을 활용하여 값싼 製品을 생산함으로써 급속한 輸出 伸長을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海外市場뿐만 아니라 國內市場에서도 이들 後發開途國에게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 國內市場에서 後發開途國의 약진을 <表 8-12>에서 보면, 輸入市場에서 특히 中國과 인도네시아의 占有率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衣類의 경우 中國으로부터의 輸入은 1988~92년 기간 동안 金額으로 무려 1,400배의 규모로 급신장함에 따라 1988년에 불과 0.6%에 지나지 않던 輸入市場 占有率이 1992년에 와서는 29.3%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로부터의 輸入도 1990~92년 기간 동안 55배의 규모로 신장함에 따라 輸入市場 占有率도 1990년 0.7%에서 1992년에는 6.8%로 크게 신장하였다. 신발의 경우도 衣類와 마찬가지로 後發開途國이 높은 輸入伸長勢를 보이고 있다. 1988년에는 우리나라에 輸出하는 상위 10개국 중 中國만이 유일한 後發開途國이었고, 輸入市場의 占有率은 10.8%이었다. 그 후 1992년에는 상위 10개국에 中國,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

〈表 8-11〉衣類·신발의 單純平均關稅率

(單位：%)

	關稅率의 單純平均			
	90/91	1992	1993	1994
衣 類	16	13	10	8
신 발	13	11	9	8

資料：韓國關稅研究所，「關稅率表」，1992.

도 등 4개국의 後發開途國이 속하게 되었고, 이들 國家들의 輸入市場 占有率은 23.9%로 크게 신장하였다.

輸出側面과 輸入側面의 이러한 問題點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본적인 問題點의 해결없이 關稅率의 引上만을 통하여 이들 産業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內需에서 차지하는 輸入品의 비중은 1992년 신발의 경우 5.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輸入品에 대한 關稅率을 소폭 인상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볼 때 國內生産業者의 收支改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低價品을 생산하고 競爭力이 전혀 없어 經營難에 봉착해 있는 限界企業은 소폭적인 關稅引上으로부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關稅率의 引上을 통해서 이들 企業을 장기적으로 保護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첫째, 만일 關稅率을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게 되면 外國으로부터 강력한 通商壓力을 받게 될 것인데, 衣類와 신발은 國內生産 중 60% 이상을 輸出하고 있으며 貿易收支의 黑字幅이 매우 큰 업종이므로 높은 關稅率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衣類와 신발産業은 국민 모두가 消費者인데, 關稅引上으로 인해 이들 品目の 價格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 국민 모두의 厚生損失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産業에 대한 關稅率 引上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表 8-12〉衣類·신발의 輸入相對國家 變化推移

(單位：百萬달러, %)

	衣 類					신 발				
	1988	1989	1990	1991	1992	1988	1989	1990	1991	1992
1	일 본 (32.6)	이탈리아 (33.0)	이탈리아 (38.2)	이탈리아 (29.0)	중 국 (29.3)	미 국 (33.0)	미 국 (36.4)	미 국 (51.0)	미 국 (41.1)	미 국 (38.0)
2	이탈리아 (26.7)	일 본 (25.8)	일 본 (24.9)	일 본 (18.9)	이탈리아 (21.6)	일 본 (25.7)	일 본 (17.7)	일 본 (11.9)	일 본 (17.7)	중 국 (15.6)
3	영 국 (10.6)	프랑스 (12.4)	홍 콩 (8.5)	중 국 (12.6)	일 본 (13.1)	중 국 (10.8)	이탈리아 (9.6)	이탈리아 (6.9)	독 일 (9.1)	일 본 (12.3)
4	미 국 (9.1)	홍 콩 (9.9)	프랑스 (6.3)	인도네시아 (6.6)	인도네시아 (6.8)	핀란드 (10.2)	중 국 (9.4)	대 만 (6.3)	이탈리아 (7.5)	이탈리아 (8.2)
5	프랑스 (5.4)	영 국 (5.3)	영 국 (5.0)	홍 콩 (5.2)	미 국 (3.8)	서 독 (8.3)	핀란드 (9.2)	독 일 (5.1)	대 만 (6.4)	대 만 (5.9)
6	서 독 (5.0)	미 국 (3.8)	중 국 (3.9)	미 국 (4.5)	홍 콩 (3.4)	이탈리아 (6.6)	서 독 (7.6)	핀란드 (3.5)	중 국 (5.9)	독 일 (4.2)
7	홍 콩 (4.2)	서 독 (1.8)	독 일 (2.8)	프랑스 (4.0)	스리랑카 (3.1)	영 국 (1.1)	프랑스 (1.9)	중 국 (2.6)	인 도 (4.1)	인도네시아 (3.4)
8	스위스 (1.0)	캐나다 (1.8)	미 국 (2.5)	독 일 (3.5)	베트남 (2.9)	프랑스 (1.1)	홍 콩 (1.2)	인 도 (2.5)	핀란드 (3.0)	필리핀 (2.6)
9	캐나다 (1.0)	네덜란드 (1.1)	태 국 (1.3)	영 국 (2.8)	프랑스 (2.5)	오스트리아 (0.8)	영 국 (1.0)	인도네시아 (1.9)	인도네시아 (2.1)	인 도 (2.3)
10	중 국 (0.6)	필리핀 (0.3)	인도네시아 (0.7)	태 국 (2.4)	독 일 (2.2)	스위스 (0.6)	오스트리아 (0.9)	프랑스 (1.3)	필리핀 (1.5)	영 국 (1.1)
10個國 總計	9 (96.1)	20 (95.7)	42 (93.5)	154 (89.4)	227 (89.0)	31 (98.4)	41 (94.9)	85 (93.0)	91 (98.7)	103 (91.3)
總計	9	21	45	173	225	31	43	91	92	113

註：1. ()안은 총계에 대한 비중임.

2. 총계는 우리나라의 의류 및 신발의 전체 수입액임.

資料：商工資源部, 『輸入總計』, 各 年度.

다음으로, 衣類産業과 신발産業에 대해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 제기된 加工度別 稅率隔差를 고려하는 問題를 논의해 보자. 이를 위해서 兪正鎬 外(1993)가 추정한 <表 8-13>의 實效保護率을 인용하기로 한다. 한 産業의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을 먼저 살펴 보면, 1990년 衣類産業의 Corden方式 實效保護率은 71.0%로서 이는 保護下에서의 國內販賣를 통하여 창출한 附加價値는 自由貿易下에 비해서 명목기준으로 71.0%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Corden方式의 實效保護率 71.0%는 交易財全體의 平均인 38.6%나 製造業全體의 平均인 21.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Balassa方式의 實效保護率도 97.2%로 交易財 전체의 平均인 52.6%나 製造業全體의 平均인 30.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발産業의 Corden方式 實效保護率은 143.4%, Balassa方式 實效保護率은 195.5%로 交易財全體나 製造業全體의 平均보다 매우 높은 保護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兪正鎬 外(1993)는 또 保護를 받는 産業의 개별입장에서는 國內販賣에 대한 保護뿐만 아니라 輸出販賣에 대한 保護에도 관심이 있다고 보고, 國內販賣에 輸出販賣를 포함하는 總販賣에 대한 平均實效保護率도 추정하였다. 平均實效保護率은 總販賣 중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과 輸出에 대한 實效保護率의 加重平均으로 구하였는데, 輸出의 비중이 높은 衣類産業과 신발産業은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輸出은 國境價格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名目保護率이 零이고, 中間投入財에 대한 名目保護率도 關稅還給制度로 인해 零이 되므로 결국 輸出에 대한 實效保護率도 零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衣類産業과 신발産業은 製造業全體의 平均보다 높은 保護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衣類와 신발은 製造業全體의 平均 이상의 保護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衣類産業과 신발産業의 加工度別 稅率隔差를 통하여 保護를 더 강화하는 것은 實效保護率 理論에 의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表 8-13〉 實效保護率의 推定值

(單位：%)

	國內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總販賣에 대한 實效保護率	
	Corden 방식	Balassa 방식	Corden 방식	Balassa 방식
交易財全體	38.6	52.6	22.4	30.5
製造業全體	21.2	30.4	11.2	15.8
衣 類	71.0	97.2	15.7	21.9
신 발	143.4	195.5	31.4	42.8

資料：俞正鎬 外(1993).

이상에서 衣類와 신발의 例를 들어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의 關稅率 調整問題를 논의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 問題를 논의할 때에는 該當 產業이 어떤 類型의 產業인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 다른 方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該當 產業 자체가 斜陽產業인 경우이다. 만일 該當 產業이 斜陽化 過程에 있다면 이 產業에 속한 企業은 가능하면 빨리 이 產業으로부터 退出을 해야 하는데, 政府의 政策은 이들 產業으로부터의 退出을 合理化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해당 製品에 높은 關稅率을 부과하게 되면 그 產業의 構造 調整을 지연하고, 資源의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은 社會的 費用을 크게 할 뿐이다. 따라서 높은 關稅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企業이 退出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產業構造調整政策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該當 產業이 이미 斜陽產業으로 알려져서 資源의 이동이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產業에 대해서는 다른 產業보다 더 높은 關稅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높은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소규모의 國內生産을 보호해 주고, 消費의 억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該當 產業 자체가 斜陽產業이라기보다는 該當 製品이 賃金上昇 등으로 인해 價格競爭力을 상실하고 있는 產業의 경우이다. 衣類産業과 신발産業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產業은 低賃金を 바탕

으로 한 低品質, 低附加價值 製品의 생산에서 高品質, 高附加價值的 製品을 생산하는 技術集約産業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政府의 政策은 이들 기업들이 産業內 構造調整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당 제품에 높은 關稅率을 부과하여 産業內의 構造調整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해당 제품에 높은 關稅率을 부과하게 되면 産業內의 構造調整을 지연시켜서 영원히 競爭力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短期的인 영향과 長期的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關稅政策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産業이 外國市場에서 競爭力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國內市場에서 높은 市場占有率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 産業의 關稅率을 인상하는 것은 産業內 構造調整을 더욱 지연시키는 것이다. 반면, 한 産業이 外國市場에서 競爭力을 상실함과 동시에 國內市場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關稅를 인상하여 이 産業을 보호해 줌으로써 産業內 構造調整을 이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衣類와 신발의 경우는 이 두 가지의 例 중에서 前者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海外市場에서 뿐만 아니라 國內市場에서도 競爭力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國內市場에서 國產製品이 90% 이상의 높은 市場占有率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表 8-9>에서 본 바와 같이 이들 品目에 대한 美國, 日本, EC 등 先進國의 關稅率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關稅率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들 품목의 國內市場 대부분을 外國에 빼앗김에 따라 소규모의 國內生産을 保護해야 하는 先進國과 우리나라는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非競爭原資材 및 中間財의 無稅化

關稅引下豫示制를 시행하면서 우리나라는 종전에 無稅를 적용하던 원광석 등 原資材에 대해 低率의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關稅引下에 따른 財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非競爭原資材보다는 競爭原資材에 대하여 다소 높은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國內 産業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中間財의 경우에는 非競爭 1次 加工品에 한하여 中心稅率보다 낮은 5%의 稅率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原資材 및 中間財에 부과하는 關稅를 제거함으로써 國內 産業의 價格競爭力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UR의 無稅化協商 타결과 함께 더욱 증대되고 있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中心稅率과는 다른 稅率이 적용되고 있는 어떤 한 品目の 關稅率 재조정은 그 品目の 輸入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효과 등을 포함하는 品目別 研究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原資材 및 中間財 輸入에 대한 關稅가 財政收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完製品의 價格競爭力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政策方向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原資材 및 中間財의 無稅化와 관련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原資材 및 中間財의 輸入價格 下落은 관련 製品의 價格競爭力을 제고시켜 주므로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거나 生産되더라도 그 양이 미미하여 需要를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非競爭原資材나 中間財의 關稅를 제거함으로써 國內 産業 전체의 競爭力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1984년 關稅引下豫示制를 실시하기 이전까지 일부 原資材에 대해서 無稅를 적용하였다. 두번째 주장은 非競爭原資材에도 최소한의 關稅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서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부족한 國內 資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資源節約의 産業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國內에서 生産되지 않는, 또는 國內 生産量이 需要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非競爭原資材에도 최소한의 關稅를 부과하여 이들 資源의 過消費를 억제하여야 한다. 세번째 주장도 非競爭原資材 및 中間財에 關稅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關稅의 財政收入 機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輸入이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이 부문에 無稅를 적용할 경우 財政收入에 주는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財政收入 확보를 위해서 이 부문에 關稅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논리적 타당성을 지닌 것들이므로 실제적인 政策의 결정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비교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資料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原資材 및 中間財 無稅化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는 매우 어렵다. 本節에서는 한정된 資料를 가지고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 無稅化의 1차적인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각 주장들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향후 政策方向을 모색한다.

먼저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無稅化에 따른 國內 産業의 價格 競爭力 제고 효과를 <表 8-14>를 통해서 분석해 본다. 이 表는 韓國銀行에서 발간한 『1990年 産業聯關表』(1993)에 나타난 輸入中間財 投入係數를 요약한 것이다. 中間投入計는 業種別로 製品 한 단위 生産하는 데 들어간 輸入中間財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며 中間需要計는 각 業種에 속하는 輸入中間財가 國內 産業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이 表의 첫번째 행에 나타난 수치들은 農林水産業 製品을 1단위 生産하는 데 들어가는 輸入中間財가 0.020335단위이며, 우리나라의 産業을 평균적으로 볼 때 製品 1단위 生産하는데 0.008048단위의 輸入 農林水產品을 中間財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製造業部門의 13개 業種 中 飲·食料品, 窯業·土石製品, 金屬製品, 기타 製造業 製品의 4個 業種을 제외한 나머지 9個 業種은 10%를 증가하는 輸入中間財 投入比率를 보여 주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4개 製造業 業種은 5~10%의 輸入中間財 投入係數를 보여 주었다. 農林水産業, 鑛

業, 서비스業은 대부분 5% 이하의 낮은 輸入中間財 投入比率을 보여 주었다³⁾. 이는 輸入中間財에 대한 關稅가 農林水産業, 鑛業, 서비스業, 그리고 製造業 中 飲·食料品, 窯業·土石製品, 金屬製品, 기타 製造業 製品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모든 輸入中間財에 부과되는 關稅를 1% 인하할 경우 이들 業種의 價格引下率은 0.1%도 못 된다. 輸入中間財의 投入比率이 비교적 높은 9個 製造業 中 石油·石炭製品을 제외한 경우 輸入中間財에 대한 關稅率 1% 인하가 0.10%(輸送機械)에서 0.26%(종이·나무製品)의 價格引下 效果를 가져 온다. 石油·石炭製品의 경우에는 1%의 中間財 關稅率 引下が 0.62%의 價格引下 效果를 가져 온다.

需要가 가장 많은 輸入中間財는 鑛業과 化學製品이며, 그 다음이 電氣·電子機器, 第1次金屬의 순이다. 이들 製品에 속하는 輸入中間財의 關稅率을 1% 인하하면 國內 產業의 價格競爭力이 평균 0.012%(第1次金屬)에서 0.018%(鑛業) 상승된다. 이들 製品이 國內 產業에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데 반하여 纖維 및 가죽製品, 종이·나무製品에 속하는 輸入中間財는 同種 業種의 完製品 또는 가공정도가 높은 品目の 生産에 많이 이용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産業聯關表』에 나타난 輸入中間財는 非競爭中間財뿐만 아니라 비교적 높은 關稅率이 적용되는 競爭中間財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本節의 논의의 대상이 되는 非競爭原資材 및 1次加工品の 投入係數는 <表 8-14>에 나타난 輸入中間財 投入係數보다 낮을 것이다.

<表 8-14>에 나타난 輸入中間財 投入係數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輸入中間財에 대한 關稅率 引下는 國內 產業의 價格競爭力 제고에 큰 效果를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반적인 原

3) 電氣·가스·水道, 運輸 및 保管, 公共行政 및 國防은 예외로 輸入中間財 投入係數는 0.8~0.14의 사이에 있다.

〈表 8-14〉産業別 輸入中間財 投入係數

	中間投入計	中間需要計
1. 農林水産品	0.020335	0.008048
2. 鑛業	0.006466	0.017769
3. 飲・食料品	0.086933	0.004593
4. 纖維 및 가죽	0.168892	0.005409
5. 종이・나무 製品	0.260176	0.003667
6. 化學製品	0.206057	0.016121
7. 石油・石炭製品	0.643363	0.005185
8. 窯業・土石製品	0.087398	0.001545
9. 第1次金屬	0.188421	0.011886
10. 金屬製品	0.099452	0.001116
11. 一般機械	0.166467	0.006980
12. 電氣・電子機器	0.231919	0.013504
13. 精密機器	0.187298	0.001564
14. 輸送機械	0.104007	0.003046
15. 其他 製造業 製品	0.066768	0.000388
16. 電力・가스・水道	0.143850	0.000010
17. 建設	0.030583	0.000000
18. 都小賣	0.019892	0.000604
19. 運輸 및 保管	0.136027	0.002482
20. 通信	0.043993	0.000388
21. 金融 및 保險	0.008549	0.000800
22. 不動産 및 事業서비스	0.006850	0.001575
23. 公共行政 및 國防	0.086937	0.000063
24. 教育 및 保健	0.012651	0.000003
25. 社會 및 個人서비스	0.023210	0.000136
26. 其他	0.022792	0.001673

資料：韓國銀行，「1990 産業聯關表」，1993.

資材 및 中間財의 無稅化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만약 一部 品目の 無稅化를 고려한다면 그 대상은 비교적 輸入中間財 수요가 많은 鑛業, 化學製品, 電氣·電子機器, 第1次金屬에 속하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

두번째 주장은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資源節約의인 産業構造를 지향해야 하는데 非競爭原資材와 1次加工品の 關稅率 引下는 輸入資源을 많이 사용하는 産業構造로의 이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⁴⁾. 原資材價格 引下가 原資材 多消費型 産業構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바로 原資材 및 中間財에 關稅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보고서의 앞부분(第 I 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關稅는 消費稅와 生産補助金을 합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특정한 物品의 消費를 억제하는데에는 生産과 消費의 왜곡을 동시에 초래하는 關稅보다는 生産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消費稅가 우월하다. 그러나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附加價値稅制度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消費稅制를 통해서 原資材 및 中間財의 사용에 대한 稅負擔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石油類에 부과하는 特別消費稅가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긴 하지

4) 그 예로 에너지 關聯 産業의 경우, 柳志喆(1993)에 의하면, “1988년 이후 製造業의 단위당 에너지 비용은 8.2% 증가하였는데, 에너지 원단위 상승(즉, 에너지 生産性的 악화)에 의하여 8.3%, 價格下落에 의하여 -0.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에너지 價格의 하락은 製造業 競爭力 提高에 기여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價格下落에 의하여 에너지 원단위(에너지 生産性)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2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에너지 價格의 1.0% 하락은 에너지 원단위의 1.09%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에너지원단위 價格彈性置 = -1.09). 즉, 에너지價格 下落이 0.09% 만큼의 단위당 에너지費用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낮은 에너지價格이 에너지 需要 증가를 가속시키고 에너지 원단위를 악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製造業의 에너지費用 負擔을 증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이를 非競爭原資材 및 中間財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附加價值稅制度의 원칙과 相馳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資源節約型 産業構造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特別消費稅의 확대를 검토해 볼 수도 있으나 상당 기간 동안은 결국 關稅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財政收入의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 본 보고서의 第V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關稅收入의 비중은 2.13%로 우리나라의 經濟發展水準, 輸入比重, 輸出比重, 그리고 內國稅負擔率을 근거로하여 추정한 適正關稅負擔率 2.39%보다 낮다. 따라서 關稅의 財政收入의 기능을 고려할 때 關稅收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政策의 채택은 바람직하지 않다.

非競爭原資材 및 非競爭 1次 加工品으로부터 얻어지는 關稅收入의 중요성은 <表 8-15>에서 보는 바와 같다. 非競爭原資材 중 1%의 關稅

<表 8-15> 非競爭 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輸入實績(1992)

	輸入		內需用 輸入		關稅收入 ¹⁾	
	輸入額 (百萬 달러)	總輸入에 대한 比重 (%)	輸入額 (百萬 달러)	總輸入에 대한 比重 (%)	金額 (百萬원)	總關稅 收入에 대한 比重(%)
非競爭 原資材						
關稅率 1%	3,395	4.16	1,338	2.39	10,547	0.33
關稅率 2% ²⁾	4,841	5.92	3,287	5.86	54,959	1.74
非競爭 1次加工品						
關稅率 5% ³⁾	19,884	24.34	14,732	26.28	580,718	18.40
合 計	28,120	34.43	19,357	34.53	646,225	20.49

註: 1) 추정치임.

2) 關稅率이 2.5%인 品目도 포함됨.

3) 1994년에는 關稅率이 5%이나 1991년과 1992년에는 다른 稅率이 적용된 品目도 포함됨.

資料: 關稅廳.

가 부과되는 品目이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6%, 2%의 關稅가 부과되는 品目的 輸入이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2%이고, 5%의 關稅가 부과되는 非競爭 1次 加工品の 輸入은 總輸入의 23.34%로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 전체가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品目別 關稅收入에 대한 통계가 없어 이들 品目的 輸入에 따른 關稅收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表 8-15>에서는 輸入額과 法定關稅率을 이용하여 이들 品目的 輸入에 따른 關稅收入을 추정하여 보았다. 輸出用 輸入에 대해서는 關稅還給이 이루어지므로 실제로는 關稅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 부문별 內需用 輸入額에 法定關稅率을 곱하여 關稅收入을 추정하였다. 이 추정 결과에 의하면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輸入에 대한 關稅가 總關稅收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5%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을 모두 無稅化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關稅收入 감소가 예상되며 政府로서는 이를 대체할 財源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전면적인 無稅化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品目的 輸入이 우리나라의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이들 品目에 대한 關稅率을 인하하면 關稅收入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關稅收入이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經濟發展 水準 등의 여건에 비추어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代替 財源을 마련하지 않은 채 關稅收入을 크게 감소시키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뿐만 아니라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자원절약적인 產業構造로 이행해 나가야 하는데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附加價値稅制度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消費稅 체계상 消費稅를 통해서 이를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들 品目的 關稅率 인하시 기대되는 國內 產業의 價格競爭力 증대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다.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전반적인 無稅化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關稅收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일부 品目の 無稅化를 고려할 수 있으며 그 대상 品目は 다음과 같다. 첫째, 國內 產業에의 과급효과가 비교적 큰 品目으로서 1차적으로 無稅化의 고려대상이 되는 品目は 化學製品, 鑛山品, 電氣·電子機器, 纖維 및 가죽製品에 속하는 原資材 및 中間財이다.

이들 品目에 대해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심도있는 품목별 분석을 해 본 후에 關稅引下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들 品目中 纖維 및 가죽製品의 全產業에 대한 과급효과는 鑛山品, 化學製品 등의 과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도 이에 속하는 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無稅化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纖維 및 가죽製品產業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比較優位產業이었다. 그런데 최근 國內 生産費 상승과 後發開途國의 추격으로 인해 國內外 市場을 잠식당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일부에서는 完製品에 대한 關稅率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1993년 하반기에는, 美國을 비롯한 일부 先進國에서 同業種의 일부 品目に 우리나라보다 높은 關稅率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彈力關稅制度를 통해 일부 品目の 關稅率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關稅率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려는 世界的인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纖維 및 가죽製品產業이 輸出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完製品의 關稅率 인상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⁵⁾. 또 다른 방법으로는 從量稅制度를 도입하여 低價品の 輸入 急增으로부터 國內 產業을 보호하는 것이다. 다음 節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이는 앞으로 同

5) 일부 輕工業製品의 完製品 關稅率 引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本章(第Ⅶ章) 1節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業種의 高附加價値化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纖維 및 가죽製品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關稅政策은 完製品에 대한 關稅率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非競爭原資材 및 中間財의 關稅率을 인하함으로써 完製品 生產業體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政策에는 외부의 關稅引下 압력이 따르지 않으며 同産業의 高附加價値化를 저해하는 부작용도 從量稅 도입의 경우보다는 적을 것이다. 纖維 및 가죽製品産業의 輸入中間財 投入係數는 0.168892인데 同業種에서 사용하는 輸入中間財는 대부분 同業種에 속하는 原資材 및 中間財이다.

위에서 언급한 品目들 이외에도 輸入原資材 및 中間財의 과급효과가 비교적 큰 것으로 第1次金屬製品이 있으나 UR의 無稅化協商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 업종의 대부분을 無稅化하기로 이미 결정하였다. 電氣·電子機器의 경우에도 UR協商 妥結에 따라 부분적으로 無稅化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둘째, UR의 無稅化協商의 결과로 나타난 逆關稅 현상의 시정을 위하여 關稅率 조정이 필요하다. UR 無稅化協商의 타결로 우리나라도 총 13개 분야 128개 品目を 無稅化하기로 합의하였다(〈表 8-16〉 참조). 이들 無稅化 品目 중에는 鐵鋼, 非鐵金屬과 같은 原資材도 있으나 建設裝備, 農業機械, 玩具, 家具 등 完製品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完製品의 關稅를 無稅化하는 경우 이들 製品을 生産하는데 사용되는 輸入原資材에 대해 關稅를 부과하면 完製品의 實效保護率이 負(-)가 되는 逆關稅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이 家具와 木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家具産業 中 HS분류 4단위를 기준으로 2個 品目に 대해서 無稅化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여기에는 木材家具도 포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木材家具의 主原料인 木材를, 다른 주요국이 無稅化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國內産業의 競爭力 취약 등을 이유로 하여 無稅化 品目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家具의 無稅化가 실현된 이후에는 國內家具産業에 대한 實效保護率이 負(-)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어려

움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木材에 대한 關稅를 철폐함으로써 逆關稅를 시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無稅化 品目에 대해서도 이러한 逆關稅 현상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表 8-16〉 UR 無稅化 品目

(HS 4單位 基準)

分 野	主要國 合意品目	韓國 參與品目 ¹⁾	備 考	
鐵 鋼	35	35	미국, EC, 일본 캐나다 합의 (93. 7)	
建設 裝 備	10	10(4)		
農 業 機 械	4	4(3)		
醫 療 機 器	13	11(7)		
家 具	2	2(1)		
醫 藥 品	10	6(2)		
麥 酒	1	—		
蒸 溜 酒	1	—		
電 子	15	9(1)		APEC 합의 (93. 11) 미국, EC합의 (93. 12)
종 이	41	41(41)		
玩 具	5	4(4)		
非 鐵 金 屬	34	3(3)		
木 材	21	—		
合計(13個 分野)	192	125(63)		

註 : 1) ()안은 履行期間을 8~15年으로 長期間 확보한 品目임.
資料 : 財務部.

3. 一部 品目에 대한 從量稅 導入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으로 인한 關稅 引下에 대비하여 國內 産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低價品의 輸入 急增이 예상되는 一部 品目에 대해서 現行 從價稅 대신 從量稅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本節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妥當性 與否를 검토해 본다.

關稅는 課稅標準을 기준으로 할 때 從量稅(specific tariff)와 從價

稅(ad valorem tariff)로 구분할 수 있다. 從量稅는 物品의 개수, 중량, 용적, 길이, 면적 등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從價稅는 物品의 課稅價格을 표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 兩者를 응용한 형태로서 한 가지 품목에 대해 從價稅와 從量稅를 모두 정하여 두고 그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도록 하는 選擇稅와 兩者를 併課하도록 하는 複合稅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稅가 없다. GATT에서는 一國의 關稅를 從價稅로 할 것인가 從量稅로 할 것인가는 그 국가의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從量稅는 輸入되는 商品의 數量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부과되는 關稅이므로 동일한 商品으로 분류된 品目에 대해서는 輸入價格에 관계없이 동일한 關稅額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高價品에 대해서 더 많은 關稅가 부과되는 從價稅와는 달리 從量稅는 低價品에 대해서도 高價品과 동일한 關稅額을 부과한다. 따라서 從量稅를 적용할 경우 低價品에 대한 從價換算稅率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低價 輸入品으로부터 國內 産業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關稅徵收의 목적이 財政收入의 증대에 있었던 시대에는 徵稅의 편의를 위하여 單位數量에 대해 固定額을 부과하는 從量稅 制度가 주로 사용되었고 예외적으로 市場價格을 용이하게 포착할 수 있는 物品에 대해서만 從價稅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關稅의 목적이 財政收入의 확보에서 國內 産業의 보호와 육성으로 이행하는 한편 從量稅 制度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고 商品의 多樣化에 따른 品質 等級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제기됨에 따라 從價稅 制度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表 8-17〉은 各國의 從量稅 運用現況을 보여 준다. 외국의 경우 自國內 農業保護와 섬유류, 신발류 등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勞動集約的 産業分野의 보호를 위해 從量稅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從價稅 爲主의 關稅率體制를 유지하여 왔으며 從量稅는 극히 一部 品目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表 8-17〉 國家別 從量稅 運用現況

(單位: 個, %)

		HS 品目數(A)	從量稅 適用 品目數(B)	B/A	從量稅 適用 主要品目
美 國	全 體	9,121	1,179	12.9	飲料, 담배, 動物性 製品, 燃 料, 纖維類, 신발류
	農產物	1,311	516	39.4	
E C	全 體	9,545	146	1.5	설탕, 소금, 담배, 果實, 菜 蔬, 유리
	農產物	2,092	121	5.8	
日 本	全 體	8,368	450	5.4	설탕, 菜蔬, 유리, 石油, 纖維 類, 신발류
	農產物	1,716	126	7.3	
臺 灣	全 體	8,741	174	2.0	肉類, 魚類, 果實, 영화필름, 鐵鋼
	農產物	1,778	124	7.0	
韓 國	全 體	10,417	21	0.2	영화필름, 비디오테이프
	農產物	1,502	0	0.0	

資料: 韓國關稅士會, 「關稅士」, 1993. 10, p. 33.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從量稅보다 從價稅를 선호해온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換率은 1986년부터 1989년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從量稅보다는 從價稅가 國內 產業保護와 稅收確保에 유리하였다. 換率의 상승은 원貨표시 輸入價格을 인상시킨다. 從量稅를 적용하는 경우 換率의 지속적인 상승은 從價換算稅率의 지속적인 하락을 뜻하며 결과적으로 國內 產業保護 및 稅收確保의 측면에서 從價稅를 적용할 때보다 불리해짐을 의미한다.

두번째 이유는 輸入商品의 구조와 관계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 貿易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高價品の 輸入, 低價品の 輸出’로 요약할 수 있다. 原資材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는 技術水準이 낮아 國內에서 生産할 수 없거나 生産할 수 있더라도 그 品質水準이 낮아 外國製品과 경쟁이 안 되는 경우에 주로 先進 高價製品을 輸入하였으며, 반면 國內에서 生産된 제품들은 低價로 輸出하였다. 基礎 原資材의 경우 無稅 또는 最

低의 稅率을 적용하여 國內 產業의 競爭力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農產物 등 低價品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部門의 輸入에 대해서는 수량적인 제한과 같은 非關稅障壁이나 아주 높은 禁止的인 關稅를 통해서 外國 製品의 輸入을 통제하였다. 따라서 최근까지 우리나라 輸入競爭產業의 競爭對象은 高價 輸入品이었으며, 그 경쟁은 주로 技術競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關稅政策은 高價 輸入品으로부터 國內 產業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從價稅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一部 產業에서는 後發開途國으로부터 들어오는 低價 輸入品과의 競爭이 치열해지고 있거나 앞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예로 農產物 部門과 勞動集約的인 輕工業 部門을 들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數量規制 등의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低價 農產物의 輸入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協商이 타결됨에 따라 低價 農產物의 輸入을 規制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關稅가 되었다. 한편,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後發開途國에서는 低賃 勞動力의 이점을 살려 그 동안 우리나라가 比較優位를 갖고 있던 輕工業 部門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결과 이들 國家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輸出市場에서 價格競爭力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國內市場에도 이들 국가로부터의 輸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表 8-18>을 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이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先進國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輸入增加는 대부분 低價의 輕工業製品 輸入增加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⁶⁾. 輕工業 部門 중에서 기술적으로 從量稅가 가능한 대표적인 품목은 섬유, 신발 등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

6) 앞의 <表 8-12>는 衣類 및 신발의 경우 後發開途國, 특히 中國과 인도네시아로부터의 輸入이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表 8-18〉 우리나라의 最近 輸入動向

(單位 : 百萬달러, %)

	總 輸 入		先進國으로부터의 輸入 ¹⁾		開發國으로부터의 輸入 ²⁾	
	輸入額	增加率	總輸入額에 대한 比重	輸入額 增加率	總輸入額에 대한 比重	輸入額 增加率
1986	31,584		74.1		24.5	
1987	41,020	29.9	74.8	31.0	23.9	26.7
1988	51,811	26.3	75.9	28.3	23.0	21.9
1989	61,465	18.6	74.8	16.8	23.8	22.7
1990	69,844	13.6	72.6	10.3	26.1	24.3
1991	81,525	16.7	71.6	15.2	27.3	22.1
1992	81,775	0.3	67.9	-4.9	30.8	13.3
1993.1~11월	76,358		68.2		30.6	

註 : 1) 先進國은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주에 속하는 국가들과 日本을 의미함.

2) 開發國은 日本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 中東, 中南美, 아프리카에 속하는 국가들을 의미함.

資料 : 商工資源部, 『貿易統計』, 各號.

와같이 美國, 日本과 같은 先進國에서도 開發途上國과의 競爭으로부터 國內 産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부문에는 從量稅를 부과하고 있다.

低價品の 輸入으로 인해서 國內 産業의 피해가 예상되는 農業 部門과 一部 輕工業 部門에 從量稅를 도입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이 産業 部門들의 低價品 國內生産을 關稅를 통해서 보호해야 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먼저 섬유, 신발 등 輕工業製品을 보자. 이들 業種들은 前述한 後發開發國에서 생산한 低價品으로 인하여 國產製品의 輸出市場뿐만 아니라 國內市場도 상당부분 잠식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從量稅 導入을 통해 國內 低價品 生産業體를 보호하고 高價品 生産業體를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從價稅에서 從量稅로의 전환은 低價品 輸入을 억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高價品 輸入을 촉진한다. 따라서 從量稅 制度를 도입할 경우, 이는 低價品 生産業體를 보호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高價品 生産業體에 대해서는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生産要素는 高價品 製造業體에서 低價品 製造業體로 이동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이러한 이동이 장기적인 産業構造 調整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輕工業은 低價品の 輸出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점차 高價品の 生産 및 輸出로 이동해가는 과정에 있다. 특히 本節에서 주목되는 신발 및 섬유 경우에는 그 生産技術이 이미 世界的인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低價品の 경우 이미 國內市場과 海外市場의 상당부분을 後發開途國에게 잠식당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要素價格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關稅를 통한 보호가 약간 강화된다고 하여 과연 우리나라가 低級品 生産部門에서 競爭力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회의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문의 國內 生産은 앞으로 高價品 中心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⁷⁾.

그러므로 섬유, 신발 등 輕工業 部門에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할 부문은 低級品보다는 오히려 高級品을 생산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輕工業 部門의 關稅率 政策은 低級品보다는 高級品을 보호하여 질적인 産業構造의 高度化, 또는 高附加價値化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産業政策의인 측면에서 이 부문의 從量稅 導入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적

7) 이에 대해서는 本章(第Ⅶ章) 第1節에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朴重球 (1994) 참조.

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競爭力을 확보하기 어려운 低級品の 關稅率 引上은 低級品을 사용하는 低所得層의 厚生을 감소시켜 所得分配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中國 등 後發開途國으로부터의 低價輸入에 대해서는 從量稅 도입보다는 덤핑防止關稅 등 彈力關稅制度를 통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農産物은 輕工業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나라가 農産物關聯 政策을 완전히 比較優位論에 따르는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보호는 필요하며 이러한 農業 部門의 保護는 低價 輸入品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따라서 農業 部門에는 從量稅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崔洛均·申鉉秀(1992)에 의하면, 農産物部門에 從量稅 導入時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현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非讓許農産物에 대한 基本關稅率을 從量稅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稅率을 높게 책정할 경우 GATT의 standstill 條項 違反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2) 從量稅 制度는 從價稅에 비해 低價品에 상대적으로 많은 關稅를 부과하므로 低價品の 輸入抑制에는 기여하나 동시에 低價 輸入品の 價格引上을 초래함으로써 國內 物價上昇 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從量稅가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輸入品の 品種, 品質, 加工度 등에 따라 品目分類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稅率을 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從價稅率에 상응하는 從量稅率을 결정해야 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따른다.

위에서 제기된 것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輸入品에 賦課하는 從量稅는 換率이 인상됨에 따라 그리고 輸入製品의 價格이 인상됨에 따라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從量稅를 부과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從量稅 導入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포함하여 위에 언급된 모든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要約 및 結論

政府는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 現行 關稅率體制의 基本들을 유지하면서 產業政策的 기능을 보강하는 方向으로 基本關稅率을 改편할 것을 제시하였다.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는 戰略的 育成이 필요한 產業, 奢侈性 消費財 및 輸入急增 物品 등에 대해서 關稅引上을 검토하고 있으며, 賃 金上昇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에 대해서는 加工度別 稅率隔差를 고려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新經濟 5個 年計劃이 제시하고 있는 基本關稅率 改編方向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보 았다.

第1篇에서는 우리나라의 關稅政策의 展開過程과 現行 關稅率構造를 살펴 보았다. 關稅政策의 役割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財政收入 確保手段으로서의 役割이고, 둘째는 產業政策으로 서의 役割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關稅政策은 財政收入의 확보수단이라 는 측면에서 볼 때, 그 役割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 년대 中반까지는 財政收入의 確保가 關稅政策의 重要한 目標 中의 하나 였으며, 總租稅收入에서 關稅收入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정도로 비교 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는 財政收入 確保手段으로 서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어 1980년대 總租稅收入에서 關稅收入이 차지 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감소하였고, 1993년에는 6% 이하의 아주 낮 은 수준으로 감소되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產業政策的 기능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關稅政策은 產業 政策의 전개방향에 따라 변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產業政 策은 부족한 자본, 협소한 시장, 낙후한 기술수준의 여건하에서도 고도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產業政策의 中점을 1960年代에는 單純加工型의 輕 工業, 19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의 육성과 지원에 두었다. 또한 產業 政策은 1970年代 末부터 고도성장하에서 파생된 모순점을 시정하려는 產 業構造調整政策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와 함께 1980年代 初 부터는 對內外 競爭體制를 정착시켜 民間主導型 經濟體制를 확립하려 는 方向으로 이행되었다. 이와 같은 產業政策의 전개방향에 따라 關稅

政策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었다. 1960年代에는 單純加工型의 輕工業에, 197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에 높은 關稅率을 부과하였고, 이와 함께 가공도가 높은 상품일수록 高率의 關稅를 부과하는 差等關稅率制度를 關稅政策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들 產業을 保護하였다. 그 후 1980年代부터 關稅의 對產業 中立性이 강조되었다.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制度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1983년까지 差等關稅率制度(Tariff Escalation System)를 적용하였으나, 1984년부터 均等關稅率制度(Uniform Rate System)로의 移行을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1994년에는 原料와 일부 中間財를 제외한 대부분의 工產品에 대해서 中間財, 完製品, 奢侈性 消費財, 必需品 등을 구분하지 않고 8%의 關稅率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關稅率制度는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均等關稅率制度에 상당히 접근하게 되었다. 둘째, 1983년 관세율 전면 개편시에 關稅引下豫示制(1984~1988)를 채택하여 關稅率水準을 사전에 예시하였으며, 현재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1989~1994)를 시행하고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30% 이상의 수준을, 그 후 1980년대 초까지는 20%대를 유지하여 왔던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은 두 차례에 걸친 關稅引下豫示制를 통하여 1988년에는 18.1%, 1994년에는 7.9%로 대폭 인하되었다.

第2篇에서는 최근 經濟與件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새롭게 設定해 보았다.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설정함에 있어서 關稅의 일반적인 기능에 따라 財政收入 確保側面과 產業政策的 側面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았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政策의 樹立에 制約條件으로 작용하고 있는 國際化·開放化의 측면도 함께 고려해 보았다.

먼저 國際化·開放化의 側面에서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의 급속한 國際交易秩序의 변화는 우리 經濟의 國際化와 開放化를 요구하고 있다. 國際化·開放化의 과정에서 交易財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外國으로부터 받고 있는 압력으로는 輸入開放의 압력과 關稅

引下의 압력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輸入自由化는 본격적인 輸入開放의 압력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주로 對外競爭을 통한 競爭力을 向上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으며, 1986년까지 비교적 독자적인 關稅政策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1986~89년 기간 동안에 3低好況에 힘입어 貿易收支黑字를 기록함에 따라 外國의 강력한 輸入開放 壓力에 직면하였고, 이에 따라 1986년 이후 輸入開放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1994년의 輸入自由化率은 工產品의 경우 89.9%, 農產物의 경우 92%, 전체적으로 98.5%의 높은 수준에 달하였다. 輸入開放의 압력과 함께 우리나라는 先進國으로부터 OECD수준에 준하는 關稅引下를 강력하게 요청받았으며, 이에 따라 1989년의 中心稅率을 1988년의 20%에서 15%로 引下하였고, 그 후에도 關稅引下豫示制를 통해 매년 단계적으로 關稅率을 引下함으로써 1994년의 中心稅率은 8%의 낮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關稅政策의 운용은 본격적인 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協商에서 WTO의 設立이 합의됨으로써 自由貿易에 입각한 多者主義가 강화되고 있고, 이와 함께 貿易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해 公正貿易을 내세우는 先進國의 雙務主義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설정함에 있어서 國際化·開放化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制約條件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國際化와 開放化는 關稅障壁이나 非關稅障壁의 철폐를 수반하므로 國內產業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입장만을 고려한 關稅政策의 운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關稅障壁과 非關稅障壁이 완전히 철폐되지 않는 한, 先進國으로부터의 市場開放, 關稅引下, 非關稅障壁 撤廢 등의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關稅政策은 장기적으로 關稅引下 및 撤廢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關稅引下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關稅가 產業全體의 國際競爭力에 비해 이미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引下되어 왔다는 評價와, 빠른 속도의 關稅引下는 앞으로 있을 協商에서 그만큼 協商의

餘地를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憂慮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980年代 및 1990年代 初와 같은 빠른 속도의 關稅引下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財政收入確保의 側面에서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설정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 水準이 經濟發展의 水準에 비추어 보아 財政收入의 측면에서 과도하게 높은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關稅負擔能力을 推定하였다. 從屬變數로는 關稅負擔率을 나타내는 指標로서 GDP에 대한 關稅收入의 比率를 사용하였고, 獨立變數로는 1인당 GDP, GDP에 대한 內國稅의 比率, GDP에 대한 輸出額의 比率, GDP에 대한 輸入額의 比率를 사용하였다. 60個國에 대해 1990年의 資料를 이용하여 單純最小自乘法(OLS: Ordinary Least Squares)에 의한 回歸分析을 한 結果는 推定된 係數의 부호가 모두 예측한 바와 같으며 有意性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結果에 의하면 한 국가의 1인당 GDP가 낮을수록, 內國稅負擔率이 낮을수록, GDP에 대한 輸出額의 比率가 낮을수록, 그리고 GDP에 대한 輸入額의 比率가 높을수록 關稅負擔率이 높아진다. 또한 推定된 式을 이용하여 關稅負擔能力을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의 1990年의 實際 關稅負擔率 2.13%는 推定 關稅負擔率 2.39%에 비해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1인당 GDP, 內國稅負擔率, GDP에 대한 輸出額의 比率, GDP에 대한 輸入額의 比率가 비슷한 國家에 비해 關稅負擔率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關稅負擔能力에 대한 推定結果는 비록 그것이 1990年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그 이후의 與件變化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缺點이 있지만, 그 이후의 우리나라의 關稅引下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 첫째, 關稅率의 引下를 통해 關稅負擔率을 현 수준보다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의 능력에 비해 지나친 內國稅負擔을 초래하거나 財政收入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향후 一部 品目

의 關稅率을 引下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조정으로 인한 關稅收入의 감소를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產業政策的 側面에서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을 설정해 보았다. 본격적인 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이하여 關稅는 財政收入 確保手段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產業政策으로서의 기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1) 國際化·開放化에 따라 과거와 같이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關稅率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고, (2) 우리나라의 平均關稅率은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가 끝나는 1994년에는 7.9%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關稅가 產業政策으로서 機能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고, (3) 產業政策의 방향이 特定産業을 선별지원하는 政策에서 機能別 支援政策으로 전환됨에 따라 關稅政策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對産業 中立性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產業構造의 問題點인 加工·組立産業과 機械·部品·素材産業間의 不均衡 및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不均衡의 해결을 위해서는 關稅의 產業政策으로서의 기능을 아직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機械·部品·素材産業을 중심으로 한 幼稚産業이나 尖端産業의 競爭力은 幼稚産業保護論에 입각하여 靜態的인 개념보다는 動態的인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産業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는 關稅政策의 產業構造形成政策으로서의 기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과거와 같은 직접적인 輸入規制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關稅政策의 產業構造維持政策으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더 중요시되고 있다. 본격적인 國際化·開放化를 맞이하여 市場開放과 이에 따른 輸入急増과 不公正한 貿易行爲의 急増이 예상되며, 따라서 市場秩序를 회복하기 위한 産業被害救濟의 수단으로서 相計關稅, 報復關稅, 緊急關稅 등이 關稅政策에서 더욱 중요한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第3篇에서는 經濟與件의 變化에 따른 關稅政策의 基本方向에 입각하여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現行 關稅率制度의 두 가지 특징인 均等關稅率制度和 關稅引下豫示制를 평가해 보았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産業政策이 고도성장하에서 파생된 모순점을 시정하려는 産業構造調整政策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1984년부터 關稅政策의 基調도 均等關稅率制度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는 差等關稅率制度下에서 單純組立型 産業이 生産의 迂廻度가 큰 産業에 비해 상대적으로 過保護됨에 따라 單純組立型 産業이 크게 발달할 수 있었던 반면, 生産의 迂廻度가 큰 産業은 낙후되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均等關稅率制度의 기본취지는 關稅를 산업간·품목간 균등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保護率을 균등화하고, 이를 통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經濟의 效率性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實效保護率 理論의 입장에서 본다면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보다 우월한 제도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最適關稅率構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지난 30여년 동안 國際貿易論의 많은 논문이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差等關稅率制度의 支持者들은 理論과 現實의 두 가지 측면에서 均等關稅率制度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Ramsey(1927) 理論이 最適租稅뿐만 아니라 最適關稅를 결정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最適關稅收入은 각 부문의 關稅率이 需要의 價格彈力性에 반비례하여 부과될 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理論에 따라 本 報告書에서는 關稅의 부과목적인 財政收入과 産業保護의 두 경우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서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에 비해 반드시 더 效率的인 制度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Panagariya(1990)의 도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이 制度의 現實的인 限界에 관한 것으로 均等關稅率制度가 추구하는 實效保護率의 均等化라는 目標을 달성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1) 原料 및 中間財에 대해 부과되는 關稅率이 품목간 균일하지 않으며 각 산업의 輸入原料 및 輸入中間財의 투입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完製品에 균등한 關稅率을 적용하더라도 實效保護率은 달라질 수밖에

에 없고, (2) 換率이나 內國稅制上の 保護 등 모든 保護構造가 동일하지 않은 한, 각 産業에 均등한 稅率을 적용하더라도 반드시 實效保護率이 均등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均等關稅率制度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결과로 최근 均等關稅率制度의 支持者들은 經濟理論보다는 주로 行政의 간편성과 政治經濟的인 논리에 의지하여 均等關稅率制度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1) 均等關稅率制度는 貿易體制를 더 명료하게 하고 行政을 더 쉽게 하며, (2) 均等關稅率制度下에서는 關稅率을 결정함에 있어서 政治的 壓力, 즉 로비에 의한 社會的 費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均等關稅率制度가 理論的으로 差等關稅率制度보다 非效率的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이 두번째 주장대로 均等關稅率制度에 의한 行政의 간편화가 經濟에 주는 利益이 最適關稅率로부터 멀어져서 발생하는 損失보다 더 크다면, 均等關稅率制度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均等關稅率制度의 정당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理論的으로나 現實的으로 均等關稅率制度가 差等關稅率制度에 비해 반드시 效率的인 制度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關稅率을 책정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均等關稅率制度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關稅引下豫示制에 대해서는 制度 자체에 대한 評價와 關稅引下の 속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評價를 하였다. 關稅引下豫示制는 그 동안 關稅率을 급격히 引下하는 과정에서 (1) 급작스런 關稅率의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産業界의 사전대비를 촉진시켰고, (2) 未來의 不確實性을 줄여서 국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었으며, (3) 豫示制에 의해 단계적으로 關稅를 引下함으로써 일시적인 關稅引下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었고, (4) 政府는 단기적인 問題點을 보완하기 위해 關稅率을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다.

關稅引下의 速度面에서 關稅引下豫示制를 評價한다면, 우리나라의 關稅率이 우리의 經濟力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引下되었다는 점에서 否定的으로 評價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가 關稅率을 現行의 關稅引下豫示制보다 훨씬 느리게 引下해 왔다면 우루과이라운드協商의 타결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폭적인 關稅引下가 불가피할 것이고, 이로 인해 產業界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肯定的으로도 評價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關稅引下의 速度面에서 關稅引下豫示制는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海外依存度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이하여 독자적인 關稅政策을 운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결국 否定的인 면보다 肯定的인 면이 더 크다고 評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關稅引下豫示制의 지속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關稅率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引下할 여지가 크지 않다. 따라서 매년 일정비율로 引下하게 되면, (1) 그 引下幅은 지나치게 소규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關稅行政을 매우 번거롭게 할 것이고, (2) 관세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產業界에 급작스런 關稅率의 변동으로 인한 충격을 덜어 주려는 關稅引下豫示制의 본래의 목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關稅引下豫示制에 의해 全品目에 걸쳐 매년 一定率을 引下하는 것보다 經濟與件의 변화에 맞추어서 個別品目の 關稅率을 調整하는 것이 더 效率的인 것이다.

우리나라 平均關稅率의 適正性 與否는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첫째, 關稅가 交易財의 國內外 價格差異를 적절히 補填하여 주는가를 평가하였다. 1988년에 작성된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構造는 1987년 韓國産業銀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産業의 國際競爭力 分析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 交易財의 內外價格差는 평균 13% 수준이었는데, 이는 5년 전인 1983년의 22%에서 40% 하락한 것으로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第2次 關稅引下豫示制가 끝나는 시점인 1993년 交易

財의 內外價格差를 8% 수준으로 예상하였다. 1990년 防衛稅 廢止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의 시행을 1년씩 순연함으로써 결국 1994년의 中心稅率이 8%가 되었다. 그러나 1992년에 발표된 韓國產業銀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實質價格差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4년 동안에는 오히려 40% 악화되어 1991년에는 18.8%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實質價格差가 좁혀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동안 國際收支가 다시 赤字로 반전되고 景氣가 침체되는 등 우리나라 產業의 경쟁력은 상당히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貿易收支가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근의 交易財 內外價格差 平均은 1991년의 그것보다 낮을 가능성은 크지만, 貿易收支 黑字가 최고조에 달했던 1987~1988년의 內外價格差의 3분의 2 수준인 8% 정도까지 내려갔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행 中心稅率은 이러한 최근의 經濟環境 變化를 예상하지 못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재 交易財의 國內外 價格差를 충분히 補填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現行 關稅率 水準이 財政收入 確保의 側面에서 적절한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關稅負擔能力을 추정 한 결과에 의하면 關稅收入 對 GDP 比重의 적절한 수준은 1990년에 2.39%이었고, 實際 關稅負擔率은 2.13%였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負擔能力에 비해 關稅依存率이 낮다고 할 수 있다. 經濟發展 水準, 輸入 및 輸出 比重, 內國稅 負擔率이 類似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關稅負擔率이 낮은 이유로는 (1) 쌀을 비롯한 農產物 部門의 非關稅障壁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交易財의 關稅率을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2) 우리나라는 그 동안 輸出을 중심으로 하는 工業發展 戰略을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주로 價格競爭力을 바탕으로 한 輸出 增大에 주력해 왔으므로 輸出市場에서의 마찰이 비교적 심하였기 때문에 關稅引下에 대한 外部의 壓力이 類似한 다른 나라에 비해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關稅率 調整을 통해 關稅負擔率을 더 낮추는 것은 우리나라의 能力에 비해 지나친 內國稅負擔을 초래하거나 財政收入의

부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는 新經濟 5個年計劃에서 關稅率의 調整對象으로 거론된 一部 品目の 關稅率 調整問題, 原資材 및 中間財의 無稅化 問題, 一部 品目에 대한 從量稅 導入問題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일부 幼稚產業이나 有望產業과 같은 戰略的 育成이 필요한 產業의 경우, 關稅率을 결정함에 있어서 均等關稅率體系를 벗어난 약간의 差等的 關稅의 설정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產業이 현재는 기술수준이 낮아서 生産費가 높지만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미래에는 競爭力을 가질 수 있다면, 이 產業의 競爭力은 幼稚產業保護論에 입각하여 靜態的인 개념보다는 動態的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幼稚產業이나 有望產業의 國內企業들이 國際競爭力을 보유하기도 전에 輸入開放과 關稅引下로 인해 外國業體와 競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國內企業들은 製品開發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 奢侈性 消費財의 경우 (1) 우리나라 消費者의 外製選好度는 매우 높은 상태이므로 관세율이 낮으면 奢侈性 消費財의 輸入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貿易收支의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2) 自動車, 家電製品 등의 耐久消費財는 우리나라 產業에 대한 生産波及效果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產業들이 우리나라의 輸出戰略産業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品目에 비해 비교적 높은 關稅를 부과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 消費財의 輸入은 그 消費財가 생활필수품이든 사치품이든 消費者의 상품선택의 폭을 더 넓혀 준다는 점, (2) 價格이나 品質面에서 國產品보다 輸入品이 消費者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면 消費財의 輸入이 消費者의 厚生을 더 높여 준다는 점, (3) 奢侈品이면서도 주로 高所得層이 소비하는 품목들에 대해 特別消費稅를 별도로 課稅함으로써 所得再分配과 단일세율 적용에 따른 消費課稅의 逆進性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4) 奢侈性 消費財에 대한 상대적인 高關稅率은 이 부문의 國內 生産을 늘리는 대신 다른 부문의 生産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5) 이들 제품에 대해 關稅率을 引上하는 것은 通商摩擦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奢侈性 消費財라고 해서 높은 稅率의 關稅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輸入이 急増하는 物品은 關稅率의 引上을 통해 輸入을 抑制하기보다는, 輸入의 急増이 우리 産業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 相計關稅, 報復關稅, 緊急關稅 등의 産業被害救濟制度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이는 (1) 輸入이 급증하는 품목은 經濟與件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關稅率을 調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2) 國際化·開放化時代를 맞이하여 市場開放과 이로 인한 輸入急増 또는 不公正한 貿易行爲에 의한 輸入急増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이를 關稅率의 調整으로 억제하는 것도 점점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勞動集約的인 輕工業製品의 關稅率을 調整함에 있어서 該當 産業의 성격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該當 産業 자체가 斜陽産業인 경우 (1) 만일 該當 産業이 斜陽化 過程에 있다면 이 産業에 속한 企業은 가능하면 빨리 이 産業으로부터 退出을 해야 할 것이므로 높은 關稅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企業이 退出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産業構造調整政策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2) 該當 産業이 이미 斜陽産業으로 알려져서 資源의 이동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이 産業에 대해서는 높은 關稅를 부과함으로써 소규모의 國內生産을 보호해 주고, 消費의 억제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該當 産業 자체가 斜陽産業이라기보다는 該當 製品이 賃金上昇 등으로 인해 價格競爭力을 상실하고 있다면, (1) 단기적으로는 해당 제품에 높은 關稅率을 부과하여 産業內의 構造調整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줄 수도 있을 것이나, (2) 장기적으로 해당 제품에 높은 關稅率을 부과하게 되면 産業內의 構造調整을 지연시켜서 영원히 競爭力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短期的인 영향과 長期的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關稅政策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原資材 및 中間材에 부과하는 關稅를 제거함으로써 國內 產業의 價格競爭力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전면적인 無稅化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1) 이들 品目の 輸入이 우리나라의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 이들 品目에 대한 關稅率을 인하하면 關稅收入이 크게 감소할 것이고, (2) 이들 品目の 關稅率 인하시 기대되는 國內 產業의 價格競爭力 증대 효과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소규모가 될 것이며, (3) 賦存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資源節約的인 產業構造를 지향해야 하는데, 非競爭原資材와 1次 加工品の 關稅率 引下는 輸入資源을 많이 사용하는 產業構造로의 이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非競爭原資材 및 1次 加工品の 전반적인 無稅化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關稅收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부 品目の 無稅化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상 品目으로는 (1) 國內 產業에의 파급효과가 비교적 큰 品目으로서 化學製品, 鑛山品, 電氣·電子機器, 纖維 및 가죽製品에 속하는 原資材 및 中間材와, (2) UR의 無稅化協商的 結果로 無稅化가 될 品目 중에서 實效保護率이 負가 되어 逆關稅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建設裝備, 農業機械, 玩具, 家具 등의 完製品을 生産하는데 사용되는 輸入原資材를 들 수 있다.

低價品の 輸入으로 인해서 國內 產業의 피해가 예상되는 農業 部門과 一部 輕工業 部門에 從量稅를 도입해야 하는지의 妥當性 與否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後發開途國에서 생산한 低價品으로 인하여 輸出市場뿐만 아니라 國內市場도 상당 부분 잠식당하고 있는 輕工業製品의 경우 從量稅 導入을 통해 國內 低價品 生産業體를 보호하고 高價品 生産業體를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1) 從量稅制度는 從價稅制度에 비해서 低價品 輸入을 억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高價品 輸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 (2) 향후 輕工業 部門의 關稅率 政策은 低級品보다는 高級品을 보호하여 질적인 產業構造의 高度化, 또는 高附加價值化를 지향하여야 할 것

이고, (3) 우리나라가 競爭力을 확보하기 어려운 低級品의 關稅率 引上은 低級品을 사용하는 低所得層의 厚生을 감소시켜 所得分配를 劣化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 등으로부터의 低價輸入에 대해서는 덤핑防止關稅 등 彈力關稅制度를 통해서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農產物은 우리나라가 農產物關聯 政策을 완전히 比較優位論에 따르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보호는 필요할 것이며, 특히 低價 輸入品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農業 部門에는 從量稅를 도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農產物에 대한 從量稅 導入時 從量稅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稅率을 높게 책정할 경우 GATT의 standstill 條項에 대한 違反可能性, 低價 輸入品의 價格引上으로 인한 國內 物價上昇 問題, 換率引上이나 輸入製品의 價格引上에 따라 稅負擔이 상대적으로 劣화된다는 問題點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從量稅 導入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1994年度 豫算(案)說明資料』, 1994.
- 科學技術處, 『科學技術年鑑』, 各年度.
-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號.
- 國稅廳, 『國稅統計年報』, 各號.
- 金光錫·洪性德, 『名目 및 實效保護率構造의 長期的 變化』, 韓國開發研究院, 1982.
- 金南斗, 『關稅』, 『貿易關聯 政策 및 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政策研究 92-0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pp. 65~92.
- 金仁哲, 『UR 以後 世界關稅率 改編展望과 韓國의 輸出效果分析』, 1992. 10.
- 南宗鉉, 『韓國의 產業誘引政策과 產業別 保護構造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81.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UR總點檢－最終協定の 분야별 評價』, 政策研究 93-2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 大韓民國 政府, 『新경제 5個年計劃(93~97年) 經濟改革課題報告書－參與와 創意로 새로운 跳躍을』, 1993.
- 朴相泰, 『關稅論－關稅의 理論과 實際』, 우아당, 1991.
- 白洛基 外, 『中小企業支援制度의 活用實態와 效果分析』, 產業研究院, 1993.
- , 『最近 中小企業 經營惡化의 原因과 對策』, 產業研究院, 1992. 5.
- , 『韓國產業의 現位相과 發展課題』, 產業研究院, 1988.
- 產業研究院, 『새 時代의 貿易 通商政策方向』, 產業研究院, 1988.
- 三逸會計法人, 『國稅便覽』, 1994.
- 商工資源部, 『商工資源白書』, 1993.
- , 『輸出統計』, 各年度.

- , 『輸入統計』, 各年度.
- , 『貿易統計』, 各號.
- 稅制發展審議委員會 關稅制度研究分科委員會, 『關稅發展研究報告書』, 1986.
- 孫光洛, 『租稅體系的適正化에 관한 研究』, 研究報告書 93-01, 韓國租稅研究院, 1993.
- 申英燮·河炳基, 『産業支援強化를 위한 關稅率構造 改編方向』, 産業研究院, 1991.
- 兪京得, 「實效保護率의 測定에 의한 關稅率調整에 관한 研究」, 『貿易學會誌』, 第14卷, 1989.
- 兪正鎬, 「實效保護率의 推定方法」, 『韓國開發研究』, 第4卷 第4號, 1982.
- 兪正鎬 外, 『産業保護와 誘引體系的 歪曲』, 韓國開發研究院, 1993.
- 柳志喆, 『製造業 競爭力 提高와 에너지價格政策』, 에너지經濟研究院, 1993.
- 尹暢皓·廉載鎬, 『貿易自律化 時代에 있어서 産業政策의 機能에 관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1992.
- 李甲銖, 『新産業政策論』, 貿易經營社, 1992.
- 李景台, 『産業政策의 理論과 現實』, 研究叢書 91-07, 産業研究院, 1991.
- , 『90年代 産業政策方向과 政府의 役割』, 産業研究院, 1993.
- 李景台 外, 『輸入自由化 時代에 있어서 産業政策의 機能에 관한 研究』, 産業研究院·韓國貿易協會, 1988.
- 李 均, 『關稅理論』, 貿易經營社, 1986.
- 李相鎬, 『産業構造의 知識』, 韓國經濟新聞社, 1989.
- 李載玉, 「農產物 市場開放과 波及影響」, 『UR妥結과 農政의 對應方向에 관한 세미나』,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93.
- 財務部, 『'93年 國稅暫定實績』, 1994.
- , 『財政金融統計』, 各號.

- 財務部 關稅局, 『關稅率政策 運用實績 및 方向』, 1991.
- , 『關稅率調整沿革과 政策方向』, 調整資料 80-7, 1980.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中小企業現況』, 1992.
- 崔洛均, 『UR妥結이 國內產業에 미칠 影響과 政策對應』, 產業研究院, 1993.
- 崔洛均·申鉉秀, 『UR 以後 低關稅率 體制下에서의 關稅政策方向』, 產業研究院, 1992.
- 統計廳, 『韓國統計月報』, 各號.
- , 『主要統計指標』, 各年度.
- , 『鑛工業統計調查報告書』, 各年度.
- 韓國開發研究院, 『未來에의 挑戰—產業構造變化와 政策對應』, 韓國開發研究院, 1987.
- 韓國關稅士會, 『關稅士』, 1993.
- 韓國關稅研究所, 『關稅率表』, 1992.
- 韓國貿易協會, 『貿易年鑑』, 各年度.
- 韓國產業銀行, 『國內產業의 國際競爭力分析』, 韓國產業銀行, 1992.
- , 『韓國의 產業(上, 下卷)』, 1993.
- 韓國銀行, 『韓國의 國民所得』, 各年度.
- , 『企業經營分析』, 各年度.
- , 『1990 產業聯關表』, 1993.
- 韓弘烈,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政策研究 93-0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3.
- 日本銀行 調查統計局, 『國際比較統計』, 1992.
- 日本通商省, 『通商白書』, 1992.
- Balassa, B., “Tariff Protection in Industrial Countries: An Evalu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Dec. 1965, pp. 573~594.

- _____, et al. (eds.),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 _____, "Tariff Policy and Tax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The World Bank, Sep. 1989.
- Caves, R.,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ial Organization: Problems Solved and Unsolved," *European Economic Review* 28, 1985, pp. 377~395.
- Corden, W.M., *The Theory of Protec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 _____, "The Structure of a Tariff System and the Effective Protective Rat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June 1966, pp. 221~237.
- Dixit, A., "Tax Policy in Open Economies,"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I*, edited by A.J. Auerbach and M. Feldstein, Vol. I, Chapter 6, 1985, pp. 313~374.
- Edward, S., "On Uniform Import Tariffs in Developing Economics," NBER Working Paper, May 1990.
- Feenstra, Robert C., *Empirical Methods for International Trade*, The MIT Press, 1988.
- _____, *Trade Polici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Grubel, H. and H.G. Johnson, *Effective Tariff Protection*, Geneva: GATT, 1971.
- Jones, Ronald and Anne Krueger (ed.),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Basil Blackell, 1990.
- Harberger, A.C., "The Uniform-Tax Controversy," *Public Finance, Trade, and Development* (V. Tanzi(ed.)),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90.

- Hufbauer, G. C and J. J. Schott, *NAFTA: An Assessmen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3.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3.
-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2.
- Krugman, Paul R. (ed.), *Strategic Trade Policy and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s*, The MIT Press, 1990.
- Laird, Sam and Alexander Yeats, *Quantitative Methods for Trade Barrier Analysis*, The Macmillan Press, 1990.
- Nurkse, R.,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il Blackwell and Mott Ltd., 1953.
- Panagariya, A., "How Should Tariffs Be Structured?," Working Papers, The World Bank, Feb. 1990.
- Panagariya, A. and D. Rodrik., "Political-Economy Arguments for a Uniform Tariff,"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34, No. 3, August 1993, pp. 685~703.
- Vousden, Neil, *The Economics of Trade Prote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Whalley, John, "Recent Trade Liberalization in the Developing World: What Is behind It, and Where Is It Headed?," NBER Working Paper, No. 3057, NBER, 1989.